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678-01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2018. 11.

수행기관
(사)국민농업포럼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수 행 기 관 : (사)국민농업포럼

연구책임자 : 상임이사 정 기 수

참여연구원 : 사무국장 채 선 욱

연구보조원 : 과 장 최 수 지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 |
|----------------|----|
| 1. 연구 배경 | 15 |
| 2. 연구 목적 | 16 |
| 3. 연구 범위 | 17 |

제2장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목적

| | |
|---------------------------|----|
| 제1절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 21 |
| 1. 대내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 21 |
| 2. 지방분권과 협치농정의 강화 | 29 |
| 3. 협치농정의 관점과 과제 | 31 |
| 4.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 34 |
| 5.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 36 |
| 6. 문재인정부와 농업회의소 | 38 |
| 제2절 농업회의소의 개념과 위상 | 40 |
| 1. 농업회의소의 의의와 개념 | 40 |
| 2.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 | 41 |
| 3. 진정한 민관협력 체계로 전환 | 42 |

제3장 국내외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 | |
|----------------------------|----|
| 제1절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현황 | 47 |
| 1.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 47 |
| 2.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현황 | 58 |
| 3. 농업회의소 조직 및 운영현황 | 60 |
| 4. 신규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 | 71 |

| | |
|--------------------------------|------------|
| 5.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77 |
| 6.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와 과제 | 91 |
| 제2절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 | 97 |
| 1. 해외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 | 97 |
| 2. 프랑스 농업회의소 | 100 |
| 3. 독일 농업회의소 | 108 |
| 4.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 112 |
| 5. 일본 농업회의소 | 115 |
| 제3절 국내 상공회의소 운영사례 | 117 |
| 1. 상공회의소의 위상과 시사점 | 117 |
| 2. 상공회의소 회원과 주요사업 | 119 |

제4장 한국형 농업회의소 분야별 활성화 방안

| | |
|----------------------------------|------------|
| 제1절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 | 127 |
| 1. 농업회의소 회원제도와 참여도 | 127 |
| 2. 상공회의소의 회원제도와 가입률 | 129 |
| 3. 해외 농업회의소 회원제도 | 131 |
| 4. 회원제도 개선방안 | 133 |
| 제2절 농정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 136 |
| 1. 농정 참여 시스템 구축 | 136 |
| 2. 기존 조직과 갈등해소 방안 | 141 |
| 제3절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 150 |
| 1. 시범사업 한계와 접근방향 | 150 |
| 2. 상공회의소 주요 사업현황 | 154 |
| 3. 농업회의소 특화사업 발굴 | 159 |

| | |
|-------------------------------|-----|
| 제4절 농업회의소의 역량 제고 | 169 |
| 1. 시군 농업회의소 사업구조 | 169 |
| 2. 사업영역 확장과 전문 인력 확보 | 176 |
| 제5절 재정 자립도 확보 | 179 |
| 1. 현재 재정자립도 현황 | 179 |
| 2. 상공회의소 재정운영 현황 | 181 |
| 3. 농업회의소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 184 |
| 4. 분야별 활성화 과제 소결 | 186 |

제5장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

| | |
|-------------------------------------|-----|
| 제1절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189 |
| 1.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현황 | 189 |
| 2. 법제화 이후 전국 운영체계 확립 | 192 |
| 제2절 주체별 역할확립 및 연계모델 | 195 |
| 1.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 195 |
| 2. 농업회의소와 민간의 역할 | 197 |
| 제3절 중장기 로드맵과 한국형 모델 확산 | 198 |
| 1. 주요 이슈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 198 |
| 2. 광역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 200 |
| 3.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 205 |
| 4.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및 확산 방안 | 213 |

부 록

| | |
|---------------------------|-----|
| 1. 상공회의소법 | 223 |
| 2. 대한상공회의소 정관 | 239 |
| 3.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정관(안) | 252 |
| 4.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정관 | 263 |

표 목 차

| | |
|--|-----|
| <표 1> 연령별 전·겸업 농가 비중 변화 | 22 |
| <표 2> 농가경영주 연령별 판매액 분포 | 23 |
| <표 3> 농가경영주 품목별 연령별 분포 | 23 |
| <표 4>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이(1990~2015년) | 24 |
| <표 5> 농가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 24 |
| <표 6> 2018년 청년 창업농 선정 결과 | 25 |
| <표 7> 2018년 청년 창업농 특성 현황 | 25 |
| <표 8> 한일 양국의 귀농 관련 통계 비교(2016년 기준) | 26 |
| <표 9> 일본의 연도별·취농 형태별 신규 취농자수 | 26 |
| <표 10> 총인구 중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비중 | 27 |
| <표 11> 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 27 |
| <표 12> 농림수산물분야 부처별 예산 현황 | 28 |
| <표 13>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28 |
| <표 14> 농업회의소 주요 추진경과 | 50 |
| <표 15>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주요 활동 | 52 |
| <표 16>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규정 | 60 |
| <표 17> 국내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 61 |
| <표 18>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세스 | 72 |
| <표 19>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사례(경기 화성시) | 76 |
| <표 20> 프랑스 농업회의소 연표 | 104 |
| <표 21> 프랑스 루에레 농업회의소 운영사례 | 107 |
| <표 22> 독일 바이에른 농업인연맹 운영사례 | 108 |
| <표 23> 독일 농업청과 농업회의소 비교 | 110 |
| <표 24> 유럽 주요국의 농업회의소 비교 | 114 |
| <표 25> 상공회의소와 타경제단체 주요활동 비교 | 120 |
| <표 26> 주요 농업회의소의 개인회원 변화 | 128 |
| <표 27> 상공회의소법상 회원제 관련 규정 변화 | 129 |

| | |
|--|-----|
| <표 28> 상공회의소의 회원수 변화(개소) | 130 |
| <표 29> 당연회원 기준 상향조정과 회원수 및 회비 변화 | 130 |
| <표 30>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17년 말) | 134 |
| <표 31> 어업경영체 등록현황 | 134 |
| <표 32>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프로세스 | 137 |
| <표 3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결과 | 137 |
| <표 34> 지자체 농정위원회 참여사례(평창군) | 139 |
| <표 35> 농림 분야 법정 및 비법정 계획수립 현황 | 140 |
| <표 36> 농업회의소와 농특위 비교 | 144 |
| <표 37> 기초 시군 농업회의소 주요사업 | 151 |
| <표 38> 국가기술자격 타기관 시행종목 현황 | 165 |
| <표 39> 농림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 166 |
| <표 4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현황 | 168 |
| <표 41> 신규 농업회의소 연차별 추진전략(A시군 사례) | 169 |
| <표 42> 주요 시군 농업회의소 개인회비 납부현황(2017년) | 179 |
| <표 43> 주요 시군 농업회의소 개인회비 납부율 변화 | 180 |
| <표 44> 주요 시군의 회원 및 회비 수입 현황(2017년) | 180 |
| <표 45> 전체 예산 대비 회비 비율(2017년) | 180 |
| <표 46> 상공회의소의 연도별 수입 현황 | 181 |
| <표 47> 상공회의소 연도별 지출 현황 | 181 |
| <표 48> 당연회원의 회비 납부율 변화(%) | 182 |
| <표 49> 지방 상공회의소 재정 현황 | 182 |
| <표 50> 대한상공회의소 수입·지출 현황(2015년) | 183 |
| <표 51>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비 비중 | 183 |
| <표 52> 농어업회의소법 법안소위 대안과 이완영의원안 비교 | 191 |
| <표 53>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에 대한 법안 내용 비교 | 207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 21 |
| <그림 2> 연도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경영비 변화 | 22 |
| <그림 3>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경과 | 49 |
| <그림 4> 국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현황 | 58 |
| <그림 5> 농업회의소 조직운영 체계 | 62 |
| <그림 6> 농업회의소 주요 사업영역 | 63 |
| <그림 7>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참여 시스템 | 64 |
| <그림 8> 신규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세스 | 71 |
| <그림 9> 프랑스 농업직능조직의 배치 | 100 |
| <그림 10> 프랑스 농업권익대변 5대 축 | 101 |
| <그림 11> 프랑스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 106 |
| <그림 12> 독일의 지방농정 추진체계(주별 선택사항) | 110 |
| <그림 13> 일본의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 116 |
| <그림 14> 대한상공회의소 주요현황 | 117 |
| <그림 15> 대한상공회의소 조직 체계도 | 121 |
| <그림 16> 주요 농업회의소의 농가수 대비 개인회원 가입률 | 128 |
| <그림 17>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회원수와 회비 납부율 변화 | 128 |
| <그림 18>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농정 참여 시스템 | 136 |
| <그림 19> 충남 기초 중간지원센터 정책연결망 추후 전망 | 160 |
| <그림 20>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추진 | 161 |
| <그림 2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운영 구상 | 161 |
| <그림 22> 완주군 관내 농업인 전수 실태조사 사례 | 162 |
| <그림 23> 홍성군의 청년농 육성 정책 체계도 | 164 |
| <그림 24> 완주군 청년완주 점프 프로젝트 | 164 |
| <그림 25> NCS 개념과 필요성 | 167 |
| <그림 26> 19대 국회 법제화 추진현황 | 189 |
| <그림 27> 20대 국회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추진현황 | 190 |

| | |
|-------------------------------------|-----|
| <그림 28>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과제 | 195 |
| <그림 29>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향 | 200 |
| <그림 30> 단일모델과 연합모델 조직구조 비교 | 200 |
| <그림 3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원모집 계획 | 202 |
| <그림 32>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대의원 구성 계획 | 203 |
| <그림 33>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임원 구성 계획 | 204 |
| <그림 34>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체계 | 215 |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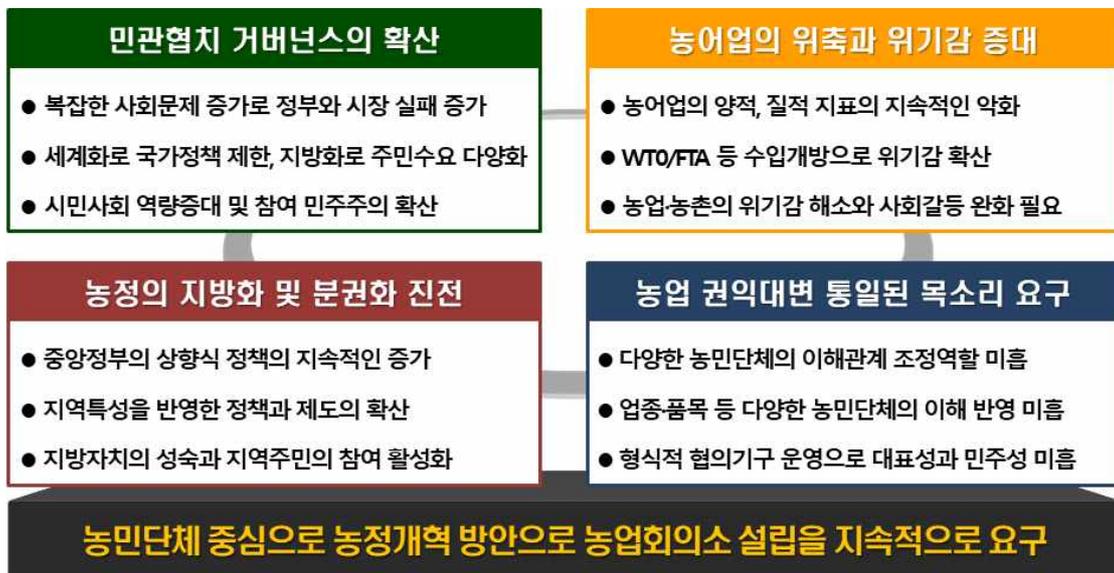
연구 개요

- ① 연구 배경
- ② 연구 목적
- ③ 연구 범위

제1장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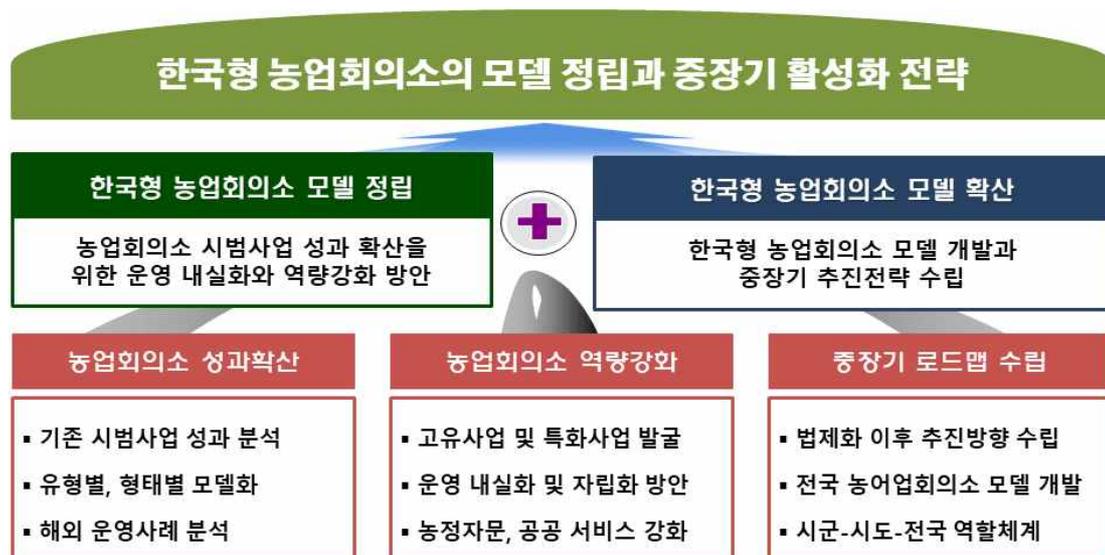
1. 연구 배경

- 농업회의소는 거버넌스 개념이 농업분야에 적용된 구체적인 형태로 민간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를 통한 선진국형 협치농정 실현이 목적임.
- 세계화와 지방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확산이 요구되고 있음.
- WTO/FTA 등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의 양적·질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할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함.
- 지방자치의 확산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상향식 농정, 지역특화 농정,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기존 농업인단체의 형식적 협의기구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 설립 필요.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오랜 기간 농업계 대의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 정부는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광역 2개소(충남, 제주)와 시군 26개소를 선정¹⁾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농업인의 농정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가 등장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와 전문성이 미흡하였음.
- 본 연구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 내실화와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정립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회의소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둘째, 농업회의소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운영 내실화와 자립화 방안, 농정자문 및 공공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굴하고자 함.
- 셋째,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추진방향, 전국 농업회의소 모델 개발,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소 역할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1) 충남 논산은 충청남도가 자체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강원도 정선은 민간 자원으로 설립하였음. 이들 지역까지 포함하면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가 설립 혹은 운영 중임.

3.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 전국의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역
 - 광역(2개소) :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군(28개소) : 기존(7개소, '10년~'12년), '15년 선정(5개소), '16년 선정(5개소), '17년 선정(6개소), '18년 선정(5개소)
- ※ 충남 자체 선정 지원(충남 논산), 민간 자율 설립(강원 정선) 포함.

나.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은 ① 국내외 사례 분석 ② 한국형 모델정립과 부문별 활성화 방안 ③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방안 등 3개 과제로 구성됨.
- ‘국내외 사례 분석’은 기존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 분석, 시범사업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 해외 유사 정책 분석 등 3개 세부과제로 구성.
- ‘한국형 모델정립과 부문별 활성화 방안’은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농정수립 및 갈등해소 방안,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 농업회의소 역량제고 방안,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 등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 방안’은 주체별 역할 확립과 연계 모델 제시,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등 2개 세부과제로 구분됨.



PART
02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목적

- ①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 ② 농업회의소의 개념과 위상

제2장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농업회의소²⁾의 필요성

1. 대내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가. 농가 인구의 절대 감소

- 과거 40년 동안 농가수와 농가인구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현재의 농가 고령화 수준을 감안할 때 농가 구조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수는 1980년 2,158천 가구에서 2017년 1,042천 가구로 △52% 감소하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10,827천명에서 2,422천명으로 △78% 감소함.

<그림 2>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가구, 천명)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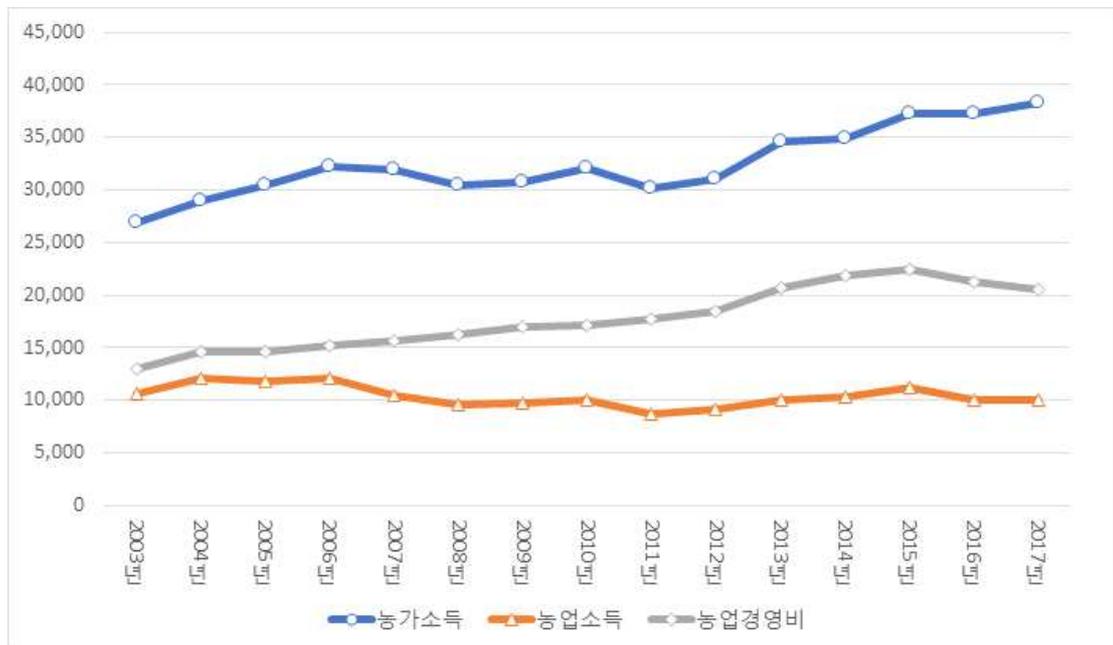
- 2)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분리되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업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수산분야를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로 설립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회의소’와 ‘농어업회의소’를 함께 사용함.

나. 농가 소득구조의 악화

- 2017년 평균 농가소득은 38,239천원으로 2003년 26,878천원 대비 42% 증가하였고,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57% 증가함. 반면 농업소득은 2017년 10,047천원으로 과거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음.
- 농가 소득구조의 악화로 겸업농, 특히 2종 겸업농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족한 농업소득을 농외소득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그림 3> 연도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경영비 변화

(단위 : 천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표 1> 연령별 전겸업 농가 비중 변화

(단위 : %)

| 연도 | 구분 | 40세미만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
| 2000년 | 전업농 | 53.3 | 54.2 | 54.8 | 71.9 | 83.1 | 86.6 |
| | 겸업농 | 46.7 | 45.8 | 45.2 | 28.1 | 16.9 | 13.4 |
| | 1종겸업 | 16.2 | 18.2 | 22.2 | 14.9 | 8.1 | 5.8 |
| | 2종겸업 | 30.5 | 27.6 | 23.0 | 13.2 | 8.8 | 7.6 |
| 2015년 | 전업농 | 31.7 | 26.4 | 33.3 | 54.1 | 73.5 | 81.7 |
| | 겸업농 | 68.3 | 73.6 | 66.7 | 45.9 | 26.5 | 18.3 |
| | 1종겸업 | 18.4 | 17.1 | 19.2 | 17.6 | 13.0 | 8.9 |
| | 2종겸업 | 49.9 | 56.5 | 47.5 | 28.3 | 13.5 | 9.4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황수철(2018. 9) 재인용

다. 농가 고령화와 양극화

- 농가구조의 취약성은 연령별 분포와 소득구조에서도 나타남. 30세미만 경영주가 0.1%, 792가구에 불과하고, 40세 미만을 합쳐도 1.2%에 불과함. 반면 65세 이상 농가는 53.5%로 초고령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임.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천만원 미만 농가가 67.8%로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1억 원 이상 농가는 2.7%에 불과한 상황임.

〈표 2〉 농가경영주 연령별 판매액 분포

(단위 : 명, %)

| 구분 | 500만원 미만 | 500~1천만원 | 1천~2천만원 | 2천~3천만원 | 3천~5천만원 | 5천~1억원 | 1억원 이상 | 계 | 비중 | |
|--------|----------|----------|---------|---------|---------|--------|--------|--------|-----------|-------|
| 경영주 연령 | 20~30세미만 | 293 | 83 | 84 | 91 | 79 | 62 | 100 | 792 | 0.1 |
| | 비중 | 37.0 | 10.5 | 10.6 | 11.5 | 10.0 | 7.8 | 12.6 | 100.0 | |
| | 30~40세미만 | 5,996 | 1,557 | 1,485 | 1,100 | 1,215 | 1,207 | 1,044 | 13,574 | 1.2 |
| | 비중 | 44.0 | 11.5 | 10.9 | 8.1 | 9.0 | 8.9 | 7.7 | 100.0 | |
| | 40~50세미만 | 42,403 | 9,832 | 8,690 | 6,051 | 6,419 | 6,430 | 4,200 | 84,025 | 7.7 |
| | 50~60세미만 | 116,524 | 29,002 | 26,102 | 19,377 | 20,870 | 21,568 | 13,381 | 246,824 | 22.7 |
| | 60~65세미만 | 76,107 | 20,915 | 19,267 | 13,649 | 13,696 | 11,998 | 5,666 | 161,298 | 14.8 |
| | 65~70세미만 | 85,001 | 25,673 | 22,339 | 14,353 | 12,377 | 8,236 | 2,881 | 170,860 | 15.7 |
| | 70~80세미만 | 190,011 | 53,027 | 37,519 | 17,976 | 11,348 | 5,755 | 1,740 | 317,376 | 29.2 |
| | 80세 이상 | 68,738 | 13,007 | 6,956 | 2,634 | 1,438 | 749 | 247 | 93,769 | 8.6 |
| | 계 | 585,043 | 153,096 | 122,442 | 75,231 | 67,442 | 56,005 | 29,259 | 1,088,518 | 100.0 |
| 비중 | 53.7 | 14.1 | 11.2 | 6.9 | 6.2 | 5.1 | 2.7 | 100.0 | | |

자료) 2015 농업총조사, 장민기 재인용(2018. 9)

〈표 3〉 농가경영주 품목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 구분 | 30세 미만 | 30세~40미만 | 40세~50미만 | 50세~60미만 | 60세~65미만 | 65세~70미만 | 70세~80미만 | 80세 이상 | 계 | 비중 |
|------|--------|----------|----------|----------|----------|----------|----------|--------|-----------|-------|
| 논벼 | 293 | 4,555 | 30,258 | 88,195 | 60,896 | 71,793 | 151,805 | 46,148 | 453,896 | 41.7 |
| 노지작물 | 311 | 6,032 | 40,590 | 119,986 | 78,142 | 81,028 | 147,780 | 45,169 | 519,038 | 47.7 |
| 시설작물 | 82 | 1,456 | 7,378 | 19,709 | 11,767 | 10,159 | 10,388 | 1,344 | 62,283 | 5.7 |
| 축산 | 153 | 1,531 | 5,799 | 18,934 | 10,493 | 7,880 | 7,403 | 1,108 | 53,301 | 4.9 |
| 계 | 792 | 13,574 | 84,025 | 246,824 | 161,298 | 170,860 | 317,376 | 93,769 | 1,088,518 | 100.0 |

자료) 2015 농업총조사, 장민기 재인용(2018. 9)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농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경작 면적 3ha 이상 농가 비중은 1990년 10.2%에서 2015년 43.5%로 4.3배 증가함. 같은 기간에 논농업(3ha 이상) 7.2배, 시설농업(2천평 이상) 3.8배, 한육우(50마리 이상) 11.5배, 낙농(50마리 이상) 7.8배, 양돈(1,000마리 이상) 3.9배 증가함.
-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됨.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1990년 0.3008에서 2016년 0.4807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농업소득 지니계수는 0.4414에서 0.9734로 증가하였음.

<표 4>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이(1990 ~ 2015년)

(단위 : %)

| 구분 | 1990(A)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B) | B/A |
|-----------------|---------|------|------|------|------|---------|-------|
| 경작지(3ha이상) 비중 | 10.2 | 19.1 | 25.7 | 33.3 | 43.6 | 43.5 | 4.3배 |
| 논농업(3ha이상) 비중 | 6.2 | 14.8 | 20.0 | 29.5 | 37.7 | 44.4 | 7.2배 |
| 시설농업(2천평이상) 비중 | 25.5 | 38.3 | 47.1 | 52.9 | 50.7 | 51.2 | 3.8배 |
| 한육우(50마리이상) 비중 | 5.5 | 8.0 | 25.0 | 32.5 | 47.8 | 63.2 | 11.5배 |
| 낙농(50마리이상) 비중 | 8.7 | 17.8 | 50.4 | 71.6 | 82.8 | 88.5 | 7.8배 |
| 양돈(1000마리이상) 비중 | 23.3 | 36.5 | 60.2 | 77.9 | 88.4 | 91.0 | 3.9배 |

주) 1990~2005년의 숫자는 한육우를 제외하고 이정환(2007)에서 재인용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황수철(2018. 9) 재인용

<표 5> 농가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 구분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겸업소득 | 사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
| 1990 | 0.3008 | 0.4414 | 0.9447 | 0.7217 | 0.6049 | |
| 1995 | 0.3289 | 0.5054 | 0.9373 | 0.7069 | 0.6122 | |
| 2005 | 0.4159 | 0.7033 | 0.9597 | 0.7017 | 0.5433 | |
| 2010 | 0.4522 | 0.8738 | 0.9986 | 0.6927 | 0.4908 | |
| 2016 | 0.4807 | 0.9734 | 0.9189 | 0.7130 | 0.4268 | 0.6760 |

주) 1990~2000년의 지니계수는 이명현(2015)의 추정결과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황수철(2018. 9) 재인용

라. 미래 농업세대의 확보 위기

- 2017년 현재 40세 미만 농가수가 1만 세대 이하로 떨어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는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급감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최종 1,600명으로 확대)을 선발하여 3년 동안 영농정착 자금을 지급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표 6> 2018년 청년 창업농 선정 결과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특광 | 합계 |
|-------|-----|-----|-----|-----|-----|-----|-----|-----|-----|-----|-------|
| 배정(a) | 155 | 62 | 62 | 114 | 186 | 179 | 192 | 121 | 50 | 79 | 1,200 |
| 선정(b) | 347 | 227 | 218 | 308 | 478 | 536 | 602 | 376 | 88 | 146 | 3,326 |
| (b/a) | 2.2 | 3.7 | 3.5 | 2.7 | 2.6 | 3.0 | 3.1 | 3.1 | 1.8 | 1.8 | 2.8 |
| 최종 | 155 | 62 | 62 | 114 | 176 | 169 | 192 | 111 | 50 | 77 | 1,168 |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2018). 장민기 재인용.

<표 7> 2018년 청년 창업농 특성 현황

| 구분 | | 예정자 | 1년차 | 2년차 | 3년차 | 합계 | |
|---------|---------|-----|-----|-----|-----|-------|-----|
| 영농경력별 | | 502 | 452 | 144 | 70 | 1,168 | |
| 성별 | 남성 | 396 | 385 | 120 | 67 | 968 | |
| | 여성 | 106 | 67 | 24 | 3 | 200 | |
| 계열 | 농업계졸업 | 181 | 144 | 48 | 22 | 395 | |
| | 비농업계졸업 | 321 | 308 | 96 | 48 | 773 | |
| 귀농여부 | 귀농 | 347 | 333 | 108 | 50 | 838 | |
| | 재촌 | 155 | 119 | 36 | 20 | 330 | |
| 영농기반 마련 | 증여 상속 | 전체 | 20 | 19 | 7 | 3 | 49 |
| | | 일부 | 73 | 49 | 12 | 5 | 139 |
| | 부모와는 별도 | | 255 | 222 | 75 | 35 | 587 |
| | 부모기반 없음 | | 154 | 162 | 50 | 27 | 393 |
| 협업 경영 | 부부공동 | | 97 | 125 | 56 | 30 | 308 |
| | 법인공동 | | 19 | 14 | 8 | 2 | 43 |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2018). 장민기 재인용.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일본은 201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 후계농 확보를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청년농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에 비해 농가인구가 적고 고령화 비율은 높지만 귀농인과 청년 귀농인은 월등히 높은 상황임.
- 2016년 신규취농자는 60.2천명으로 2년 연속 6만 명을 넘었음. 인정 농업인수는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표 8> 한일 양국의 귀농 관련 통계 비교(2016년 기준)

| 구분 | 한국 | 일본 |
|-------------------|-----------------------------|------------------------------|
| 농가인구(천명) | 2,496 | 1,922 |
| 65세이상 농가인구(천명) | 1,006 | 1,254 |
| 귀농인 수(명) | 20,599 | 60,150 |
| 청년 귀농인 수(명) | 5,307(40세 미만) | 19,020(45세 미만) |
| 청년농 정책 | 청년창업농(만40세미만, 월80~100만원) | 청년취농급부금 (45세 미만, 연간150만엔) |

자료) 신경미(2018.2)

<표 9> 일본의 연도별·취농 형태별 신규 취농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 계 | 취농형태별 | | | |
|-------|------|-------|--------|-------|-------|
| | | 45세미만 | 자영농취농자 | 신규참가자 | 고용취농자 |
| 2006년 | 81.0 | | 72.4 | 2.2 | 6.5 |
| 2007년 | 73.5 | | 64.4 | 1.8 | 7.3 |
| 2008년 | 60.0 | | 49.6 | 2.0 | 8.4 |
| 2009년 | 66.8 | | 57.4 | 1.9 | 7.6 |
| 2010년 | 54.6 | | 44.8 | 1.7 | 8.0 |
| 2011년 | 58.1 | | 47.1 | 2.1 | 8.9 |
| 2012년 | 56.5 | 17.3 | 45.0 | 3.0 | 8.5 |
| 2013년 | 50.8 | 16.0 | 40.4 | 2.9 | 7.5 |
| 2014년 | 57.7 | 18.5 | 46.3 | 3.7 | 7.7 |
| 2015년 | 65.0 | 19.8 | 51.0 | 3.6 | 10.4 |
| 2016년 | 60.2 | 19.0 | 46.0 | 3.4 | 10.7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6 신규취농자조사(2017). 신경미 재인용

마. 농촌지역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

-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은 '75년 50.8%에서 '15년 18.6%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농촌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73.9%에서 27.4%로 급감하였음.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에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됨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함.

〈표 10〉 총인구 중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비중

(단위 : 천명, %)

| 구분 | 총인구(A) | 농촌인구(B) | 농가인구(C) | 비율 | |
|------|--------|---------|---------|------|------|
| | | | | B/A | C/B |
| 1975 | 35,281 | 17,910 | 13,244 | 50.8 | 73.9 |
| 1980 | 38,124 | 16,002 | 10,827 | 42.0 | 67.7 |
| 1985 | 40,806 | 14,006 | 8,521 | 34.3 | 60.8 |
| 1990 | 42,869 | 11,102 | 6,661 | 25.9 | 60.0 |
| 1995 | 45,093 | 9,572 | 4,851 | 21.2 | 50.7 |
| 2000 | 47,008 | 9,381 | 4,031 | 20.0 | 43.0 |
| 2005 | 48,138 | 8,764 | 3,434 | 18.2 | 39.2 |
| 2010 | 49,410 | 8,758 | 3,063 | 17.7 | 35.0 |
| 2015 | 50,617 | 9,392 | 2,569 | 18.6 | 27.4 |

자료)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6. 이태호(2018.9)에서 재인용

〈표 11〉 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 구분 | '13년 7월 | '14년 7월 | '15년 7월 | '16년 7월 | '17년 7월 | '18년 6월 |
|-----------|---------|---------|---------|---------|---------|---------|
| 전체 시군구 수 | 228 | 228 | 228 | 228 | 228 | 228 |
| 소멸저위험 | 41 | 30 | 24 | 20 | 16 | 12 |
| 정상지역 | 57 | 63 | 62 | 61 | 54 | 51 |
| 소멸주의단계 | 55 | 56 | 62 | 63 | 73 | 76 |
| 소멸위험진입 | 73 | 76 | 76 | 79 | 78 | 78 |
| 소멸고위험 | 2 | 3 | 4 | 5 | 7 | 11 |
| 소멸위험지역 소계 | 75 | 79 | 80 | 84 | 85 | 89 |
| (비중) | (32.9) | (34.6) | (35.1) | (36.8) | (37.3) | (39.0) |

주) 기초 지자체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작성.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고용정보원(2018.8)에서 재인용

3)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0.5미만인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

바. 농림식품분야 재정지출 위축

- 2018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7조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4.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5% 감소됨.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총 14조 4,996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3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052억원(△0.7%) 감소.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에 불과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음.

<표 12> 농림수산식품분야 부처별 예산 현황

| 구분 | 2016 (결산) | 2017(A) (추경포함) | 2018(B) (예산) | 전년대비 | |
|-------------|--------------|-------------------|-----------------|--------|-------|
| | | | | (B-A) | 증감(%) |
| 국가전체 | 386.4조원 | 410.1조원 | 428.8조원 | 18.7 | 4.6 |
| ◆ 농림수산식품분야 | 19.6조원 | 19.8조원 | 19.7조원 | △0.1 | △0.5 |
| • 농림축산식품부 | 138,001억원 | 146,048억원 | 144,996억원 | △1,052 | △0.7 |
| • 해양수산부 | 47,100억원 | 49,910억원 | 50,458억원 | 548 | 1.1 |
| • 산림청 | 19,665억원 | 20,612억원 | 20,456억원 | △156 | △0.8 |
| • 농진청 | 8,820억원 | 9,171억원 | 9,381억원 | 210 | 2.3 |
| • 식약처(식품안전) | 4,171억원 | 4,521억원 | 4,745억원 | 224 | 5.0 |

자료) 대한민국 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

<표 13>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 조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연평균증가율 |
|-----------------|-------------|-------------|-------------|-------------|-------------|-------------|-------------|------------|
| 보건·복지·고용 | 92.6 | 99.3 | 106.4 | 120.4 | 126.9 | 131.9 | 144.7 | 7.7 |
| 교육 | 45.5 | 49.9 | 50.7 | 52.9 | 55.1 | 59.4 | 64.2 | 5.9 |
| 문화·체육·관광 | 4.6 | 5.1 | 5.4 | 6.4 | 6.9 | 7.0 | 6.5 | 5.9 |
| 환경 | 6.0 | 6.5 | 6.5 | 6.9 | 7.0 | 7.1 | 6.9 | 2.4 |
| R&D | 16.0 | 17.1 | 17.8 | 18.9 | 19.1 | 19.5 | 19.7 | 3.5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1 | 16.7 | 15.4 | 18.1 | 18.6 | 18.8 | 16.3 | 1.3 |
| SOC | 23.1 | 25.0 | 23.7 | 26.1 | 23.7 | 22.2 | 19.0 | △3.2 |
| 농림·수산·식품 | 18.1 | 18.9 | 18.7 | 19.8 | 19.6 | 19.8 | 19.7 | 1.4 |
| 국방 | 33.0 | 34.5 | 35.7 | 37.6 | 38.8 | 40.3 | 43.2 | 4.6 |
| 외교·통일 | 3.9 | 4.1 | 4.2 | 4.5 | 4.7 | 4.6 | 4.7 | 3.2 |
| 공공질서·안전 | 14.5 | 15.2 | 15.8 | 17.1 | 17.5 | 18.2 | 19.1 | 4.7 |
| 일반·지방행정 | 55.1 | 56.2 | 57.2 | 58.2 | 62.9 | 65.1 | 69.0 | 3.8 |
| 총지출 | 325.4 | 349.0 | 355.8 | 384.7 | 398.5 | 410.1 | 428.8 | 4.7 |

자료) 대한민국 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분권과 협치농정의 강화

가. 지방분권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제시한바 있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표방하며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⁴⁾
- 저출산·고령사회, 4차산업 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20여년이 지났지만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이 7:3이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6:24를 차지하는 등 지역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천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임.
- 지방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관(官) 중심의 지방자치로 주민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임.
 -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임.
-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발전 추진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도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정부와 관(官) 주도의 농정으로는 복잡한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는 협치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2018. 9.

나. 6대 전략 33개 과제

-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에 따라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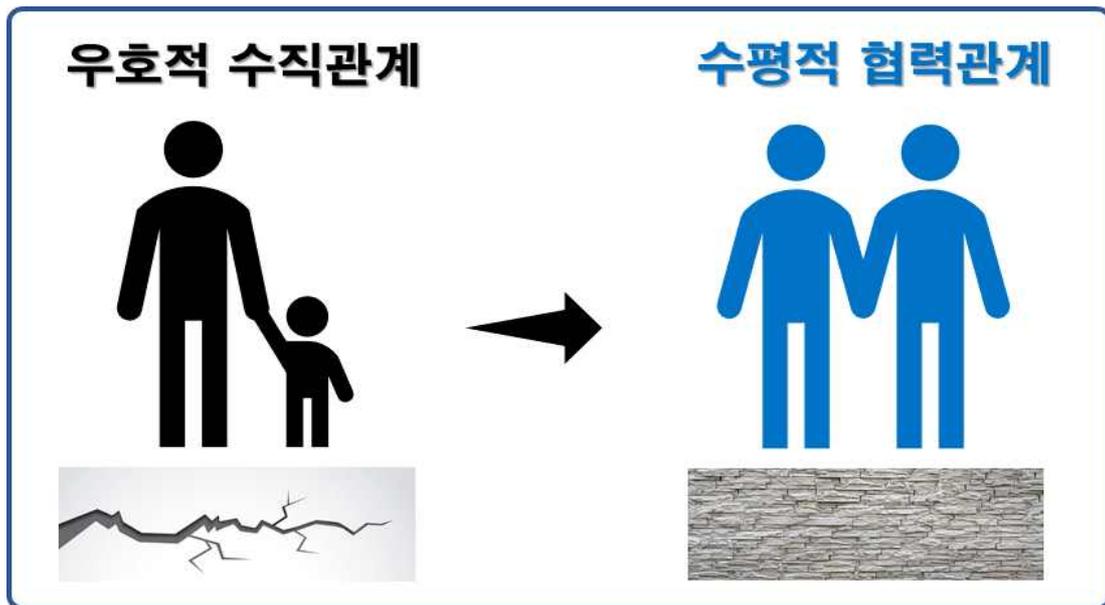
| 추진전략 | 과제명 |
|--------------------------------|--|
| 1 주민주권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속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
|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
|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
|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

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9)

3. 협치농정의 관점과 과제⁵⁾

가. 협치농정⁶⁾에 대한 관점

- 농업인의 농정참여 활성화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관치(官治)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협치에 참여하는 민간은 ‘상호신뢰’ ‘참여와 협력’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등을 기대하는 반면, 정책을 주도하는 관(官)은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이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임.
-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호적 수직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관(官)이 절대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민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협치농정 달성이 어렵고, 민-관의 갈등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
- 관(官)이 가진 권한과 지위, 역할의 일정부분을 민간과 나누고, 민간이 행정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성숙할 때 협치농정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



5) 본 내용은 계간 농정연구(2017 겨울호)에 실린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을 요약함

6) 여기서 협치농정은 민-관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지방 정부의 협치도 포함함. 아울러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밝혀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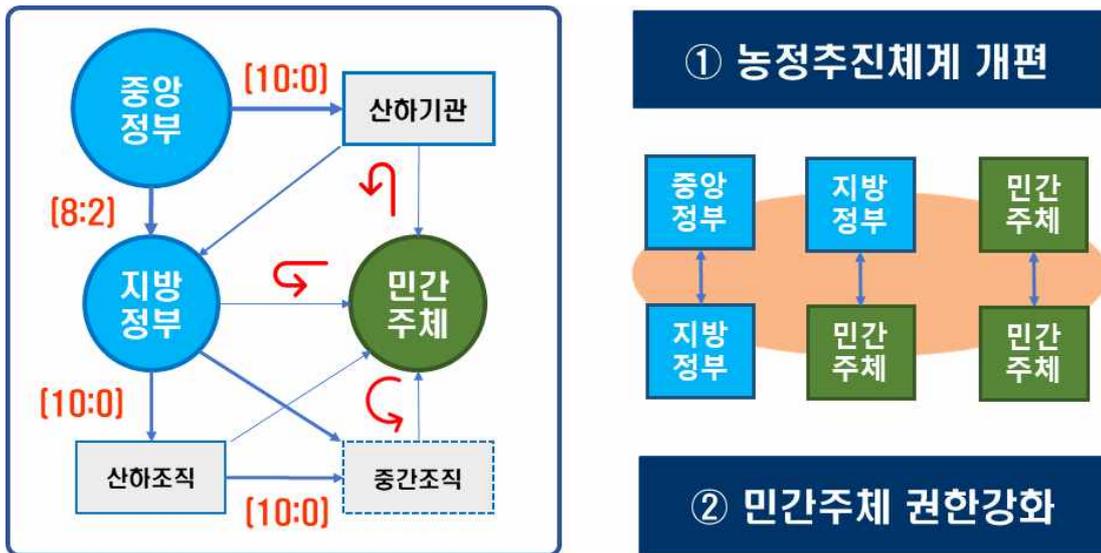
나. 협치농정의 범위와 대상

- 민관 협치농정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협치농정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이슈는 ‘정책’ ‘제도’ ‘예산’에 대한 민-관의 권한과 자원 배분 문제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권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은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되고 집행권한은 없는 것이 사실임.
- 실질적인 권한은 관(官), 특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도 특정단체와 전문가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농정에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 제도,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권한을 민간과 얼마만큼 공유하고,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협치농정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 협치농정의 실현과제

- 협치농정 실현은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협치농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임.
- 현재 과도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중간지원조직까지 관(官) 조직은 계속 확장하는데, 정책결정과 예산배분 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음. 지방정부와 민간은 수용자의 입장인 경우가 많음.
- 이런 구조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민간주체, 민간주체↔민간주체 간에 협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임.
-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 간에 협치를 통해 얻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임.
- 이런 관점에서 농정추진체계의 재편과 민간주체의 권한강화⁷⁾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개혁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민간주체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권한강화'임을 특별히 강조함. 민간주체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협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비롯된 발상임. 협치의 핵심은 역량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혹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임.

4.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가. 한국농정의 구조적 한계

-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에 어떤 정책을 내려줄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임. 단위 정책별로 선정기준, 지원조건, 예산규모 등을 중앙정부가 결정함.
- 둘째, 매우 안정적이며 견고한 특징을 나타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정책방향은 변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셋째, 농업인과 지역 간에 경쟁구도를 형성함.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타협적인 상황이 조성됨.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 지역과 농업인에게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정책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높음.
- 넷째, 지역의 특성과 자율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라 가는 것이 우선이고, 지역의 현실과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지방정부는 예산 매칭에 대한 의무만 있고, 정책 메뉴를 지역현실에 맞게 운영할 권한은 미흡함.
- 다섯째, 타협의 정신은 실종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농업계 내부 경쟁으로 다가오는 농업·농촌의 더 큰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나. 협치 기구의 정상화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등 다양한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치를 한다고 하고, 민간은 협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은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음.
- 관(官)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형식적인 현재의 협치 기구를 민간의 광범위한 참여와 상시적인 협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 |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25명, 0건) | 간척지운영위원회(15명, 0건)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24명, 0건) |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20명, 0건)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32명, 2건) |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16명, 1건) |
| 농림총지위원회(15명, 0건)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52명, 0건) | 동물복지위원회(10명, 1건) |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18명, 0건) | 농업재해보험심의회(21명, 1건) | 식품산업진흥심의회(29명, 2건) |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15명, 2건) | 도시농업협의회(15명, 0건) |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20명, 0건) |
| 수익사국가시험위원회(15명, 3건)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15명, 0건)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18명, 0건) |
|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증지원위원회(20명, 1건) | 중앙기축방역심의회(97명, 0건)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9명, 0건) |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10명, 2건) | 축산발전심의위원회(25명, 1건) | 품종보호심판위원회(8명, 6건) |

자료) 농식품부, 행정기관위원회활동내역, '17년 기준
 주) ()의 인원은 위원수이고, 건수는 회의 개최 현황임

5.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가. 민관혼재와 남남갈등의 극복

- 협치농정을 달성하는데 민간조직의 역량강화와 재조직화가 중요한 과제이자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 매년 농업인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로 민간역량은 약화되는데, 농업인단체와 관련 단체·협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⁸⁾. 다양성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계의 목소리가 분열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
- 보통 시군은 농업인단체가 30개, 시도는 50개, 중앙은 100개 내외 농업인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협치 기구는 대부분 규모가 큰 단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더욱이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관(官) 조직과 결속력이 매우 높은 특징 때문에 민관이 혼재되어 있고, 남남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민관협치의 실현이 어려운 구조임.
- 민간조직이 지역과 품목, 관(官) 조직과의 개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권한과 책임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8) 2018년 현재 농식품부에 등록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644개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나. 민간조직의 재편 방향

- 협치농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민간조직의 견고한 재조직화를 통해 행정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임.
- 첫째, 현재의 임의조직을 법적 대표 조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법률에 근거한 대표조직은 상공회의소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인단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둘째, 다수 조직이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다수 농업인단체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정 민간단체 중심의 농정참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셋째, 큰 규모의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중소농,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넷째, 농업인단체와 농협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농업인이 농협의 주인임에도 갈등 관계가 조성되면서 농업계가 분열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민간조직의 재편을 통해 단순 협의조직에 불과한 민간의 역할을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문재인정부와 농업회의소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①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②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과 함께 ③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음.
-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내용이 포함되었음.
-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식품부)’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으로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 구축’ 내용이 반영됨.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p.122)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 농식품부)
 - (p.73)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으로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 구축

참고자료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농업회의소 부분)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제2절 농업회의소의 개념과 위상

1. 농업회의소의 의의와 개념

- 농업회의소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 농업계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
- 농업회의소는 매우 독특한 위상과 권한을 갖는 조직임.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기구이지만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단체임.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기구”를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인 “공적기구”로, 그 활동을 “공적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임.
- 농업회의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첫째, 농업인단체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의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를 구성해야 함. 내부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농업계를 대표함. 둘째,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회의소를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 셋째, 국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농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해야 함. 정부의 임시방편적 약속이 아니라 일관되고 항시적인 보장을 의미함.
-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농업회의소는 성립하지 않음. 예컨대, 농업계가 자율적으로 농업회의소를 만들어도 국가가 농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법률이 있어도 법에 명시된 설립·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업회의소는 성립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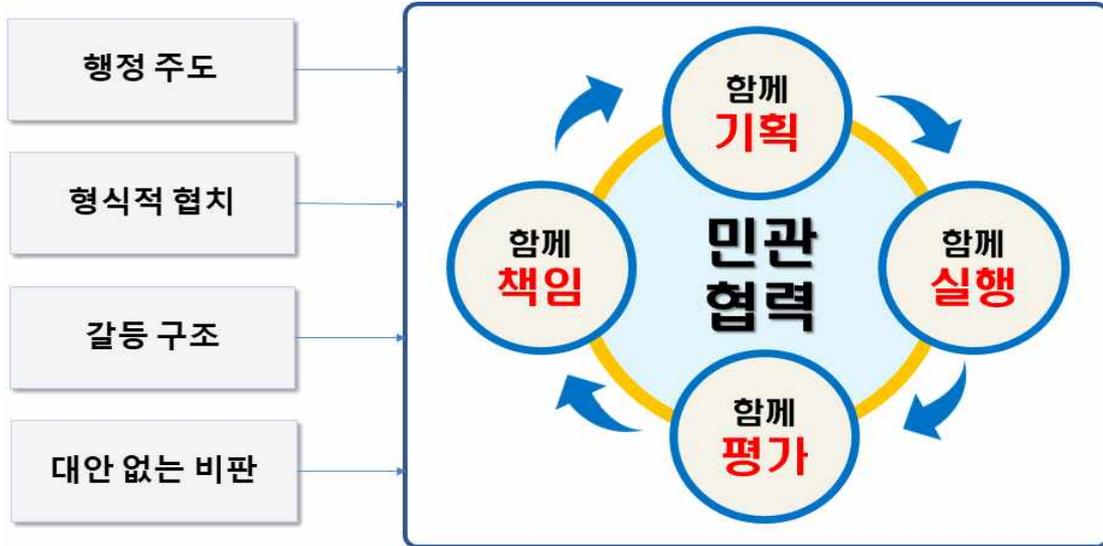
2.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

- 많은 사람들이 농업회의소를 농업인단체 혹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정도로 오해하고 있음. 분열된 농업인단체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아내는 것이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음.
-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과 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임. 공적기구라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공공기관 내지 준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함. 둘째,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게 됨.
- 농업인이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고, 국가의 권한을 농업인에게 법률로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농업회의소임. 그래서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라고 하는 것임.
-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의 산하기관을 통해 제공해 왔음. 이제 농업인자치와 주민자치 방식으로 농업인 스스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고,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조정해서 농정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기능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3. 진정한 민관협력 체계로 전환

-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대표·대의 조직으로서 중앙-시도-시군 단위에서 협치농정을 제도화하고, 민관이 함께 기획-실행-평가-책임지는 진정한 민관협력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함.
- 첫째,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에서 현장과 지역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관(官) 주도의 농정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둘째,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현장 농업인과 농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정책 탐색비용을 줄이고, 현장감 있는 농업정책의 실현이 필요함.
- 셋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함.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여야 함.
- 넷째, 농업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 숫자가 줄고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계의 목소리와 정치적 위상은 날로 약화되고 있음.
- 다섯째,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의 영역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중앙-지역 단위 모두에서 협치농정을 실현해야 함. 지역의 자치농정 확대가 중요하지만 중앙농정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의 전국 확대를 통해 시군-시도-전국 단위에서 수평적·수직적 협치농정을 동시에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는 관(官) 주도의 농정에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의미가 있음. 농업인이 농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PART
03

국내외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 ①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현황
- ②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
- ③ 국내 상공회의소 운영사례

제3장 국내외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제1절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현황

1.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가. 주요 추진경과

- 국내에서도 1998년에 농업회의소 설립과 법제화가 시도된바 있음. 국민의 정부 들어 UR/WTO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계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농업인단체와 농협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함⁹⁾.
- 실패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임. ① 중앙주도의 하향식으로 지역과 현장 농업인의 참여가 부족하여 충분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법제화가 우선이었고 중앙→지역 조직 설립 방식으로 기획되었음. ② 농업회의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부족하였음. 농업인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③ 농업계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였음. 대표 선출을 포함해 의사결정구조의 배분 문제에서 갈등관계가 표출되었음.
- 10여년이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음¹⁰⁾. 과거 실패경험을 교훈 삼아 ① 지역→중앙의 상향식 설립 추진 ② 농업인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기관의 참여와 합의 ③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추진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법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었음.

9) 당시 김대중 정부는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책정하였지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단됨

10)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예산이 아니라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교육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3차 시범사업을 통해 8개 지역이 선정되고 7개 지역에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음(영주시는 중도 포기)¹¹⁾.
- 2013년은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없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지 않음.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재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3개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한편 2013년에 수립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2015년 농업회의소 법제화 계획 내용이 반영됨.
-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됨. 2013년 12월 19대 국회에서 박민수 의원이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처음 발의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신성범 의원이 추가 법안을 발의함¹²⁾.
- 2014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졌고, 긍정적인 평가결과¹³⁾를 토대로 2015년에 4차 시범사업이 재개됨.
- 2015년 4차 시범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충남 예산, 전북 완주, 경북 의성, 경남 고성 등 5개 지역이 선정됨. 2015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광역 시·도 지역이 포함되었고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됨.
- 2016년 5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화성, 충남 아산, 충남 당진, 전북 담양 등 5개 지역이 선정됨. 충청남도는 충남 논산을 자체 선정하여 지원함.
- 2017년 6차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 평택, 충북 괴산, 충남 서산, 충남 금산, 전북 익산, 경북 영덕 등 6개 지역이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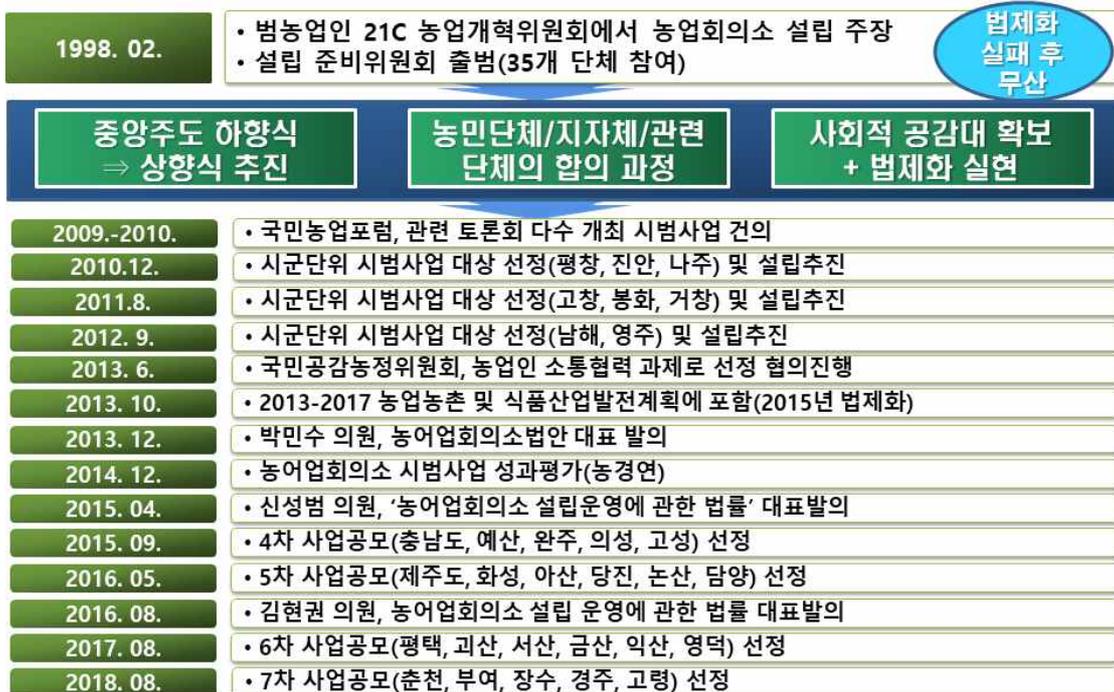
11) 시범사업 초기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역의 이해와 공감대가 미흡하여 초기 3년 동안 신청지역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음

12)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음.

13)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지역과 일반지역의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7개 거버넌스 지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표성, 참여성, 투명성, 형평성, 안정성 등 5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도출되었음. 현장 농업인의 농정 참여, 농업인의 소통과 논의 활성화, 행정과 파트너십 형성, 유관기관과 보완적 역할수행, 포괄적인 농정참여 등이 주요성으로 제시됨

- 2018년 7차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 춘천, 충남 부여, 전북 장수, 경북 경주, 경북 고령 등 5개 지역이 선정됨.
- 한편 2016년 8월 20대 국회에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이완영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2명이 별도의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함.
- 19대 조기대선을 통해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반영됨.
- 2018년 2월에 수립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회의소 법제화와 전국화 추진 내용이 반영됨.
- 2017년 11월에 전국 9번째로 충남 ‘당진군농어업회의소’가 출범하였고, 12월에는 농식품부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지역자율 방식으로 추진한 강원도 ‘정선군농어업회의소’가 전국 10번째로 창립하였음.
- 2018년 2월에 충남 아산시, 3월에는 전북 완주군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창립할 예정임.

<그림 4>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경과



<표 14> 농업회의소 주요 추진경과

| 연도 | 주요 경과 |
|-----------|---|
| 1998년 2월 |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 발족,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
| 1998년 10월 | 농어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 |
| 2009년 9월 | 국민농업포럼 농업회의소 설립 토론회 개최 |
| 2009년 12월 |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농어업회의소” 항목 포함 |
| 2010년 12월 | 농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실시 |
| 2010년 12월 | 1차 시범사업(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 선정 |
| 2010년 12월 | 농정 거버넌스 기구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
| 2011년 5월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및 중앙논의기구 설명회 |
| 2011년 5월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 제작 |
| 2011년 8월 |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지원 조례 공포(전국 최초) |
| 2011년 8월 | 2차 시범사업(전북 고창, 경북 봉화, 경남 거창) 선정 |
| 2011년 9월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전국 최초) |
| 2012년 2월 |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2년 2월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수정판) 제작 |
| 2012년 3월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2년 4월 | 거창군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2년 7월 |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2년 9월 | 3차 시범사업(경북 영주, 경남 남해) 선정 ※영주 중도포기 |
| 2012년 11월 |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3년 1월 |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창립 |
| 2013년 3월 | 농식품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시 농어업회의소 가점 부여 |
| 2013년 4월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출범, 26개 중점 논의과제로 선정 |
| 2013년 7월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3년 10월 |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에 농어업회의소 반영 |
| 2013년 11월 | 신성범,여상규,김춘진,박민수의원,한국농축산연합회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 개최 |
| 2013년 12월 | 박민수의원 등,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

| 연도 | 주요 경과 |
|-----------|---|
| 2014년 2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안 상정 |
| 2014년 4월 | 농어업회의소 교육컨설팅시범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용역 진행 ('14.4~12) |
| 2014년 12월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창립 |
| 2015년 4월 | 신성범의원 등, 농어업회의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2015년 4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공청회) |
| 2015년 4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 2015년 8월 | 농식품부, '15년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공모·선정 계획 발표 |
| 2015년 9월 | 4차 시범사업(광역1(충청남도) 시군4(충남 예산, 전북 완주, 경북 의성, 경남 고성)) 선정 |
| 2016년 5월 | 농식품부, '16년 광역 및 시군 농업회의소 공모·선정 계획 발표 |
| 2016년 7월 | 5차 시범사업(제주도, 경기 화성, 충남 아산, 충남 당진, 전북 담양) 선정 |
| 2016년 8월 | 김현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
| 2016년 11월 |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7년 2월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 수정법안 통과 |
| 2017년 5월 |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공약) |
| 2017년 7월 |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포함 |
| 2017년 7월 | 농식품부, '17년 신규 농업회의소 공모·선정 계획 발표 |
| 2017년 8월 |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 공동 농업회의소 토론회 개최 |
| 2017년 9월 | 6차 시범사업(경기 평택, 충남 금산, 충남 서산, 충북 괴산, 전북 익산, 경북 영덕) 선정 |
| 2017년 11월 | 이완영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농어업회의소법 발의 |
| 2017년 11월 | 당진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7년 12월 | 정선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8년 2월 |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8년 3월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회의소 법제화 내용 반영 |
| 2018년 3월 | 완주군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 2018년 7월 | 농식품부, '18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선정 계획 발표 |
| 2018년 8월 | 7차 시범사업(강원 춘천, 충남 부여, 전북 장수, 경북 고령, 경북 경주) 선정 |

나. 중앙단위 지원 활동

(1)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활동

- 2013년 1월에 전국단위 농어업회의소 추진위원회의 전 단계로서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가 결성됨
- 지원회의는 시범사업 초기에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농업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제안·촉진하는 중앙단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함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관련 참여주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범농어업계의 공감대 형성 ○ 농업회의소에 대한 법·제도·정책의 조사 및 연구 ○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지원 및 추진성과의 전국적 확산 |
|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기관·단체, 127명의 개인 참여 ○ 농수축산연합회 등 농어업단체를 중심으로 단체 참여 ○ 지역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도위원회 설치 ○ 시군 농업회의소 임직원 협의회 정기 개최 |

<표 15>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주요 활동

| 구분 | 일시 | 주요 내용 |
|--------------------|---------|----------------------------|
| 중앙 농업인단체 설명회 | 2013.11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어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1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설명회 |
| | 2013.11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설명회 |
| | 2013.11 | 가톨릭농업인회 설명회 |
| | 2013.12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설명회 |
| | 2013.12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설명회 |
| | 2013.12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설명회(1차) |
| | 2013.12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설명회(2차) |
| | 2013.12 |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설명회 |
| | 2013.12 |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설명회 |
| 지역 순회 설명회 | 2013.12 | 한국4-H 본부 설명회 |
| | 2013.12 | 경기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강원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충청북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구분 | 일시 | 주요 내용 |
|--------------|---------|-----------------------|
| | 2013.12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전라북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전라남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경상북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경상남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 2013.12 | 제주도 농업회의소 설명회 |
| 워크숍 및 토론회 | 2013.12 | 2013년 농업회의소 시군 합동 워크숍 |
| | 2013.11 | 농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 |
| | 2013.12 | 농업회의소 홍보 동영상 제작 |



(농업인단체 설명회)



(농업인단체 설명회)



(지역순회 설명회)



(지역순회 설명회)



(시군 합동 워크숍)



(법제화 토론회)

(2)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운영

- 2014년 12월에 기존 시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업회의소의 전국적 확산과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하고자 자율적으로 설립.
- 중앙단위 농업회의소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며, 추진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이로 전환하는 한시적인 조직임.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농업회의소 간에 상시적인 정보 교류 ○ 농업회의소의 전국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 중앙단위 농업회의소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 |
|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공동 워크숍 개최 ○ 농업회의소 토론회와 세미나 공동 개최 ○ 연도별 사업방향 및 성과 분석 |



(2017년 상반기 워크숍)



(2017년 하반기 워크숍)



(농업회의소 토론회, 2017)



(농정거버넌스 토론회, 2017)

다. 농업회의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1) 농업회의소 홍보 동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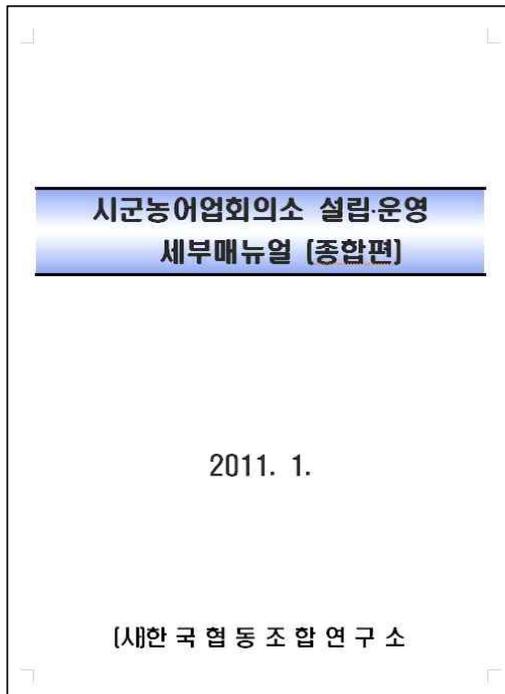
- (사)국민농업포럼에서는 2013년에 농업회의소 홍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

※ 2018년에 농업회의소 홍보 동영상 추가 제작



(2)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 제작

- (사)국민농업포럼에서는 2011년에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012년에 한차례 수정 보완함.



| 목 차 | |
|----------------|---------------------------|
| PART 01 | 농어업회의소의 소개 및 운영원칙 |
| 제1장 | 농어업회의소 소개 2 |
| 제2장 | 정책추진 방향 5 |
| 제3장 | 운영원칙 8 |
| PART 02 | 설립 추진 프로세스 및 주요일정 |
| 제4장 | 주요일정 및 시군담당자의 역할 11 |
| 제5장 | 세부일정별 체크리스트 16 |
| PART 03 | 주요 수행업무 |
| 제6장 | 정보 및 자료의 수집 25 |
| 제7장 | 기본계획 수립 27 |
| 제8장 | 지자체장 보고 29 |
| 제9장 | 설립추진단 준비모임 개최 35 |
| 제10장 | 설립추진단 구성 38 |
| 제11장 | 설립추진단 회의 42 |
| 제12장 | 정관(안) 작성 44 |
| 제13장 | 사업계획서 작성 60 |
| 제14장 | 재정계획서 작성 63 |
| 제15장 | 의회 보고 66 |
| 제16장 | 회원 가입 사무 68 |
| 제17장 | 대의원의 선출 70 |

라. 농업회의소 교육컨설팅 지원

(1) 추진개요

- (사업목적) 농업인·농업인단체 대상 교육·홍보, 지자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 활성화 도모.
- (사업예산) 200백만원¹⁴⁾
 - ※ 정부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2) 2018년 지원내용

-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농업회의소 현황분석 및 이해관계자 면담, 교육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 농업회의소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운영체계(조직, 재정 등) 수립, 농업회의소 정관 및 지원조례(안) 작성, 회의소별 특화사업 발굴, 사업계획(안) 수립 및 기타 제반사항 지원
- (기존 농업회의소 역량강화 컨설팅) 시군 농업회의소별 문제점과 역량 등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농업회의소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 지원
 - 기 선정된 농업회의소의 운영 진단, 농업회의소 운영방안 재정립(회원관리, 조직관리,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분야별 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 컨설팅), 농업회의소간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중앙단위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 농업회의소 관련 중앙단위의 조직 운영 또는 전국적 의견 교류·사례 공유를 통해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
 - 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운영

1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회의소 교육컨설팅 사업예산은 2010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매년 2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또는 세미나 개최
- 농업회의소 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농업회의소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 보완
- **(농업회의소 인식도 조사)** 농업인 정책전략 수립 및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농업인 500명, 시범지역 250명, 일반지역 250명)
- 지방농정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경험, 장애요인 등
-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가입의향 등에 대한 인식 정도
-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거주 농업인과 일반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을 비교 분석

|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 농업회의소 역량강화 컨설팅 | 중앙단위 공감대 확산 |
|-------------------------|-------------------|---------------------------|
| (신규 선정)지자체 5개소 | (기 선정)지자체 10개소 | 참여 기관 및 단체 |
|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교육 | 운영현황 진단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개최 |
| 설립추진단 및 TFT 구성·운영 지원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 정관 및 지자체 조례 수립 지원 | 특화사업 발굴 지원 | 농업회의소 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 |
| 사업계획 수립 및 특화사업 발굴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농업회의소 홍보·교육 |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8)

2.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현황

가. 연도별 선정현황

- 2018년 현재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은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이는 일반농산어촌 122개 시군의 23%를 차지하며, 현재 12개 지역이 설립되었고, 17개 지역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설립지역(12개소) : 평창, 진안, 고창, 나주, 봉화, 거창,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정선)
 - 준비지역(18개소) : 충남, 제주, 의성, 고성, 화성, 담양, 평택, 괴산, 서산, 금산, 익산, 영덕, 춘천, 부여, 장수, 고령,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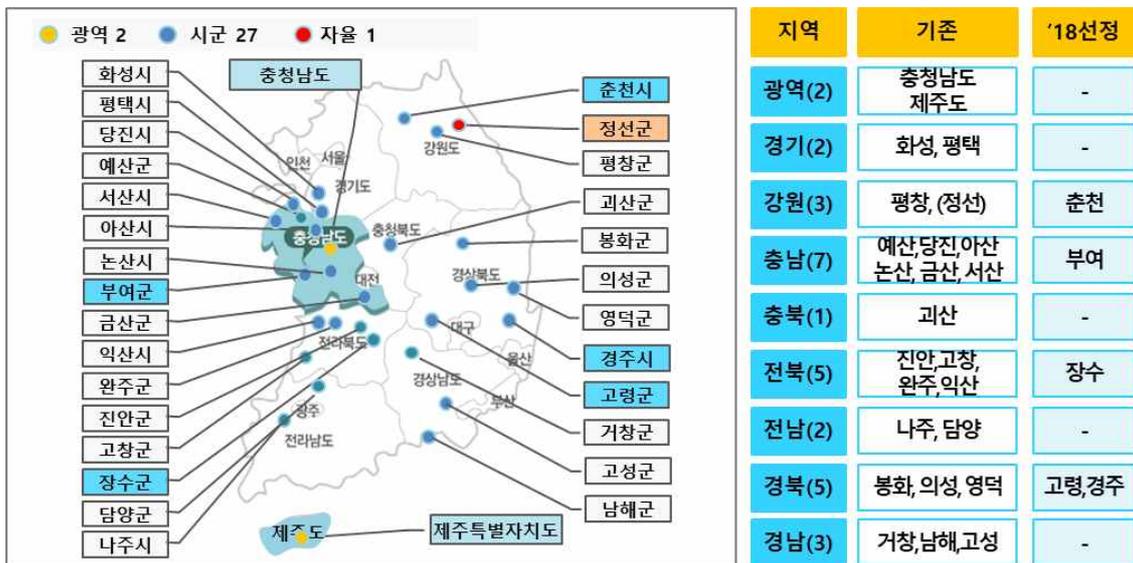
참고

○ 2018년 현재 전국에 30개소 설립·운영 중(광역2, 시군28)

- 기존(7개소) : 강원평창 전북진안 전북고창 전남나주 경북봉화 경남거창 경남남해
- 15년(5개소) : 광역(충남도) 시군(충남 예산 전북 완주 경북 의성 경남 고성)
- 16년(6개소) : 광역(제주도) 시군(경기 화성 충남 아산당진논산 전남 담양)
- 17년(6개소) : 경기 평택 충북 괴산 충남 서산 충남 금산 전북 익산 경북 영덕
- 18년(5개소) : 강원 춘천, 충남 부여, 전북 장수, 경북 고령, 경북 경주

※ 강원 정선은 민간 자율 설립, 충남 논산은 충남 자체 선정

<그림 5> 국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현황



나. 주요 추진성과

- 과거 1·2·3차와 비교해 최근 4·5·6·7·8차 시범사업은 커다란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음.
- 첫째, 농식품부 선정 기준 초기 3년 동안 7개소가 선정된 반면 최근 5년 동안에는 2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음. 과거 3년은 공모사업 신청이 미달되었지만, 2015년은 9개소, 2016년 8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5개소가 신청하여 2015년에 4개소 2016년에 4개소가 탈락하는 경쟁체계가 구축되었음¹⁵⁾.
- 둘째, 과거에는 시군만 선정 대상이었는데, 2015년부터 새롭게 광역모델이 추가되었음. 이를 통해 충청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음.
 - 광역모델의 도입 효과는 충남이 선정되기 전에는 시군이 없다가 현재는 전국 최다인 7개 시군이 추진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남. 광역 지자체의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및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농업회의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전국에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고,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122개 시군의 23%까지 증가하였음. 이는 지난 9년 시범사업의 중요한 성과이며, 농업회의소의 전국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강원도 정선처럼 농식품부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농단협 중심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준비하여 창립하는 사례가 등장함. 아울러 충청남도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이 연간 5개소 내외로 제한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자체 선정하여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음¹⁶⁾.
-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5) 2017년에는 당초 5개소 선정에 6개 지역이 신청하여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 선정하였고, 2017년은 5개소 선정에 5개 지역이 신청함.

16) 충청남도는 농식품부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고 자체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시군을 선발하였음.

3. 농업회의소 조직 및 운영현황

가. 주요 운영 현황

-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⁷⁾.
- 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은 ① 농어업인(개인회원) ② 농어업인단체·농어업법인·일반협동조합(단체회원) ③ 농협시군지부·농수축산림조합(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준회원 제도를 둘 수 있음.
- 회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개인회원은 2~5천원/월, 단체회원은 200~300천원/년, 특별회원은 2~3백만원/년의 회비를 납부함.
- 사무국은 1~2명이 근무¹⁸⁾하는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상근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표 16>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규정

| 구분 | | 주요대상 | 권리 |
|-----|-----------|--|---|
| 정회원 | ① 개인회원 | 구역 내에 주소와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보유/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참여 |
| | ② 단체회원 |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과 그 밖의 농어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 |
| | ③ 특별회원 |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부 또는 지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 |
| 준회원 | | 정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나 단체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없음 |

17) 향후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자격이 부여됨.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것과 동일함.

18) 시군 농업회의소가 원활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장 등 3명의 상근인력 운영이 필요함.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자체의 관심 정도와 농업회의소의 사업 역량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이가 있음¹⁹⁾.

〈표 17〉 국내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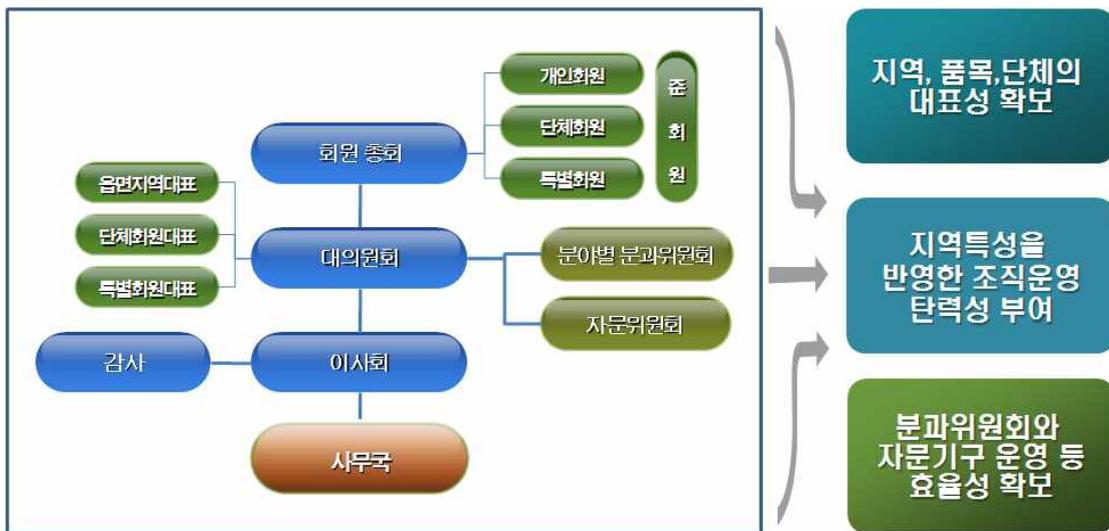
| 구 분 | 강원 평창 | 전북 진안 | 전북 고창 | 전남 나주 | 경북 봉화 | 경남 거창 | 경남 남해 | 충남 예산 | 충남 당진 | 충남 아산 | 전북 완주 |
|------------------------|----------------------------|---------------------------|--------------------------|----------------------------|------------------------------|----------------------------|---------------------------|-------------------------|-------------------------|-------------------------|-------------------------|
| 선정일 | 10.12. | 10.12. | 11.9. | 10.12. | 11.9. | 11.9. | 12.9. | 15.10. | 16.7. | 16.7. | 15.10. |
| 설립일 (창립총회) | 12314 | 11920 | 12115 | 1228 | 12718 | 12430 | 13627 | 16111. | 171121. | 18220 | 18324 |
| 개인회원수 /농가수 (비율%) | 744 /4,244 (17.5) | 650 /3,925 (16.6) | 397 /9,039 (4.4) | 1,323 /10,327 (12.8) | 1,470 /5,665 (25.9) | 786 /7,315 (10.7) | 1,155 /6,670 (17.3) | 834 /10,041 (8.3) | 527 /11,533 (4.6) | 504 /9,332 (5.4) | 183 /11,500 (1.5) |
| 단체 회원수 | 25 | 15 | 8 | 47 | 28 | 19 | 16 | 21 | 6 | 1 | 11 |
| 특별 회원수 | 9 | 8 | - | 16 | 7 | 9 | 7 | - | - | - | - |
| 개인회비 (천원/년) | 30 | 30 | 36 | 36 | 60 | 60 | 36 | 24 | 24 | 36 | 30 |
| 사무소 설치 | 125.1. | 11817. | 13118. | 1232. | 1281. | 1261. | 13717. | 171.9. | 준비중 | 준비중 | 183.1 |
| 상근직원 | 2명 | 1명 | 1명 | 1명 | 2명 | 2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법인 인가 /등기 | 1259. /5.21. | 111027. /10.27. | 13129. /1.31. | 12329. /4.9. | 12731. /8.6. | 1264. /6.8. | 13813. /8.23. | 161220. /12.21. | 171220. /12.27. | 준비중 | 18.8 |
| 사업자 등록 | 12525 | 12511. | 1324. | 12413 | 1287. | 12611. | 13829 | 171.4. | 준비중 | 준비중 | 18.8 |
| 조례제정 | 127.6. | 12615. | 12525 | 118.1. | 12628 | 12326 | 131028 | 161223 | 준비중 | 준비중 | 178.3. |
| 17년 예산 (백만원) | 136 | - | - | 100 | 210 | 169 | - | 74 | 50 | 68 (18년) | 60 |
| 지자체 지원금 (백만원) | (14)70 (15)70 (16)70 | (14)100 (15)- (16)- | (14)30 (15)- (16)- | (14)120 (15)- (16)53 | (14)50 (15)100 (16)109 | (14)54 (15)54 (16)54 | (14)40 (15)- (16)- | (14)- (15)- (16)- | (14)- (15)- (16)- | (14)- (15)- (16)- | (18)28 |

19) 현재 지방재정법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받지 못함.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은 중앙의 법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나. 조직 운영체계

- 조직체계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분과위원회-이사회로 구성하는데 지역·품목·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읍면지역-단체회원-특별회원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구성 비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역의 농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읍면지역 대의원을 50% 이상 배정하고 읍면지역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대의원을 배정함.
- 분과위원회는 보통 6~8개를 운영하는데, 이사와 대의원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²⁰⁾. 지역 필요에 따라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 이사회는 3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대표 이사, 단체대표 이사, 특별회원대표 이사로 구분하고 보통 읍면지역별로 1명 이상의 이사를 배정함.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배정함.

<그림 6> 농업회의소 조직운영 체계



20) 농업회의소의 본래 역할인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반영이 대부분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조정하고 지자체와 관련기관 협의회를 통해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됨. 일부 지역은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안착되어 있음.

다. 주요 사업 현황

- 농업회의소는 공적기구로 행정기관이 담당할 때 효율이 낮거나 개별 농업인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과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음²¹⁾.
- 현재 농업회의소 주요사업은 고유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제외하고 공익적인 역할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
- 고유사업은 농업회의소의 본래 역할인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회의소 내부의 조율·조정을 거쳐 지역농정에 반영하는 농업정책 건의·자문 역할임. 또한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특성에 따라 귀농귀촌(도시민유치지원사업), 농산업인력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²²⁾,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림 7> 농업회의소 주요 사업영역



- 21)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어 지자체 위탁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 것은 중요한 성과임.
- 22) 봉화군농어업회의소는 현재 학교급식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농업회의소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이지만, 당시 봉화군이 우선권을 부여한 농협이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맡지 않았고 개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회의소가 맡아 운영하고 있음. 마치 농업회의소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것은 오해임.

라. 우수 운영 사례

(1)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농업계 자율 조정을 통해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민관 협치 모델 구축
 - (의견수렴) 읍면 순회 간담회, 서면 의견수렴,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현장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수렴(매년 1~3월).
 - (조정·검토) 농업회의소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의견을 자율적으로 조정·검토(매년 4~9월).
 - (제안·협약) 농업회의소와 지자체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들의 시책 및 반영 적합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매년 9월 이내).
 - (결과홍보) 농업인이 제안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매년 소식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림.

<그림 8>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참여 시스템



자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정
 -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농업회의소가 ‘조례안’을 제안하여 2015년 12월 30일 제정하였고, 현재 약 30억원의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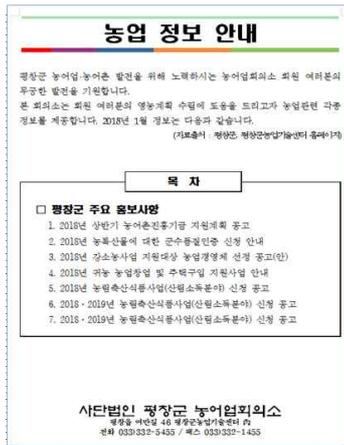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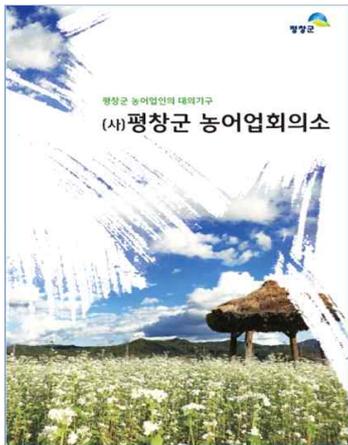
- 이 밖에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및 보상 조례」 등 개정.

□ 「평창군 농정토론회」와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등 개최

- 2017년 12월 20일(수) 평창군과 농업회의소 공동 주체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장 농업인 의견수렴,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분과위원회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 농업농촌 공동공약 제안서 전달 ▲ 정책협약 체결 등을 통해 후보자 농업공약의 60~70% 채택됨.

□ 매년 농업회의소 소식지 발간

-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분과위원회와 농정협의회 결과, 농업관련 정보 등 농업회의소의 다양한 활동내용과 성과 공유.



(2)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 농작물 재해보험 요율 개선 활동

- 2013년 현장 농업인의 개선 의견으로 제시된 봉화군의 높은 농작물 재해보험 요율(전국평균 5%, 봉화군 15%) 개선을 위해 봉화군, 경상북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창립 당시 중장기 사업
- ◆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 지원대상: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 ◆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 내에서 지원
- ◆ 예산조치 : 2014년부터 매년20억씩 2018년까지 100억 예산 조성하여 시행 (농업 예산 절감이 아닌 별도 군비로 예산 확보)

**2013년
12월
조례 제정**

**100억
예산 확보**

**2019년
시행**

- 농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 전국 최초로 봉화군 농업 시책사업 및 예산을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책 홍보 및 농업인들의 사업신청 편의 도모.
 - 전년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별 지원계획을 수집하여 1월 중에 농업인에게 발송(※ 읍면 혹은 이장을 통해 홍보는 일부 농업인에게만 홍보되는 한계가 있음).
- 농업회의소 소식지와 달력 배부
 - 매년 농업회의소의 활동내용과 소식을 담은 소식지와 달력을 제작하여 전 회원에 배부.



(3) 거창군 농업회의소

□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농정 자문 대의기구 역할

- 읍면 순회 간담회, 농업인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8개 분과 토론회를 통해 조율조정하고, 이를 매년 지자체와 농정협의회를 통해 농정에 반영.



□ 지역농정 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농업 조례 제정 등 추진

- 쌀 가격, 유기질 비료 등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해 관련 주체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새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농정 활성화에 기여.
- 현장 농업인의 각종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지역농정 참여 예산제 및 농업인 법률학교 운영

- 거창군, 의회, 농업회의소 간에 농정협의체를 정례화를 통해 거창군 농업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외부 전문가와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농업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농업인 법률학교’ 운영을 통해 법률 및 세무·회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인의 법률 분쟁 대처 역량 제고.



**농업
예산
위원회**

- 부회장 1인
- 분과위원장 중 1인
- 단체이사 1인
- 특별회원 이상 중 1인
- 지역인사 중 1인

외부전문인력 5인
(세무 및 법조 전문인력
농업계전문컨설턴트)



- 농촌주민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특화사업 추진
 -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과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 마을 리더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목욕 서비스와 건강교육’ 사업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지역주민 서비스사업



-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지역농정 혁신과제 발굴
 - 국회의원, 군수 선거 시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 협약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지역농정 해결과제 제시.



4. 신규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

가. 설립 프로세스

- 현재 2012년에 보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 표준매뉴얼의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는 설립준비→설립추진단/TF팀 운영→농업회의소 설립→농업회의소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됨.
- 농업회의소는 현재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설립계획 수립→발기인회 개최→회원모집→임원선출 및 창립총회 개최→사단법인 등록 과정을 거침.
- 시범사업 선정에서 창립총회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농업회의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논의에는 농업인단체(직능단체, 품목단체)와 농협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회,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그림 9> 신규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세스



나. 주요 추진단계

-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은 최소 16개 세부 업무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설립추진단 및 T/F팀의 합의 정도와 지역의 공감대 형성 수준에 따라 창립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지역 내에 농업회의소에 대한 언론홍보와 교육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함.

<표 18>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프로세스

| 추진과제 | 설립준비 | 설립추진단 /F팀 | 농업회의소 설립 | 농업회의소 운영 |
|---|------|-----------|----------|----------|
| 1. 농업회의소 설립 업무 | | | | |
| ① 지역 현황자료 수집 정리 | ● | | | |
| ② 농업회의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③ 자치단체장 보고 | ● | | | |
| ④ 의회 보고 | ● | | | |
| ⑤ 농업인단체 임원 및 농협조합장 설명회 | ● | | | |
| ⑥ 지역 순회 설명회 | ● | | | |
| ⑦ 설립추진단/T/F팀 구성 | | ● | | |
| ⑧ 설립추진단 및 T/F팀 회의 (각종 설립계획(안) 심의·결정) | | ● | | |
| ⑨ 의원 간담회 (조례 협의) | | ● | | |
| ⑩ 정관(안), 사업계획(안) 확정 | | ● | | |
| ⑪ 농업회의소 회원모집 | | | ● | |
| ⑫ 부문별/지역별 대표 선출 | | | ● | |
| ⑬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 | ● | |
| ⑭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 | | | | ● |
| ⑮ 농업회의소 조례(안) 확정 | | | | ● |
| ⑯ 농업회의소 지원예산 확보 | | | | ● |
| 2. 지속 병행업무 | | | | |
| • 언론홍보 계획·수행 | ● | ● | ● | ● |
| • 회의소 홍보·교육 등 | ● | ● | ● | ● |

주) 지역순회설명회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 일정별 주요업무

| 과제 | 세부내역 |
|--------------------------|---|
| 1. 기본 추진업무 | |
| ① 자료수집·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농업인단체, 농업관련기관, 위원회 등 현황자료 - 주요 농업현황 자료 (읍면별, 품목별, 연령별 등) -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일정계획 - 농업 예산 및 공공사업 시행관련 자료 - 농업발전계획, 정책사업별 지역발전계획 자료 등 |
| ② 설립 기본계획의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매뉴얼의 추진 프로세스 참조 ○ 해당 시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업회의소 설립계획을 수립 |
| ③ 시장·군수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 보고 ○ 주요 추진일정에 대한 협의·조정 |
| ④ 의회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기본계획을 토대로 의회 보고 수행 ○ 지원조례 등 설립에 대한 의회의 협의 요청 |
| ⑤ 설립추진단 및 TF팀(설명회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 구성 원칙 확정(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모임 참여 (설립추진단에 간사로 참여) ○ 행사 추진일정, 참석대상자 리스트 작성 등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확정 및 장소, 시간, 참석대상자 체크 - 참석요청 공문 발송 ○ 주요 참석자(포스트) 사전 접촉 (행정, 설립추진단간 역할 분담 점검) ○ 참석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병행 |
| ⑥ 설립추진단 회의 (각종(안) 심의·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추진단 회의계획 수립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수, 일정, 차수별 안건 등 - 시기별 회의자료 준비, 회의결과 정리 - 차수별 필요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및 회의소 설립 추진일정 심의·결정 - 각종 안건별 심의·확정 (정관, 사업계획, 재정계획 등) - 조례안 심의 - 각종 교육, 홍보, 간담회 등 추진 결정 ○ 간사 역할 수행 |
| 2. 지속 병행업무 | |
| ① 언론홍보 계획·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지역 언론사와 협력체계 수립(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지역 언론사의 리스트 준비, 협조공문 발송 - 지역 언론사별 사전접촉 일정 체크 (행정, 설립추진단간 역할 분담 점검) ○ 각종 행사, 주요 회의결과 등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홍보 수행 |
| ② 농업회의소 홍보·교육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소, 농업인단체 등 총회 및 교육·행사 일정 확인 ○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별도 시간배정) ○ 설명(홍보)+교육 병행 ○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논의 -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라. 설립추진단 및 T/F팀 구성 운영

(1) 설립추진단 및 T/F팀의 역할

- 설립추진단과 T/F팀은 농업인단체(품목+직능단체), 농협(중앙회+지역+품목+산림+수산), 의회, 행정, 이장단협의회²³⁾,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과제 | 세 부 내 용 |
|-----------|---|
| 설립추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작업 진행 총괄 ○ 사업방향 제시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지원 대책 협의·보완 등 |
| 설립추진 T/F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 각종 회의 자료 및 안건의 준비 및 설립추진단 운영 |

(2) 설립추진단 및 T/F팀의 주요 협의사항

- 농업회의소의 정관(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지원조례(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실무검토 및 최종 합의 도출.
- 농업회의소의 설립범위와 명칭에서부터 회원, 회비, 대의원회 및 임원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사무국 운영, 사단법인 설립, 지원조례 제정, 회원모집,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담당.
- 설립추진단은 사단법인의 발기인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

| | | | |
|----------------|---|-----------------|--|
| 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회원: 관내 농업인 00%목표 ② 단체회원: 농업인단체(직능+품목) ③ 특별회원: 농협중앙회+농축임수협 ④ 준회원 | 분과위원회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과위원회의 설치 개소수 ② 분과위원장 및 위원 선임 ※ 보통 농업특성 반영 6-7개 구성 |
| 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회원: 월회비(자동이체 추진) ② 단체회원: 연회비 ③ 특별회원: 연회비 ④ 준회원 | 사무국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무국장, 정책실장, 간사 등 ※ 상근이 원칙이며 지역여건과 예산 등 고려 |
| 대의원회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읍면지역 대의원: 00%/100명 내외 ② 단체회원 대의원: 00%/100명 내외 ③ 특별회원 대의원: 00%/100명 내외 ④ 기타 대의원 | 사단법인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단법인 정관(안) 심의 ② 임원 선임(안) 심의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 임원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회, 일반 이상 등 ② 감사: 00명 ③ 임기: 00년 | 지원조례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회의소 지원조례 제정 ② 지자체 발의 - 의회 협력 승인 ※ 타시군 제정 조례 참조 |

[설립범위] ① 농업+수산(농어업회의소), ② 농업 우선(농업회의소)

23) 이장단협의회는 농업회의소의 홍보와 농업인 회원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립추진단과 T/F팀 참여가 필수적임.

(3) 설립추진단 회의별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주요안건 |
|-------|------------------------------|---|
| 1차 회의 | ○ 사업개요 ○ 설립추진단 구성 및 발족 | ○ 농업회의소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설립추진단 구성 ○ 설립추진단 발족 ○ 설립추진단장 선출 ○ 농업회의소 설립절차 확정 ○ 설립추진 TF 결성 |
| 2차 회의 | ○ 각종 안건 논의 | ○ 농업회의소 정관(안), 사업계획(안), 재정계획(안) 논의 |
| 3차 회의 | ○ 각종 안건 확정 ○ 농업회의소 발기인 대회 | ○ 농업회의소 창립총회에 올릴 정관(안), 사업계획(안), 재정계획(안) 확정 ○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업회의소 창립 일정 확정 ○ 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를 갈음 (필요 절차 수행) ○ 임원 대의원선출(안) |

(4) 설립추진단 및 T/F팀 운영²⁴⁾

- 농업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
- 설립추진단은 총 3회를 목표로 하되,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회의 개최. 조기에 모든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일정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공동 설립추진단장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
- T/F팀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설립추진단에 상정할 각종 안건을 사전 협의(조율)하는 역할 담당.
- 설립추진단은 T/F팀에서 협의·제안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업계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의 단장과 간사는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24) 설립추진단과 T/F팀에 행정직이 참여하는 이유는 농업인단체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농업회의소 창립 이후 지자체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임.

<표 19>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사례(경기 화성시)

| 구분 | 단체(기관)명 | 직급 | 비고 |
|-----|------------------|--------|------------------|
| 단장 | 화성시 | 경제산업국장 | |
| |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부단장 |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 지부장 | |
|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 소장 | |
| | 한국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위원 | 수원지구원에협동조합 | 조합장 | 협동 조합 (5) |
|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 조합장 | |
| | 서신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 |
| | 팔탄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 |
| | 태안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 |
| 위원 | (사)한국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 | 회장 | 직능 대표 (6) |
| | (사)한국쌀전업농회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 (사)한국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 (사)한국생활개선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 화성시4-H 지도자협의회 | 회장 | |
| | 화성시 새농업인회 | 회장 | |
| | 전국농업인회총연맹 화성시연맹 | 회장 | |
| 위원 | 화성송산포도연합회 | 회장 | 품목 대표 (7) |
| | 화성시화훼연합회 | 회장 | |
| | 햇살드리생산자연연합회 | 회장 | |
| | 화성시 배 수출협의회 | 회장 | |
| | G한우연구회 | 회장 | |
| | 화성시낙농발전협의회 | 회장 | |
| | 대한한돈협회화성시연합회 | 회장 | |
| 위원 |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 회장 | 통리장단대표 |
| 위원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이사장 | 관련단체 (2) |
| | 화성시RPC협의회 | 회장 | |
| 위원 | 화성시 농정과 | 과장 | 농업 부서장 (3) |
| | 화성시 축산과 | 과장 | |
|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 | |
| 간사 | 농정과 | 농정팀장 | |
| | 농촌지도자 화성시연합회 | 사무국장 | |

자료) 화성시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5.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확산

가.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 조사결과²⁵⁾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만족도,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식도 등 파악.
- 농업회의소 정책 수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설계

| 구 분 | 세부 내용 |
|---------|-------------------------------------|
| ① 조사 대상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1,360명) |
| ② 조사 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 ③ 유효 표본 | • 농업인 502명 (농업회의소 시범지역 지역 별도 구분 안함) |
| ④ 조사 기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위탁 의뢰) |
| ⑤ 조사 기간 | • 2018년 11월 30일 ~ 2018년 12월 14일 |

□ 조사 내용

| 조사 영역 | 조사 내용 |
|-----------------------|--|
| 지방농정에 대한 만족도 | 지방자치단체(시·군)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 지방 의회의 농정 관련 활동 지역 농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대농업인 농업기술지도, 농업교육 및 농촌개발 사업 각종 농업인단체를 통한 지방 농정 참여 및 농업인 의견 반영 |
| 농업인 대의기구의 필요성 | 농업인 대의(대표)기구의 필요성 여부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여부 |
| 농업회의소 인식도 |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도 |
| 농업회의소 가입 및 회비납부 | 농업회의소 의무적 가입 찬/반 여부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농업회의소 회비납부 찬/반 여부 |
| 농정관련 의견 표현 및 행사 참여 경험 | 농정관련 의견 표현이나 의견수렴 행사 참여 경험 |
| 농정 참여 기회 및 장애 요인 | 농정관련 의견표출 및 참여기회 보장 농정 참여 시 장애 요인 |
| 기타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학력, 영농 기간, 농업회의소 회원여부 주력품목,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규모, 가입 농업인단체 |

25)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8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보고서(2018.12)' 중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 인식도 조사결과를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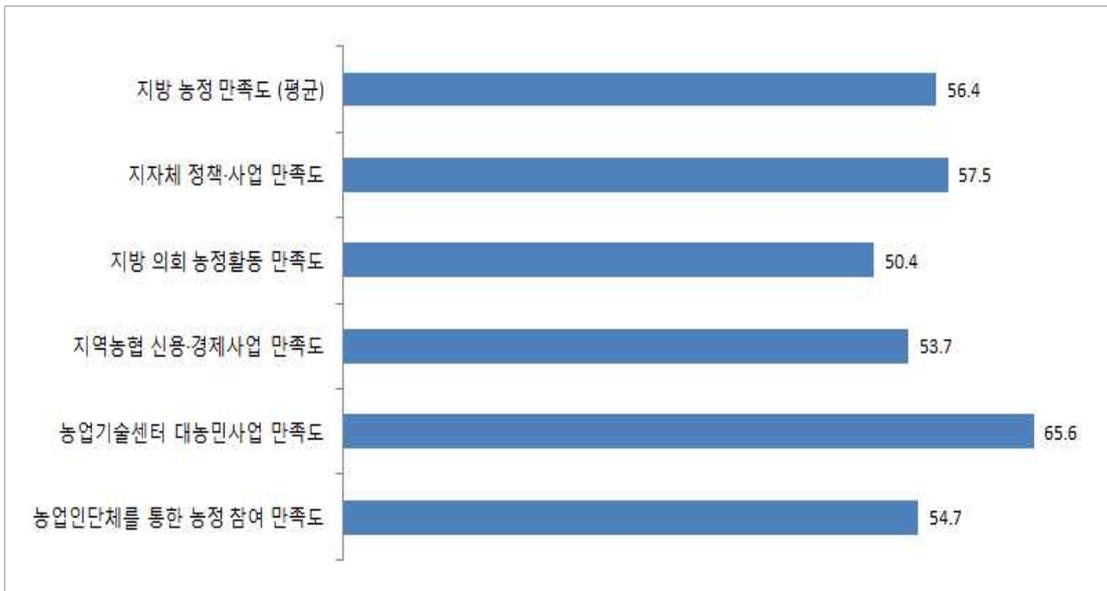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비율(%) |
|------------|-------------|-------|-------|
| 전 체 | | 502 | 100.0 |
| 성 별 | 남 자 | 407 | 82.1 |
| | 여 자 | 89 | 17.9 |
| 연 령 대 | 40세 이하 | 14 | 2.9 |
| | 40 ~ 50세 | 58 | 11.8 |
| | 50 ~ 60세 | 200 | 40.7 |
| | 60 ~ 70세 | 184 | 37.5 |
| | 70세 초과 | 35 | 7.1 |
| 최 종 학 력 | 중졸 이하 | 48 | 9.7 |
| | 고졸 | 207 | 42.0 |
| | 대졸 | 206 | 41.8 |
| | 대학원 이상 | 32 | 6.5 |
| 농업회의소 회원 | 회의소 회원 | 41 | 8.4 |
| | 회의소 회원 아님 | 447 | 91.6 |
| 시범사업 지역 | 시범사업 지역 | 140 | 28.6 |
| | 시범사업 외 지역 | 350 | 71.4 |
| 거 주 지 역 | 강원 | 60 | 12.2 |
| | 경기 | 59 | 12.0 |
| | 충북 | 36 | 7.3 |
| | 충남 | 60 | 12.2 |
| | 전북 | 42 | 8.6 |
| | 전남 | 66 | 13.5 |
| | 경북 | 79 | 16.1 |
| | 경남 | 69 | 14.1 |
| | 제주 | 13 | 2.7 |
| | 특광역시 | 6 | 1.2 |
| 영 기 농 간 | 10년 이하 | 64 | 13.4 |
| | 10 ~ 20년 | 139 | 29.1 |
| | 20 ~ 30년 | 99 | 20.7 |
| | 30 ~ 40년 | 128 | 26.8 |
| | 40년 초과 | 48 | 10.0 |
| 농수산물 판 매 액 | 거의 없음 | 6 | 1.2 |
| | 120만원미만 | 7 | 1.4 |
| | 120 ~ 300만원 | 9 | 1.8 |
| | 300 ~ 500만원 | 31 | 6.3 |
| | 500 ~ 1천만원 | 54 | 10.9 |
| | 1 ~ 2천만원 | 41 | 8.3 |
| | 2 ~ 3천만원 | 71 | 14.3 |
| | 3 ~ 5천만원 | 111 | 22.4 |
| | 5천 ~ 1억원 | 73 | 14.7 |
| | 1 ~ 2억원 | 60 | 12.1 |
| 2억원 이상 | 32 | 6.5 | |

(2) 농업인 인식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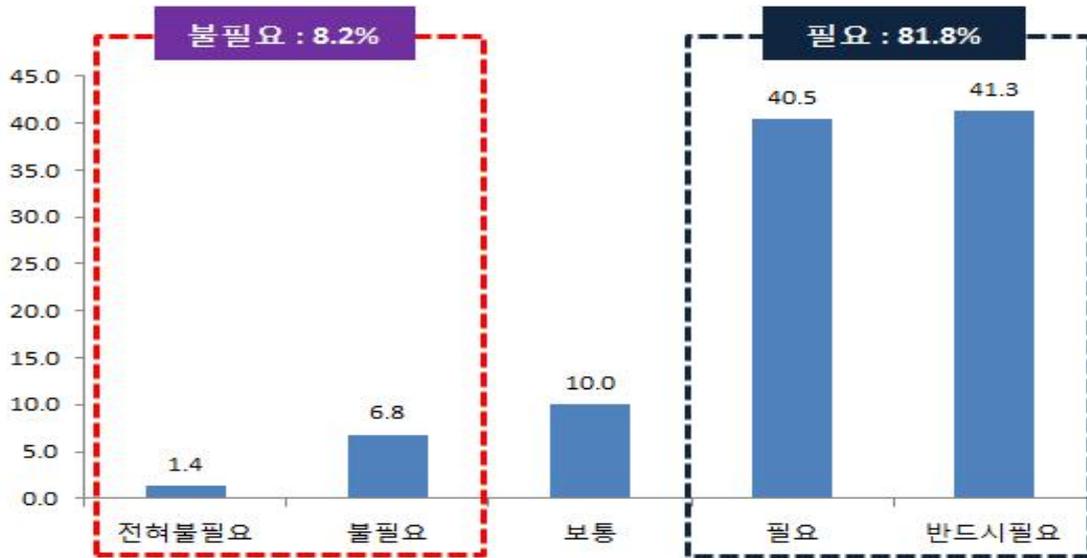
① 지방 농정에 대한 만족도

- 지방 농정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농업기술센터 만족도(65.6점)으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만족도(57.5점), 농업인단체 만족도(54.7점), 지역농협 만족도(53.7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의회 만족도(47.1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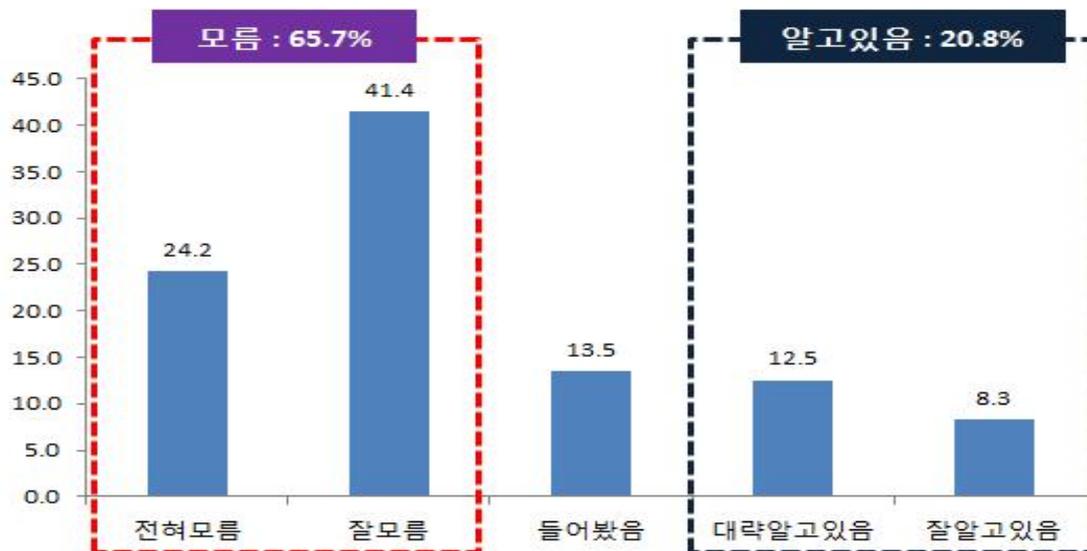
② 농업인의 대의(대표) 기구의 필요성

- 법적인 농업인 대의(대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81.8%가 필요(반드시 필요+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전혀 불필요+불필요) 8.2%, 보통 10.0%로 나타나 조사대상 농업인의 대부분은 법적 대의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농수산물 판매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등 판매액이 낮을수록 불필요 비율이 높았고, 3천만원 이상 등 판매액이 높을수록 필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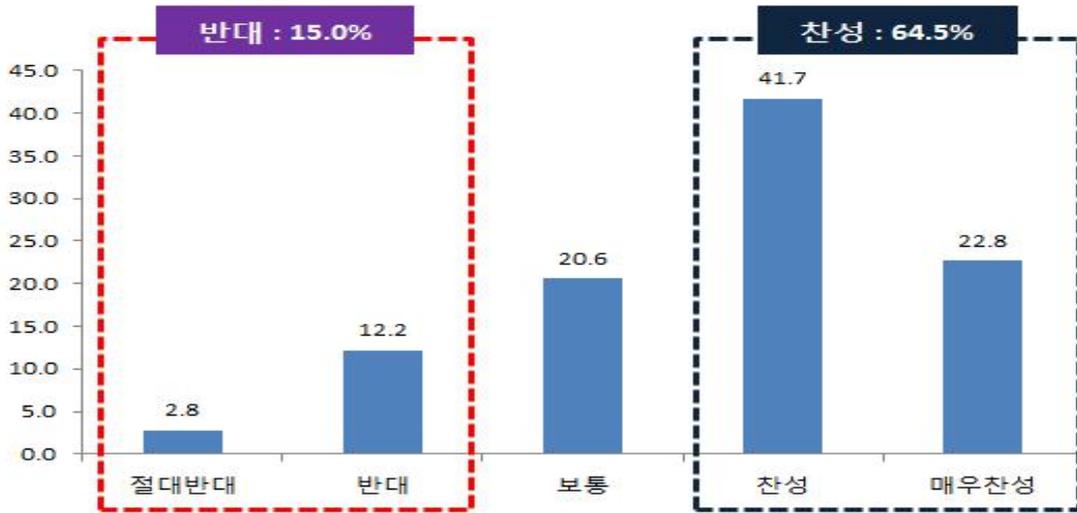
③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식도

- 농업회의소 인식도는 알고 있음(대략 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 20.8%, 모름(잘 모름+전혀 모름) 65.7%, 들어봤음 13.5%로 나타나 적극적 인지는 20.8%, 소극적 인지는 13.5%인 것으로 조사됨.
- 농업회의소의 적극적 인식도의 경우 2018년 조사결과 2017년 26.9%에 비해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7년 조사와 '18년 조사간의 표본 추출방법, 조사대상 DB, 유효표본의 지역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17년 조사의 경우 지역구분 할당 조사를 통해 농업회의소 시범지역 농업인의 유효표본 비중을 약 50% 정도로 조정한 반면 '18년 조사는 조사대상 DB 특성상 지역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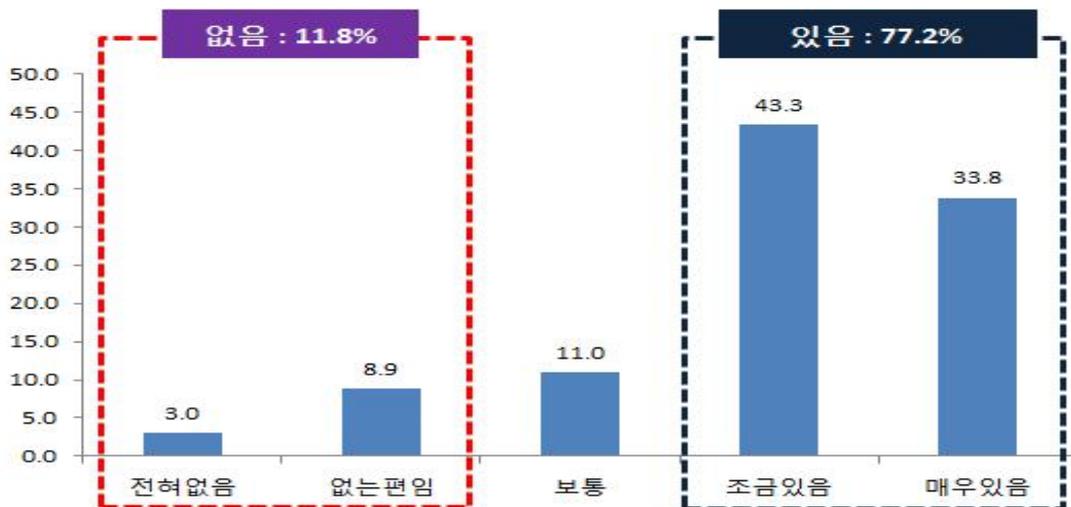
④ 농업회의소 의무가입 찬반

- 설문 응답자의 64.5%가 농업회의소의 의무적 가입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15.0%는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는 50~60세, 중졸 이하, 대학원 이상, 농업회의소 회원, 경기·충북·충남 지역,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층에서 찬성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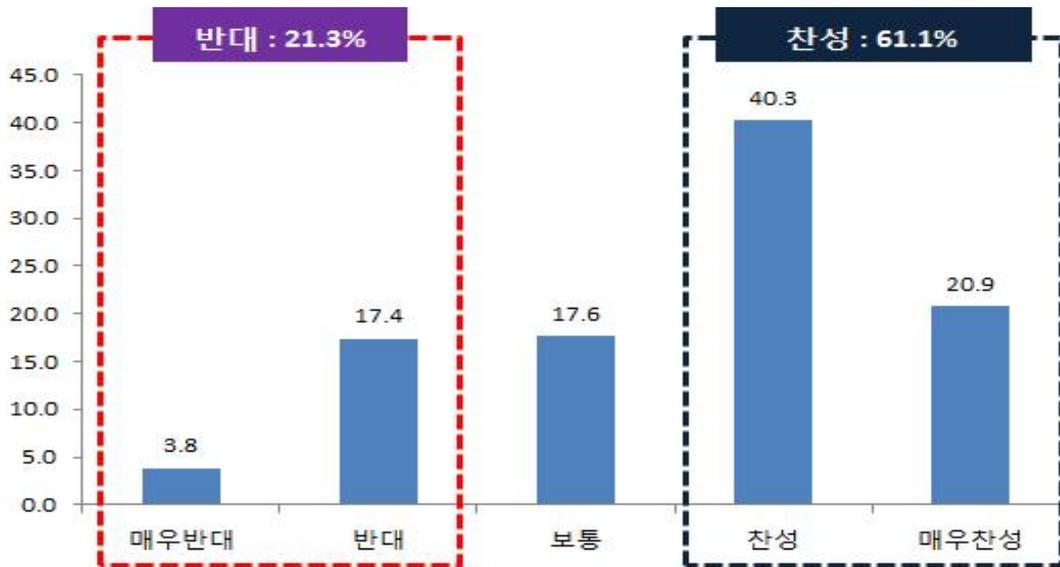
⑤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 설문 응답자의 77.2%가 농업회의소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8%는 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는 50~60세, 대학원 이상, 강원·경기·전남·특광역시 지역, 영농경력 20년 초과 농업인 층에서 가입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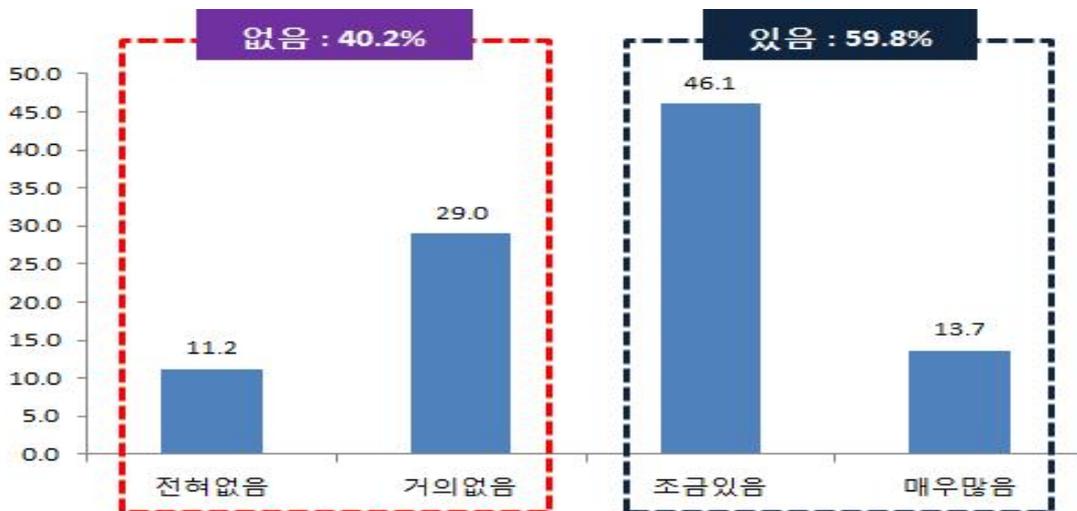
⑥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찬반

- 농업회의소 회비(월 3,000원 정도) 납부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61.1%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21.3%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수산물 판매액 기준으로 판매금액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고,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아 소득수준에 따라 회비 납부 의향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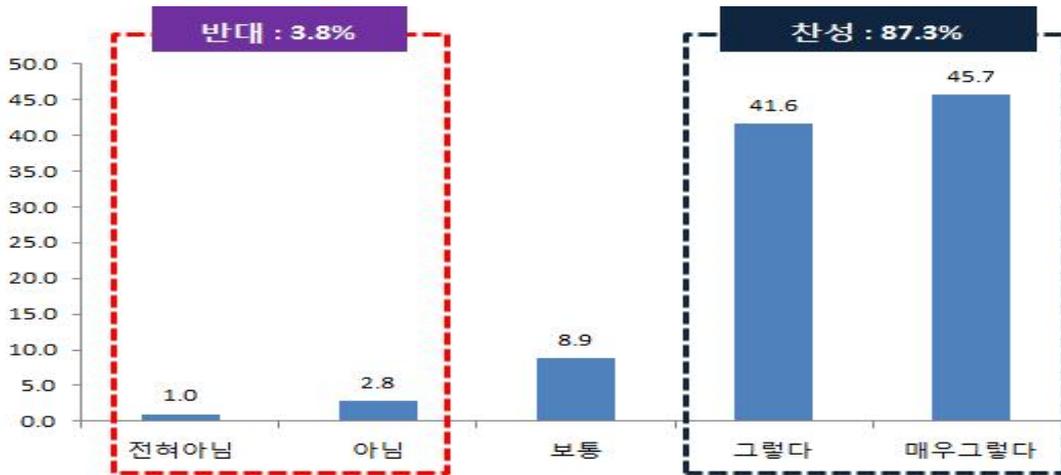
⑦ 농정 관련 의견 표현 및 행사 참여 경험

- 설문 응답자의 59.8%가 지방농정과 관련한 의견 표현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남.
- 특히 영농경력 10년 이하 계층의 경우 없음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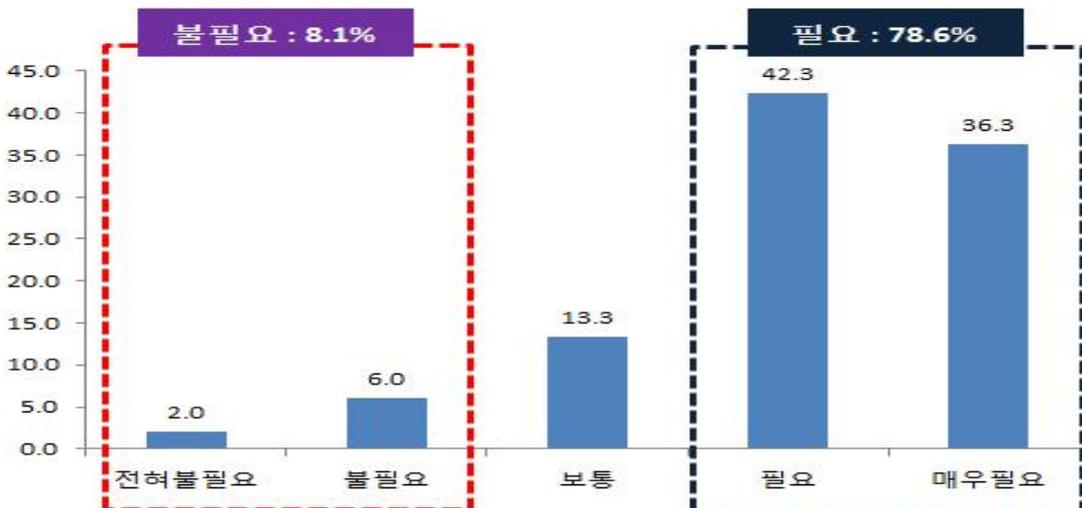
⑧ 지방농정 관련 의견 표현 및 참여기회 확대

- 설문 응답자의 87.3%가 지방농정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의견표출 및 참여기회를 지금 보다 더 보장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 3.8%, 보통 8.9%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업인 의견 표출과 참여 기회를 지금 보다 확대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⑨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 응답자의 78.6%가 농업회의소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 8.1%, 보통 13.3%로 나타나 농업인의 대부분이 농업회의소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는 남자, 40세 이하, 대학원 이상, 농업회의소 회원, 경기·충남·특광역시 지역, 영농경력 20년 초과, 농수산물 판매액 3천만원 이상 농업인 층에서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남.



나.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인식도 조사결과²⁶⁾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충청남도는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3농혁신」을 추진하였고, 충청남도 통합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조사 대상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추진 시군 참여주체
 - 참여시군 : 논산, 당진, 천안, 예산, 금산, 홍성, 서산 등 15개 시군
 - 응답자 : 충청남도 농업인, 행정기관, 관련기관 등 665명

□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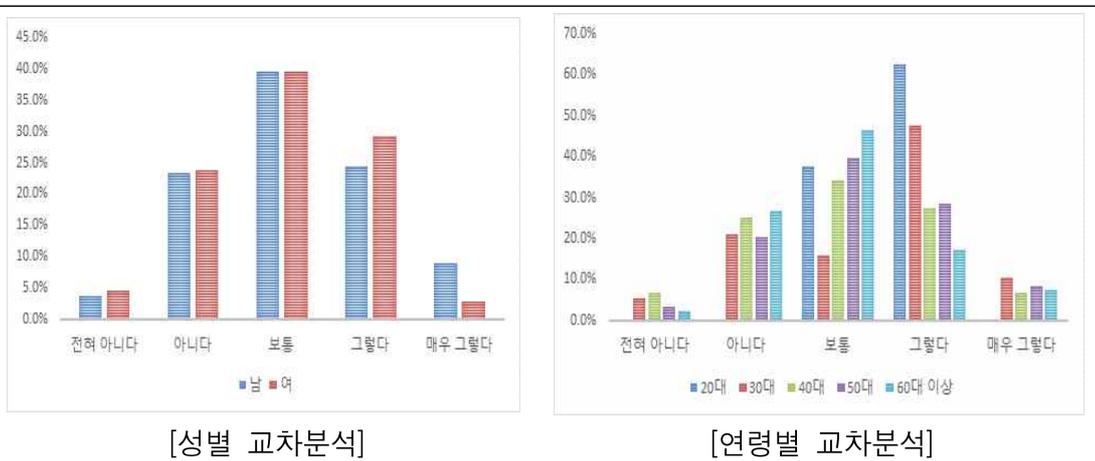
| 구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남성 | 413 | 79.1% |
| | 여성 | 109 | 20.9% |
| | 무응답 | 143 | - |
| | 합계 | 665 | 100.0% |
| 연령 | 20대 | 8 | 1.5% |
| | 30대 | 19 | 3.7% |
| | 40대 | 88 | 17.0% |
| | 50대 | 223 | 43.1% |
| | 60대 이상 | 180 | 34.7% |
| | 무응답 | 147 | - |
| | 합계 | 665 | 100.0% |

26) 본 내용은 지역농업네트워크, '충남 농어업회의소 추진을 위한 농정참여 조사결과 (2016.11)'를 요약함.

(2) 인식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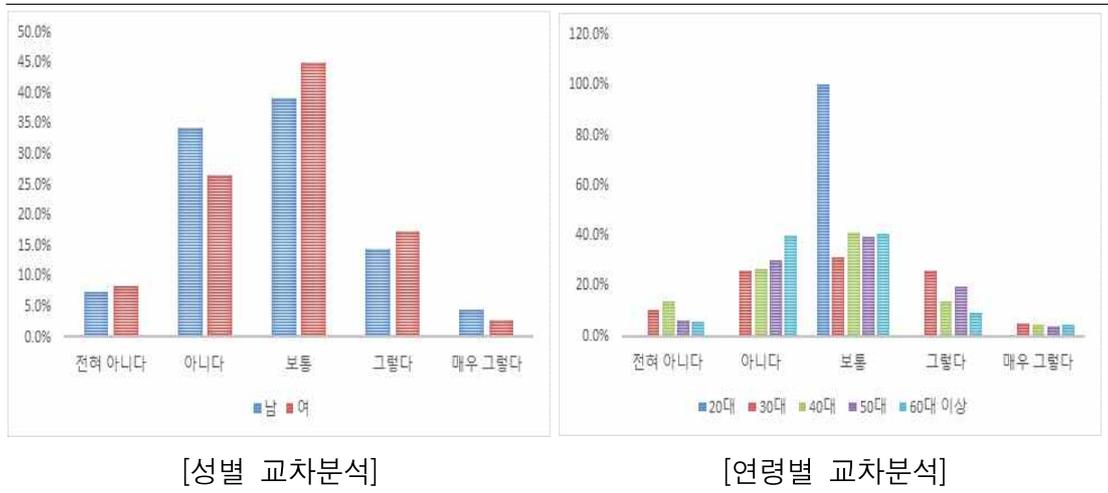
① 시군 및 충남 농정과정에 농업인의 참여기회 보장 정도

- 시군 및 충남도의 농정과정에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5%,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62.5%, 30대 57.9%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② 소농, 고령농 등 취약한 농업인들의 농정 반영 정도

- 농업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의견도 농정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1.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이 남성 보다 취약 농업인들의 의견이 농정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응답함. 연령별로는 20대의 100%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특히, 60대 이상의 45.8%가 농업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의견이 농정에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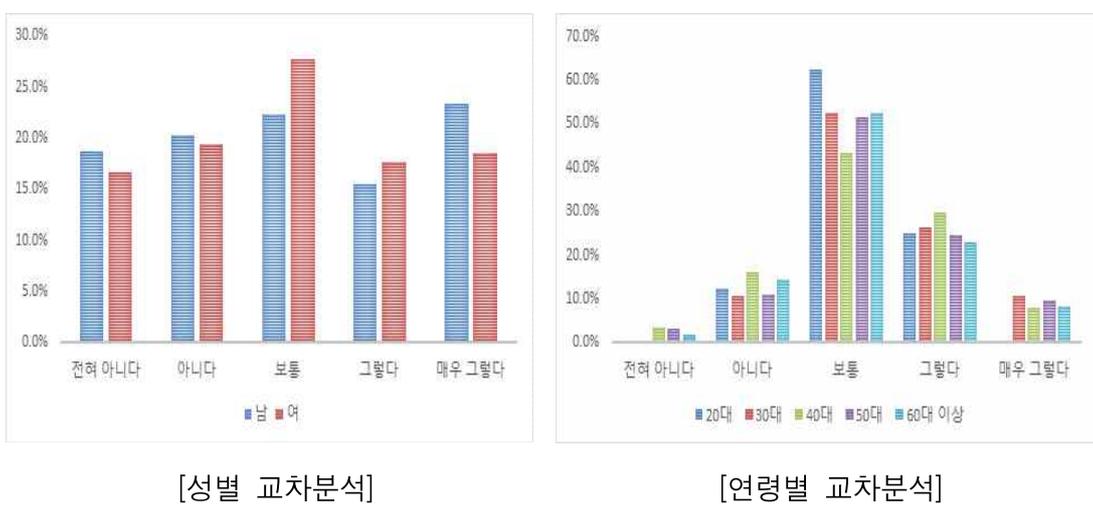
③ 농어업 정책이나 사업 결과에 대한 농업인 책임 여부

- 농어업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농업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5%로 높게 나타났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60.8%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의 15.9%는 책임이 없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농업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60%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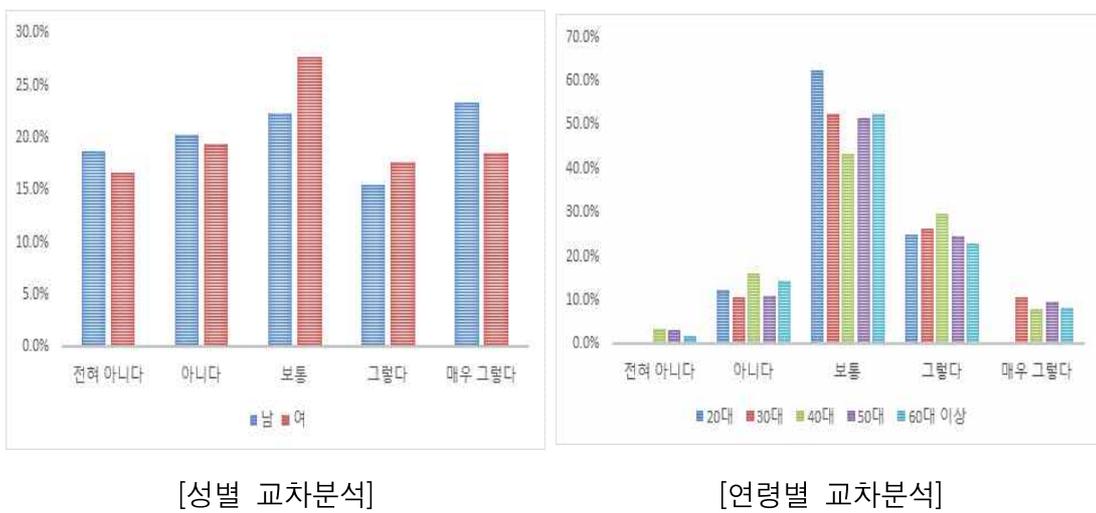
4) 농업회의소 명칭에 대한 인지도

- 농업회의소 명칭을 들어본 비율은 39.4%로 나타났고, 들어보지 않은 비율은 36.1%로 비슷함.
- 명칭을 들어본 비율과 들어보지 않은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농업회의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업회의소에 대한 20대의 친숙도가 가장 낮은 반면, 50대에서는 40.5%의 높은 비율이 농업회의소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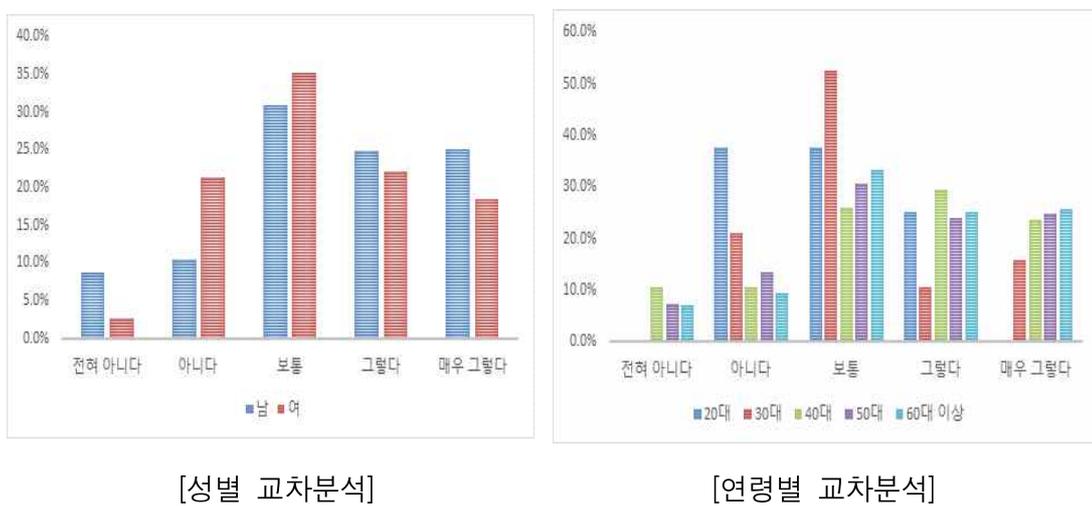
5)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

-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39.4%,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은 36.1%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27.6%, 여성의 23.1%가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남성의 45.2%, 여성의 41.6%가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40대가 29.1%, 60대 이상 28.5%, 50대 27.6% 순으로 높음.
- 반대로 농업회의소에 대해 잘 모르는 비율은 20대 62.5%, 30대 57.9%, 50대 43.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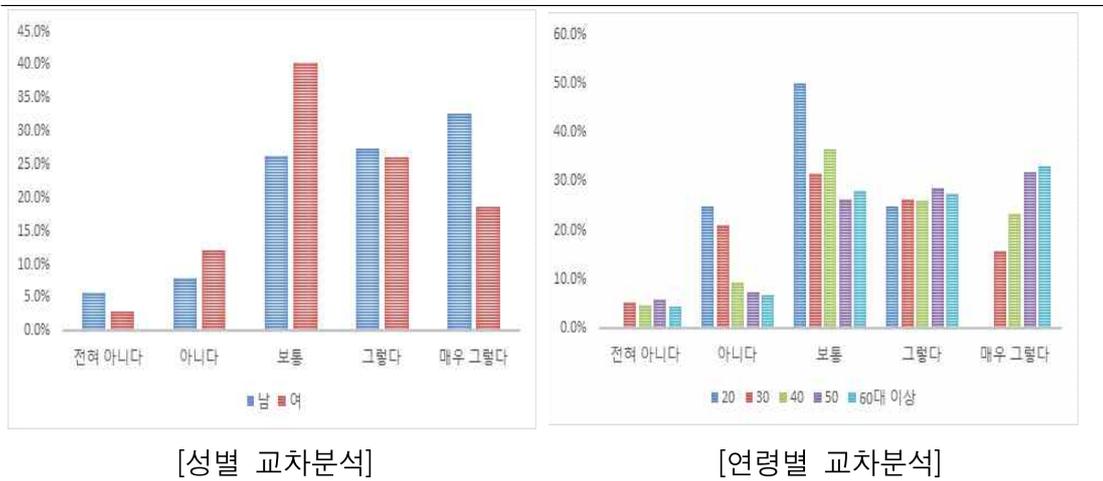
⑥ 농업회의소 추진에 대한 공감 정도

- 농업회의소 추진 이유(목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45.0%이고, 공감하지 않는 비율은 18.2%로 나타남.
- 남성의 49.9%, 여성의 40.7%가 농업회의소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남성의 19.3%, 여성의 24.1%가 추진 목적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의소 추진 목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높은 연령대 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낮은 연령대 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남.



7]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에 대한 공감 정도

- 시군 및 도단위 농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인 52.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비율은 14%로 낮음.
-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이 60.1%, 여성이 44.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연령대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60%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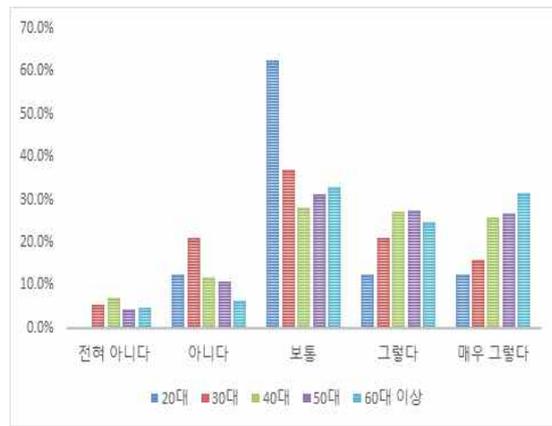


8] 농업회의소가 농정참여의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

-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농업회의소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9.2%, 그렇지 않은 비율은 14.9%로 나타남.
- 남성은 55.6%, 여성은 43.0%가 농업회의소가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의 14.1%, 여성의 17.7%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연령별로는 농업회의소를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대에서 26.4%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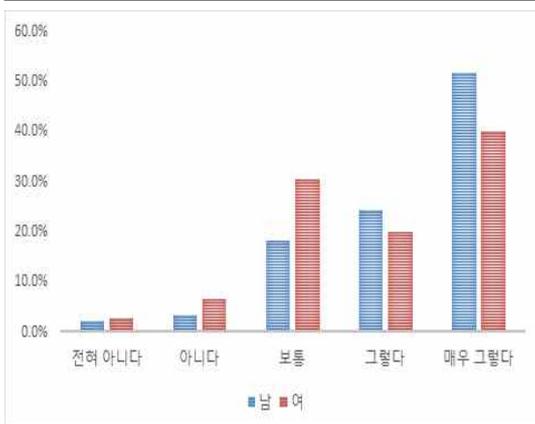
[성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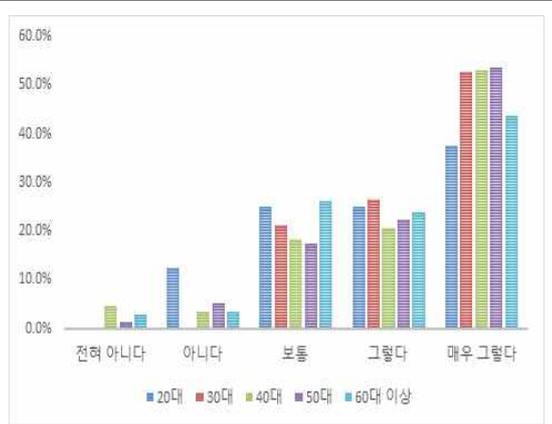
[연령별 교차분석]

9)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도

-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70.7%이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7.4%)로 그렇다(23.3%)고 응답한 비율의 2배 이상을 차지함.
- 남성의 76.0%, 여성의 60.0%가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고, 특히 남성의 절반 이상인 51.9%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성별 교차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6.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 지난 8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다양한 성과와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시범사업을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동시에 축적되고 있음. 한국형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신규로 선정된 지역의 설립·운영과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 둘째, 농업회의소의 농정참여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였음.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음. 지자체와 일부 농업인단체 임원 주도의 농정참여가 아니라 현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여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음.
- 셋째, 현장 농업인들의 농정 참여도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농업회의소를 통해 사소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농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 농업인이 농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음.
- 넷째, 농업인의 성숙된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지자체와 진지하게 지역농정을 토론하고, 우선순위에서 기득권을 양보할 정도로 대화와 타협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지자체와 농업인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다섯째, 농정 참여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사무국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농정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 이는 조례제정, 제도개선, 예산참여, 정책토론회,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 타부처 사업 발굴 등으로 나타남.
- 여섯째, 시군별로 다양한 농업회의소 사업모델이 발굴되고 있음. 평창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고, 거창군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문화예술 영역까지 활동 폭을 확장하

였음. 남해군은 귀농귀촌·도시민유치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런 모든 성과와 기대는 회비 납부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일곱째, 기존 시군 농업회의소 모델에서 시도 모델로 확산되고 있음.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광역시도 농업회의소로 선정됨에 따라 시군 연합회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함. 아울러 전국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여덟째, 시도가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례를 창출하였음. 기존에는 농식품부가 농정원을 통해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해 왔는데 충청남도가 관내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
- 아홉째, 강원도 정선에서 농식품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지역 농업인단체 주도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첫 사례가 등장함. 이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범사업의 주요 과제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개선과제도 나타나고 있음.
- 첫째,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는 임의조직 형태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농업회의소의 위상을 확보하고 본래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지자체 입장에서도 농업회의소의 운영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둘째, 농업회의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불신이 여전히 있음. 농업회의소를 기존 농업인단체 혹은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옥상옥 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면서 관변단체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음.
- 셋째,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란이 있음. 시군 농업회의소 표준 운영모델이 없다 보니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고, 일부

시군은 농업인·농업인단체·협동조합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또한 광역과 전국 농업회의소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넷째, 선진국과 달리 임의가입 형태로 농업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의무 가입방식 전환과 회비 납부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회원의 회비수입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로 재정자립도 달성과 상근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비 납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도 사실임.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이 취약하고, 특화사업도 관련기관과 기능 중복 내지 갈등을 피하다 보니 제한된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 여섯째,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회원 숫자가 늘면서 농업회의소를 각종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임원의 개인적인 활동을 제재할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농업회의소는 공적 조직으로 선거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한 원칙임.
-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낮음. 중앙과 지역의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협 등 이해관계자들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다. 문제 사례에 대한 고찰

(1) 신규 설립 중도 포기 사례(A시군)

-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은 농업인단체, 농협, 지자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음.
- A시군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농업회의소를 창립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사례임.
- 처음 시작은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고, 단체장의 동의와 지시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음.
-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당초 추진의지가 약했던 지자체가 농업회의소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됨.
- 연말이 되어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대부분 바뀌었고²⁷⁾, 신임 대표들은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설립 과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
- 지자체장과 신임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범사업을 포기함.

시 사 점

- ① 사업 신청 단계에서 농업인단체와 지자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추진의지와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② 지자체장 혹은 농업인단체 대표가 바뀌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특정 단체 대표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설명회가 필요함.

(2) 지자체와 갈등 사례(B시군)

- B시군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농업인단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농업회의소를 창립함.
- 설립 초기부터 농업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지역 농정이슈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함.

27) 지자체장은 임기 4년, 농업인단체 임원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고, 지자체 정책 전반의 새로운 변화가 추진되면서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 양상이 발생함.
- 농업회의소가 농업인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자체와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당시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해 있던 농업회의소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농업회의소 활동이 중단됨.

시 사 점

- ① 농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지자체와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② 농업회의소를 지자체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함. 농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기구이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에 대한 공익적 서비스 기능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임. 지자체 맘대로 할 수 있는 산하기관 혹은 출연기관이 아님.
- ③ 지자체와 농업계의 갈등관계가 조성되었을 때 농업회의소의 적극적인 중재 조정 역할이 필요함.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3) 농업회의소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C시군)

- C시군은 일부 농업인단체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
-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내 농협은 회원가입을 안하고 농업인단체도 일부만 참여한 가운데 창립하였음.
- 관내 농업인단체와 농협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① 대표성 확보가 미흡하였음 ② 회비 부족으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③ 지자체도 조례는 제정하였지만 예산 지원은 소규모 수준에 그침 ④ 예산이 부족하여 사무국 직원을 충분히 둘 수 없었고 농업인 의견수렴, 회원 역량강화 활동 등 농업회의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함.
- 임원과 대의원, 회원들의 의지로 몇 년 동안 농업회의소를 운영하였지만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함.

시 사 점

- ① 농업회의소 설립 초기에 농업인단체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표성 확보가 필요함. 농업인, 농업단체, 농협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② 설립 초기에 농업회의소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회비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 의견수렴, 농정자문, 회비교육 등 제반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③ 농업회의소는 신생 조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장 농업인과 접점을 늘리고, 행정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농업회의소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선거 과정의 갈등 사례(D시군)

- D시군 농업회의소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장군수 후보 초청 농정토론회를 준비함.
- 후보자 간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준비하였지만, 공교롭게도 토론회 당일 후보 중에 한명이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에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함.
- 투표 결과 불참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되면서 농업회의소와 갈등관계가 조성되었고 예산지원 중단, 사무국 교체 요구 등 농업회의소 운영에 차질 발생.
-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와 갈등이 해소되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 사 점

- ① 선거 등 대단히 민감한 사안은 사소한 오해로도 지역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는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음.
- ②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매개로 농업회의소를 압박하는 사태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함. 이는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례임.

제2절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

1. 해외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²⁸⁾

가. 해외 농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

- 유럽과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계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상공회의소에 준하는 농업계 자치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각국의 농업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의 구조와 정치력, 정치제도와 지방농정조직, 농촌진흥조직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기능, 사업범위가 다름.
-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단체와 관련기관의 다양한 오해가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해외 농업회의소를 이해하고,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유럽의 농업회의소는 농가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 국가에는 별도의 농촌진흥기관이 없고 그 역할을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임.
 - 우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R&D와 농가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회의소가 함께 있고 농업회의소는 농가기술지도 업무를 하지 않음.
- 농협도 농업회의소의 경제사업 침해를 우려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사업은 협동조합이, 농정자문 및 의견수렴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함.
 - 농업회의소는 준(準) 행정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주로 담당함.
- 프랑스는 국가 법령으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주(州) 법률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연방국가 체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 법률에 준하는 성격임.

28)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는 오현석(2004), 김수석(2007), 마상진(2012)의 자료를 참조함

| 구분 | 해외 현황 | 국내 현황 |
|----------------|---|--|
| 농민단체 구조와 정치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의 강력한 농민단체 연합 ▪ 농민단체의 정치적 위상이 높고 농민단체 간에 연대경험 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직능-품목단체 운영 ▪ 전국단위 단일 연합체 부재 ▪ 상당수가 농관련기관과 연계 |
| 정치제도와 지방농정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국가(프랑스)vs연방제(독일, 오스트리아) ▪ 중앙정부의 지방농정조직 운영 (프랑스, 독일 농업청, 일본 지방농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농정조직 부재 ▪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 조정 (aT, 농어촌공사, 품관원, 농정원 등) |
| 농업진흥 및 기술지도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을 제외하고 농촌진흥기관 부재 ▪ 연구는 대학, 국가R&D기관 ▪ 기술보급은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민간 등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기관 역할이 큼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 협동조합의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농정기능 함께 수행 ▪ 농업회의소 특별회원으로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 농정기능 미흡 ▪ 농업회의소 특별회원으로 참여 |

나. 공법(公法)²⁹⁾과 사법(私法)³⁰⁾ 농업회의소

- 농업회의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의 법률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동안 농업계는 유럽형 혹은 일본형 농업회의소 모델의 도입을 주장해 왔음.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 모습으로 제도화되었고, 농업회의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농업회의소의 유형에는 ① 공법+의무가입제 ② 사법+선택가입제(임의가입제) ③ 국가지원+선택가입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마상진, 2012).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은 공법(公法, public law) 성격의 농업회의소법과 의무가입제를 운영하고³¹⁾, 영국과 미국은 사법(私法, private law)에 근거한 선택가입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중국, 쿠바 등은 이 둘을 접목한 중간 모델임.
- 사법 모델에서는 순수 민간조직이며 민법 등을 근거로 설립할 수 있기

29) 공법(公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대표적임.

30) 사법(私法)은 국민들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민법과 상법이 대표적임.

31)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법도 공법에 해당함.

때문에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 정부와 농업회의소가 회원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대표성과 파트너십의 인정 여부도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그 활동도 ‘공적기능’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예컨대 민법에 의해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공적 대의기구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름.

- 반면 공법 모델에서는 정부와 농업회의소가 회원가입을 강제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아울러 농업회의소의 행위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준하는 공적 기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유럽과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민간기구이지만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위상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음. 민주적 투표를 통해 대표성과 의사결정권한은 농업계가 행사하고 독립성도 보장 받지만, 행정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공적 사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이것이 유럽과 일본의 농업회의소가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띠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배경임.
- 농업회의소를 법적 자문기구로 인정하고,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 농업인의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공직선거에 준해 선거과정을 관리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농가기술지도·농업인력육성·직업교육훈련·농촌개발·농지관리업무 등 국가사무 성격의 공적 기능을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음.

| | | | |
|------|---|------|--------------------------------|
| 공법 | + | 의무가입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대한상공회의소) |
| 사법 | + | 선택가입 | 영국, 미국 등 |
| 국가지원 | + | 선택가입 | 중국, 쿠바,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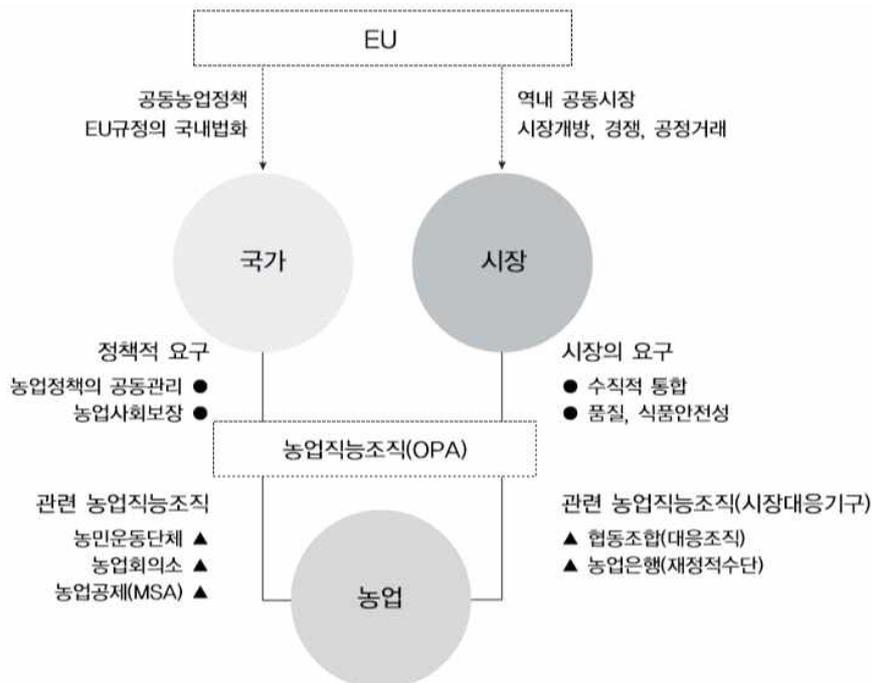


2. 프랑스 농업회의소

가. 농업직능조직의 구조와 재편

- 프랑스의 농업직능조직³²⁾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되며, 민간조직은 다시 사업조직과 비(非)사업조직으로 구분됨.
- 공공조직은 농업관련 전 계층이 참여하는 농업회의소, 사업조직은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공제조합, 농업은행 등이고, 비사업조직은 농업인단체가 해당됨.
- 프랑스의 농업직능조직들은 초기에는 농업인운동의 ‘운동성’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성’이 혼재되어 있었음.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농업인운동 지도부는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농업인운동에서 분리하고, 농업인운동은 공권력(중앙과 지방의 정부와 의회)을 상대로 한 활동에만 주력하기로 결정함.
- 농업직능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5대 축으로 분류하고,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농업인단체(방어)와 농업회의소(대표)가 맡고,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EU 공동농업정책에 대응.

<그림 10> 프랑스 농업직능조직의 배치



자료) 오현석(2005). 김수석(2007)에서 재인용.

32) 프랑스의 농업·농촌 관련 법령을 집대성한 프랑스 농촌법전(Code rural)에는 농업회의소, 사업조직(농협 등), 비사업조직(농업인단체)을 통칭하여 농업직능조직으로 명명.

〈그림 11〉 프랑스 농업권익대변 5대 축



자료) 오현석(2004)

나. 농업회의소의 설립 역사

-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세기 초부터 시작됨. 19세기에 곡물가격의 하락과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광범위한 농업위기 상황에서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에 대응하여 농업계도 공식적인 직능대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854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지는 못함.
- 한편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농업인운동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는 다시 협동조합, 농업은행, 농업공제조합 건설로 이어짐.
- 19세기 후반에 농업인운동의 발전과 농업인들에 의한 경제적 직능조직의 성장을 배경으로 1924년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27년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음. 1960년 제정된 농업기본법³³⁾은 모든 농정에 대해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역사는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33)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해당함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제1단계 : 농업회의소 정립 단계(1924~1940)
- 제2단계 : 농업회의소 강제해산 단계(1941~1948)
- 제3단계 : 농업기술보급 주력 단계(1949~1965)
- 제4단계 : 농업개발 주력 단계(1966~1980)
- 제5단계 : 농업·농촌개발 주력 단계(1981~현재)
- 정립단계(1924~1940)에서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조직, 재정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됨. 1927년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구당 4명의 대의원과 농업협동조합, 농업인운동단체 등 농업직능조직의 대표를 도 농업회의소의 대의원을 구성하여 전국 94개 도에 농업회의소를 설치함.
- 전국에 농업회의소가 구성된 직후 1928년 예산법에 “비건축용 토지소유세에 대한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농업회의소 재정으로 쓰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1929년부터 정부가 징수하여 농업회의소에 지원.
- 1935년에 파리에 비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도농업회의소 의장모임인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가 농업회의소의 전국기구로서 법적 인정을 받음으로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중앙에서 교섭력을 갖게 됨.
- 강제해산단계(1941~1948)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나치의 괴뢰정권인 비쉬(Vichy) 정부에 의해 여타 농업인단체와 함께 강제 해산됨. 대신 농업인동업자조합이라는 관변단체를 조직하여 유일한 합법적 농업인단체로 인정. 그러나 독일의 패전과 함께 해체되고 농업총연맹(CGA)이라는 새로운 단일조직이 출범함.
- 농업기술보급 주력단계(1949~1965)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기는 전후 복구와 국가적인 농업 근대화사업 추진으로 농업회의소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농업회의소가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교육훈련을 담당함. 1959년에 도농업회의소에 농촌지도사업 전담기구(SAU)가 설치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본격 수행.
- 1960/62년 농업기본법 제정으로 각종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의회 등)들이 농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정자문활동을 제도화함.

- 농업개발 주력단계(1966~1980)에는 1966년 농업개발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농업개발’이 농업정책의 중요 분야로 설정됨.
 - 농산물에 부과되는 조세를 토대로 ‘농업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전국농업개발협회(ANDA)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을 설립하여 농업개발 정책을 추진함.
 - 농업회의소는 ANDA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도단위의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별 농업개발사업체들이 수행하는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고 재정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 1970년 후반에 EU 역내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시장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생산 영역은 농업협동조합과 농식품 제조업체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이들 조직으로 이관.
- 농업·농촌개발 주력단계(1981~현재)에는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프랑스 지역개발정책이 6년 단위의 ‘국가-지역계획협약’ 형태로 실시되면서 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계획도 지역계획체계 내에서 수립.
 - 1988년 농촌관광활동을 ‘농업활동’으로 정의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농업회의소는 농촌관광사업체인 ‘농업과 관광’을 새로 구성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AF’ 사업에 착수.
 - 농업회의소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사업을 선구적으로 하는 시책은 이후 EU와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됨. 1999년 EU의 Agenda 2000 개혁안에 농촌개발이 공동농업정책의 제2의 축으로 인정받고, 2002년 프랑스에서는 민간조직이었던 전국농업개발협회를 정부 산하 조직인 ‘농업·농촌개발기구(ADAR)으로 재편하고 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
- 한편 1982년에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출방식이 다수득표자 당선에서 리스트 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농업계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표 20> 프랑스 농업회의소 연표

| 연도 | 주요내용 |
|-----------|---|
| 1851/1919 | ○ 두 차례 걸쳐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
| 1924 | ○ 농업회의소 설치법 제정 |
| 1927 | ○ 첫 농업회의소 의원 선거 |
| 1928 | ○ 법제정에서 회의소 구성까지 국가보조를 유일한 재정수입으로 하였는데, 예산법에 '비건축용 토지소유세에 대한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농업회의소 재정으로 쓰도록 법적 조치 마련(1929년부터 시행) |
| 1935 | ○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가 중앙 정치무대인 파리에 설치됨(경영자연맹과 상공회의소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조직 형성) |
| 1940 | ○ 나치 독일 점령기간 중 강제 해산 |
| 1945 | ○ 전후 농업회의소 조직과 기능의 회복 |
| 1952 | ○ 재탄생 이후 첫 농업회의소 의원선거 |
| 1954 | ○ 지역간 농업회의소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균형기금 설치 |
| 1959 | ○ 농촌지도 서비스 개시(농업기술자 200명 고용) |
| 1959 | ○ 농업회의소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
| 1966 | ○ 농업회의소에 농업개발 서비스기구(농촌지도사업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농업개발계획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이 부여됨 |
| 1966 | ○ 정부가 각 도에 축산전문기관을 설립하면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도농업회의소의 기구형태로 구성 |
| 1968 | ○ 농업회의소의장 상설의회(APPCA)를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로 개칭 |
| 1969 | ○ 도농업회의소 선거인단이 3개(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농업노동자, 지주)에서 5개로 늘어남(은퇴농업인과 농업직능단체 직원 추가) |
| 1969 | ○ 도농업회의소 지역단위 협의기구인 '지역 농업회의소'가 공공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중앙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 기초조직인 도농업회의소와 함께 3단계 계통조직형태를 취함 |
| 1982 | ○ 도농업회의소 구성을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서 각 도의 구성이 동일하게 됨 |
| 1988 | ○ 농촌관광사업(BAF)을 농업회의소의 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 |
| 2002 | ○ 농업·농촌개발기구(ADAR)에 의한 농촌개발사업 활성화 유도 |

자료) 김수석(2007) 수정 보완

다. 농업회의소의 법적 성격

- 프랑스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는 농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농업계를 대표하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민간조직임.
- 농업·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924년 농업회의소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법적 자문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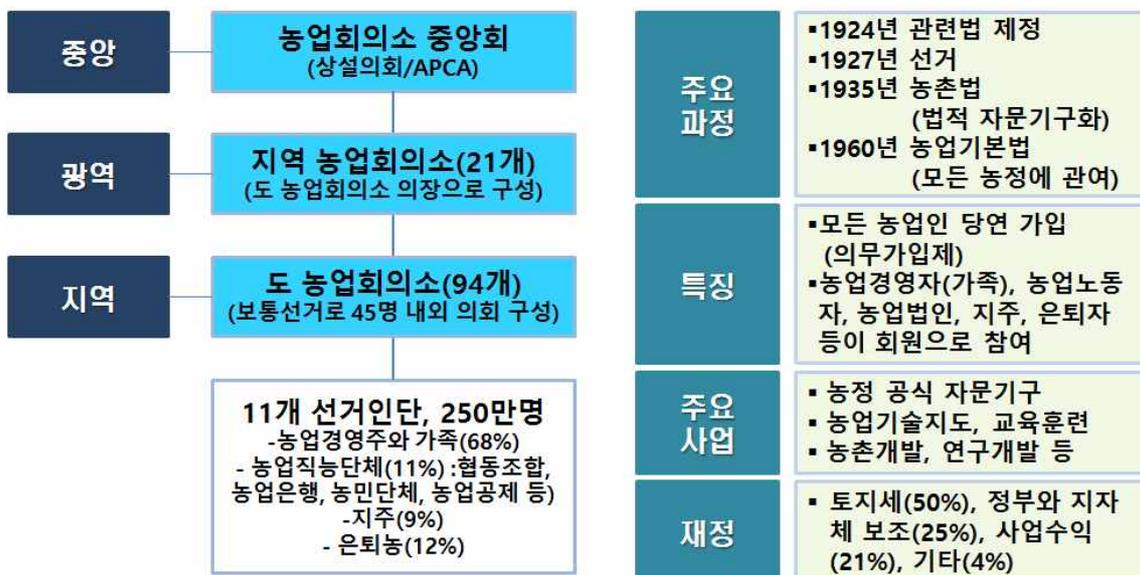
라. 조직 및 운영체계

-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94개의 도(département) 농업회의소를 기초조직으로, 21개의 지역(région) 농업회의소와 중앙조직인 1개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로 구성되어 있음³⁴⁾.
 - 농업회의소의 농정 참여활동은 도(département), 지역(région), 중앙 단위의 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농업회의소의 조직도 이런 행정체계에 대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지역농업회의소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 하에서 추진된 지방분권화정책으로 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지역(région)이라는 광역자치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지역에 속한 도 농업회의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음.
- 농업회의소 회원은 약 250만 명이며 농업경영주와 가족, 농업직능단체, 지주, 농업노동자, 은퇴자, 농업직능조직 직원 등 그룹별로 구성된 11개 선거인단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6년임.
- 기초조직인 도농업회의소는 농업계 내 각 그룹별로 조직된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임. 도농업회의소의 회원은 ① 경작자와 가족(배우자) ② 농지소유자 ③ 농업노동자 ④ 영농은퇴자와 배우자로 구성됨.

34)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는 기초자치단체인 36,000개의 코뮌(commune)을 기초로 96개의 도(département), 22개의 지역(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농업회의소는 평균 45명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농업 경영자 그룹이 절반 정도를 차지함. 도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 농정계획수립 참여, 농가기술지도, 직업훈련, 조사연구, 농촌개발, 농촌관광 (Bienvenue à la ferme) 등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함. 농업회의소 직원은 약 6,800명이며 전체 예산은 29억 프랑(약 6,400억원, 도회의소 당 평균 68억원) 수준임(오현석, 2005).
- 농업회의소의 수입은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주 수입원이고, 농업·농촌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와 자체사업 수익을 부차적인 수입으로 함.
 - 토지세 수입이 농업회의소 전체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농산물거래에서 생산자 부담으로 조성되는 농업개발기금(Fonds National de Développement Agricole, FNDA)의 일부와 축산지도사업, 직업훈련 등 농업회의소 대행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농업회의소 자체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중앙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는 농업인 대의기구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와 상하원, 유럽연합, 유럽의회 등을 상대로 농업정책 자문 및 로비활동을 수행함. 또한 농촌토지정비회사(SAFER),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재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공식참여를 통해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12> 프랑스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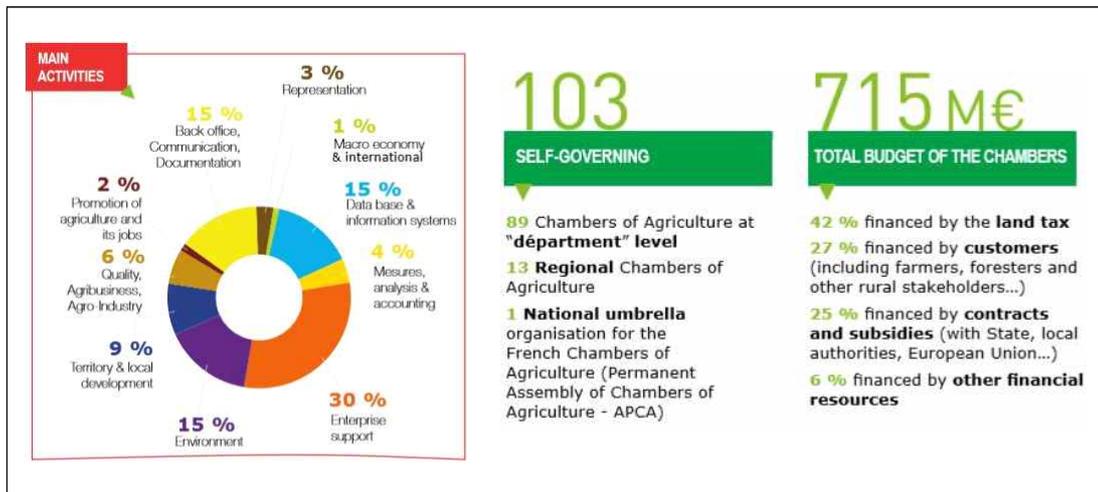
<표 21> 프랑스 루에레 농업회의소 운영사례

| | |
|---------|--|
| 조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 원 : 지역농업인 3,800명, 대의원 45명 사무국 : 직원 80명 역 할 : 농정 정책제안, 농업기술 연구 및 정보 제공 예 산 : 700만 유로(토지세 51%, 자체수익 28%, 보조 19%, 기타 2%) |
| 주요 운영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업 : 평균영농규모 130ha/호, 주 재배 품목은 밀(전체의 40%), 맥주보리 등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직접 선출한 45명 내외의 대의원과 대표로 구성 농업회의소는 ① 정부 상대 농정파트너 ② 연구개발, 기술교육, 상담, 토양검증 등 농업지도서비스 제공 기능 사무국 인력 80명 중에 15명이 ①기능, 65명이 ②기능 담당 농업인연맹은 농업인투쟁이 가능하나 농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 의무 있음 농업회의소 주 수입원인 토지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를 짓게 되면 토지에 대한 경작세 납부(30유로/ha, 약4만원) 정부는 그 세금 중에 일부(8유로, 15천원)를 농업회의소에 지원(전국지역/도 회의소 배분)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농촌진흥기관이 없이 때문에 농업회의소가 해당 기능 대행(인력 비중의 80%) 정부는 반드시 농업회의소를 통해 정책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함 비건축용 토지세(경작세)와 연동된 안정적인 자원 조달 체계 |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2017)

마. 최근의 주요 지표35)

- (조직) 도농업회의소(89개), 지역농업회의소(13개), 상설의회(1개)
- (예산) 715백만 유로(약9,362억원) 토지세 42%, 정부와 지자체보조 25%, 서비스수입 27%, 기타 6%
- (대표) 전국 4,200명(개인 300만명, 조직 50천개 선거 참여), 정규직 직원 8,325명



35) 2014년 말 현재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도농업회의소는 89개, 지역농업회의소는 13개로 줄어들었음(출처 : The French Chambers of Agriculture for the farmers and the rural world)

3. 독일 농업회의소

가. 독일의 농업인조직 현황

- 독일의 농업인조직은 순수 농업인단체인 독일농민총연맹(DBV), 농업회의소, 라이파이센 협동조합 등 3대 조직³⁶⁾으로 구분.
- 독일농민총연맹이 핵심조직이고, 농업회의소는 DBV의 농업행정적 조직, 라이파이센 협동조합은 경제적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라이파이센 협동조합이 DBV의 정회원이고, 농업회의소는 공법에 의해 설립된 별도 기구임.

<표 22> 독일 바이에른 농업인연맹 운영사례

| | |
|---------|--|
| 조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 원 : 15만명(바이에른주 농업인의 90% 이상 가입) ○ 사무국 : 직원 500명(7개 주사무소+44개 지역사무소) ○ 역 할 : 기술교육, 세금 및 법률 상담, 대출 등 금융상담서비스 제공 ○ 예 산 : 회비(평균 150유로)와 자체수익으로 운영 - 회비 280억원 규모 |
| 주요 운영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 바이에른주는 독일 전체 농지의 1/3차지, 평균영농규모 30ha, 낙농업 비중이 높고 EU내 회원국가로 80% 이상 수출 ○ 농민연맹의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자조조직으로 자율적 회비를 내고 가입(영농규모에 따른 회비제) - 농업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상담료 58유로/시간) - 사무국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변호사, 회계사 등) ○ 농민연맹과 농업회의소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는 농업행정기관이고, 연맹은 농업인자조조직임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농민연맹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독일 내 최대 농업인단체임 ○ 지역조직은 농정 영향력보다는 지도상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 농민연맹은 농업회의소를 농업행정기관으로 인식 |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2017)

나. 농업회의소의 위상

- 독일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는 주(州)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 자치기구로서 직업교육과 농업경영 지도 상담을 고유업무로 하고,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림사업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수행.
-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주 정

36) 3대 농업인조직은 임직원 및 대표들이 겹치고 조직들 간에 인사교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와 기능상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있음

부에 의해 설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창설될 수 있는 조직임. 이런 면에서 반관반민 성격의 민간 자치기구라 할 수 있음. 이런 기구가 주 정부로부터 농정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 농업회의소의 특징임.

다. 농업회의소 설립 역사

- 독일에서 최초의 농업회의소는 1894년 프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설립하였고, 이 후 독일연방 내의 다른 영방국가들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였음. 1933년 나치정권하에서 농업회의소는 모두 제국식량청(Reichsnährstand)으로 흡수 통합하게 됨.
- 1945년 종전 이후 서독의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다시 주(州)법에 의해 재설립되는 과정을 거침. 하지만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설립하지 않았고, 헤센 주에서도 1971년 농업회의소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주농무성으로 이관시켰음³⁷⁾.
-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들 주는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니테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브레멘 등임.

라. 지방 농업청과 농업회의소

- 독일의 지방농정은 농업청(Landwirtschaftsamt)³⁸⁾과 농업회의소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 독일의 지방농정은 관리주체인 주 정부가 산하 행정기관인 농업청을 통해 직접 농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 정부가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에 농정업무를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형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별 주 정부는 지방농정의 집행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7)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5개 주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설치하지 않고 주농무성 산하 농업청 체제로 농정을 집행하고 있음.

38) 독일의 농업청 체제는 주 정부 산하 직속기구가 지방농정을 직접 담당하는 형태임. 즉 기초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농업청 중심으로 지방농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지원, 생산기술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그리고 농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등임.

<그림 13> 독일의 지방농정 추진체계(주별 선택사항)



<표 23> 독일 농업청과 농업회의소 비교

| 구 분 | 농업청 | 농업회의소 |
|--------------|--------------------------|-------------|
| 조직의 성격 | 행정조직 | 농업인 자치조직 |
| 조직의 규모 | 군(郡)단위 조직 | 주(州)단위 조직 |
| 고유업무영역 | 농업경영기술 및 소득 지원, 농식품 안전관리 | 직업교육 및 농업상담 |
| 수위탁업무 | 직업교육 | 일반농정 집행 |
| 군 단위 지방농정 담당 | 농업청 | 농업회의소 군지소 |
|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 | 독립기관 | 독립기관 |
| 주 정부와의 관계 | 하부기관 | 수위탁 관계 |

마. 조직 및 운영 체계

- 농업회의소 대의원 선출은 농림업 종사자와 그 가족(배우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대의원 구성은 농림업 경작(자경)자 대 노동자의 비율을 2:1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경작자 기준은 경종농업 경작지 2ha, 임업 산지 10ha, 원예농업 0.5ha 이상을 영농하는 자로 규정함. 대의원은 직능별 그룹별로 세분되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임.
- 농업회의소 조직은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회장단으로 구성됨.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 이외에 농업분야 전문가와 직능별 대표자(품목단체,

영농후계자, 여성농업인)를 회원으로 함. 총회는 각종 위원회와 회장단을 선출하고 예결산을 의결·승인함. 농업회의소의 상설 이사회라 할 수 있는 주무위원회(Hauptausschuss)는 1명의 회장과 2명의 부위원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농업회의소의 실무책임자인 소장(Direktor)은 주무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임.³⁹⁾ 농업회의소의 감독기관은 주농무성이 담당함.

- 농업회의소는 군(Kreis) 단위 지자체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지소를 두고 있는데, 조직의 중심이 군 지소 보다는 주(州) 차원의 농업회의소 본부에 있음.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이 농업회의소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군 지소는 이를 군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소 역할을 수행함. 군 지소 조직도 농업회의소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대표를 구성함.
- 농업회의소의 업무는 직업교육과 농업인 컨설팅 등 대농업인 서비스 업무와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사무로 구성됨.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업 생산물의 수익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 개선
 - 직업교육 실시
 - 농업경영, 생산기술 및 유통 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
 -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환경보호 문제와 농촌공간 정비 문제에 적극 동참
 - 농림업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 지원
- 농업회의소 재정은 주정부의 지원과 자체 수입으로 조달되는데, 농업회의소는 자체 수입 수단 중 하나로 일종의 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농업경영체에 부과할 권리를 갖고 있음. 농업회의소 재정에서 주정부의 보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는 예산집행에 대해 주 정부의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음.

39) 니테르작센에서는 농업회의소 소장을 총회에서 선출.

4.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가. 농업인단체 조직 및 구성

- 오스트리아 농업인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당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농업인단체도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오스트리아 최대 농업인단체인 농업인연맹(ÖBB)은 원래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농업인운동과 더불어 조직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보수성향인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음.
- 2010년 현재 ÖBB의 회원은 약 30만 명이고, 회원에 속한 농림업경영체 수는 약 18만 개소임⁴⁰⁾
 - ÖBB의 정치적 영향력은 2009년 기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시장의 약 40%, 주의회 의원의 8.2%, 연방국회의원의 8.1%가 ÖBB 소속임. 오스트리아 농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ÖBB가 좌우한다 할 수 있음⁴¹⁾.

나. 농업회의소 운영 현황

-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는 독일처럼 주(州)별로 주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현재 전국 9개 주 모두에 설립되어 있음.
 - 농업회의소의 연합체인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LWÖ)가 중앙기구로 운영. 전체 농업회의소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지만, 상위기관 보다는 대변인 성격이 강함. 주(州)농업회의소 산하에 지역 차원의 지역농업인회의소(Bezirksbauernkammer)가 있고, 그 밑에 현지농업인위원회(Ortsbauernausschuss)가 있음.
- 농업회의소는 기구의 성격상 주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 조직이면서 농림업 종사자의 대의기구가 되며, 업무 역할은 농림업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함. 농업회의소 회원은 ①

40) 오스트리아 전체 농림업경영체 수는 18만7천 개소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농업경영체가 ÖBB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항하여 농업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안적 농업인단체로 무소속의 독립농업인연맹(UBV)이 창립되었음.

농지 및 임야의 소유자 ② 농림업 경영주 ③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족 ④ 농업법인 및 관리자로 구성됨⁴²⁾.

- 농업회의소는 정당소속의 농업인단체별로 출마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함. 주농업회의소와 지역농업인회의소의 대의원 선거는 나뉘어 실시되는데 대의원의 임기는 보통 5년이고, 5년마다 주별로 다른 시기에 선거함.
- 주(州)농업회의소 조직은 총회, 주무위원회(Hauptausschuß), 감독위원회, 농업회의소 회장단으로 구성됨. 총회는 각종 위원회 위원과 농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고 농업회의소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함.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이 정회원이 되고, 지역농업인회의소 회장과 전문직의 농업회의소 소장(Kammerdirektor)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함.
- 주무위원회⁴³⁾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행정, 조직, 인사 및 재정사항을 처리하고, 농업회의소의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회의소 소장을 선출함. 감독위원회⁴⁴⁾는 농업회의소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심사함. 농업회의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주무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농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 대의원의 2/3 의결로 선출함..
-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① 농업인 대의기구 ② 회원(농업인) 지도·상담 ③ 회원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④ 정책자금(지원금) 집행으로 되어 있음. 이 중 앞의 3가지 업무는 농업회의소 고유 업무에 속하고, 정책자금 집행업무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임. 정책자금 집행에서 가장 주된 업무는 EU의 직불금을 농업경영체가 수령할 수 있게 돕는 것임.
- 농업회의소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부담금)와 주정부 및 연방

42) 오스트리아에는 농업노동자회의소가 농업회의소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43) 니더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의 경우, 주무위원회는 회장과 2명의 부회장 외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44) 니더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는 6명의 위원과 2명의 후보위원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함. 독일 농업회의소에서는 감독기관이 주농무성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양국의 제도 간에 차이가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그리고 유료상담에 의한 수입 등으로 구성됨. 니테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의 경우, 연간 재정규모가 약 5,000만 유로인데, 수입의 절반은 회비 등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짐.⁴⁵⁾

<표 24> 유럽 주요국의 농업회의소 비교

| 구분 | 프랑스 | 독일 | 오스트리아 |
|--------|--|---|--|
| 위상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자치조직 ○ 상공회의소에 대응 ○ 최상위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자치조직 ○ 상공회의소에 대응 ○ 독일농업인총연맹(DBV)의 농업행정적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자치조직 ○ 농업인 대의기구 ○ 정당별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와 양립, 일체화 |
|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역-중앙 3단계 계통 조직 ○ 도 단위 조직을 기초로 전국조직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조직 ○ 주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 지부 운영 ○ 중앙의 농업회의소 연합회는 대의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조직 ○ 주단위 중심 ○ 산하 지역회의소가 있고 중앙단위에도 연합체 구성 |
|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 : 대의기구, 지도 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 수탁업무: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 지도상담, 농업 교육 ○ 수탁업무: 일반 농정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 대의기구, 지도 상담, 직업교육 ○ 수탁업무: 정책자금 집행 |
| 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 농업회의소세)(50%) ○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자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회비-세금성 부담금 (25%) ○ 주정부 보조금(50%) ○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등)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회비-세금성 부담금 (25%) ○ 정부 보조금(50%) ○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등) (25%) |
| 농정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참여(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중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집행의 민영화 ○ 지방농정청과 업무 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집행 부분 대행 |
| 설치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 정부의 선택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 설치법 제정 ○ 연방법에 제정 |
| 정부와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심의 및 자문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업무 수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집행업무 수위탁 |

45) 회비는 모든 경작자가 기본급으로 납부하는 27.95 유로 이외에 소유한 토지의 규모 및 비옥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구성됨. 즉, 소유한 토지가 많을수록 또한 비옥도를 나타내는 토지의 수익지가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회비를 납부함.

5. 일본 농업회의소

가. 농업회의소 조직체계

-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1951년 제정된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시정촌(市町村) 농업위원회, 도도부현(都道府縣)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약 2,300개의 시정촌 농업위원회와 47개의 도도부현 농업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농지면적 10a(북해도 30a) 이상을 소유한 농업인과 그 가족을 회원으로 함. 1백만 명의 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시정촌 농업위원회 위원 수는 46천명 수준임.
-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시정촌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로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농업인의 선거로 선출된 선거위원과 시정촌장이 선임한 선임위원으로 구성됨.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⁴⁶⁾의 성격을 가짐.
- 도도부현농업회의는 행정기관 성격인 시정촌 농업위원회와는 다르며, 도도부현 내에 설립된 농업계 대표조직임. 원칙적으로 시정촌 농업위원회 회장이 회의원이 되고, 도도부현 내의 각종 농업단체의 대표, 학식 경험자 등으로 회의원을 구성함.
- 전국농업회의소는 1954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농업인의 의견을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직형태임.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의 기능을 활용한 유일한 전국단체로서 중요한 단계별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농정 추진 상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함.

나. 농업회의소 운영체계

- 농업회의소의 업무는 농업위원회 만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법령상 전속적 업무와 비전속적 업무(임의업무와 농정업무)로 구분됨.
-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전속적 업무로 농지의 권리변동에 대한 인허가 또

46) 합의체 행정기관은 전문적으로 정해진 사무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처리함. 농지업무가 여기에 속하며 일본 농업회의소의 중요한 기능임.

- 는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로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특히 각 지역의 농지이용방법을 포함하여 우량농지의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권하는 업무를 담당함.
- 비전속적 업무에는 농업인의 공적 대표기관으로서 농지의 이용조성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 인정농업인의 육성, 농지유동화, 농업경영의 법인화,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을 수행함.
 - 또한 의견의 공표, 정책 건의 및 자문 기능은 행정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농업인의 공적 대표기관으로 역할로서 지역 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함.
 - 도도부현 농업회의는 전속적 업무로 법률에 근거한 고유업무를 수행함. 여기에는 농지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토지개량법 등 법령에 의해 농업회의소가 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포함됨.
 -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하여 의견을 공표하고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한 대응,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을 역할을 수행함.

<그림 14> 일본의 농업회의소 주요현황



제3절 국내 상공회의소 운영사례

1. 상공회의소의 위상과 시사점

가. 상공회의소의 위상

- 상공회의소는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권익단체로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 경제5단체이며 법적 경제단체임.
- 1884년 결성된 ‘한성상업회의소’가 모태가 되었으며 1948년 ‘대한상공회의소’로 명칭이 변경됨.
-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회의소의 2단계 조직 체계로 전국의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6만 회원이 참여.
-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① 당연회원 ② 임의회원 ③ 특별회원 ④ 준회원으로 운영됨.
- 1998년 상공회의법 개정을 통해 1999년부터 회원 제도를 ‘의무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3차례 연기 끝에 2011년부터 ‘부분 의무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15> 대한상공회의소 주요현황



나. 상공회의소의 시사점

- 국내에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공적 대의기구로서 농업회의소는 불가능한가? 이런 점에서 상공회의소는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상공회의소는 공법에 근거하여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은 중요한 국내 선례임. 상공회의소법은 1952년도에 제정되었고, 경제5단체로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임.
- 전국에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6만 회원을 보유하고, 상공업 관련 정책 자문·건의, 각종 자격의 증명·검사·검정, 직업기술기능의 보급, 연구조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함. 2011년 “의무가입제”에서 “부분 의무가입제”로 변경되기 전까지 정부가 법률로 회원가입을 강제하였음⁴⁷⁾.
- 둘째, 설립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상공회의소의 위상 확립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상공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시행된 의무가입제와 다양한 지원은 상공회의소의 대표성과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음⁴⁸⁾.
- 셋째, 농업계와 상공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헌법 제123조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공업계는 1952년부터 상공회의소법을 통해 공적 대의기구로서 법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만, 농업계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넷째, 농업계 대의기구에 대한 법적 공백을 보여줌. 상공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경제조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기업·소상공인, 1997년 특별법 제정)’ 등 분야별 법률과는 별도로 공적 권익기구에 대한 ‘상공회의소법’이 따로 있음.
- 반면,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협동조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7) 1999년에 “의무가입제”에서 “부분 의무가입제”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시행은 계속 보류하다가 2011년부터 시행함.

48) 예컨대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로부터 2012년 20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수원상공회의소는 2014년 20억원, 2015년 21억원(수원시, 노동부, 경기도, 특허청)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로 인정은 받지만, 자조조직 혹은 공적 대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⁴⁹⁾.

2. 상공회의소 회원과 주요사업

가. 상공회의소 연혁

-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 1895년 상무회의소규례 제정
- 1905년 경성상업회의소 설립
- 1946년 조선상공회의소 창립
- 1952년 상공회의소법 제정
- 1964년 제1회 상공의날 개최
- 1984년 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 2011년 '의무가입제'에서 '부분의무가입제'로 변경
- 2014년 상공회의소 창립 130주년

나. 회원의 종류

- 당연회원 : 반년 매출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은 소재지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 (※ 반년 매출액 기준 서울시 17억원, 6개 광역시 5억원, 그 외 지역 2억5천만원)
- 임의회원 : 당연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
- 특별회원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준 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 참여, 이용 기업

49) 상공회의소의 정회원 자격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14호까지로 규정하는데, 동 조항 제1호의 농림수산업계는 제외하고 있음. 회원자격을 소득세법으로 정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는 회원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
|---|
| <p>[인천 상공회의소 회비 기준(2016년)] - (당연회원) 전년도매출세액×부과율(지역상공회의소 정관) (부과율 : 2.25/1,000(상·하반기 2회 부과) - (특별회원) 반기 500천원(연간1,000천원) - (임의회원) 반기 250천원(연간500천원) ※ 지역회의소별 납부금액은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p> |
|---|

다. 주요 사업 범위

-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근거한 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주요사업은 ① 정책 자문 및 건의 ② 인력개발 ③ 정부위탁사업수행 ④ 정보화지원사업 ⑤ 국제협력 ⑥ 회의/교육/정보제공 ⑦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함.

<표 25> 상공회의소와 타경제단체 주요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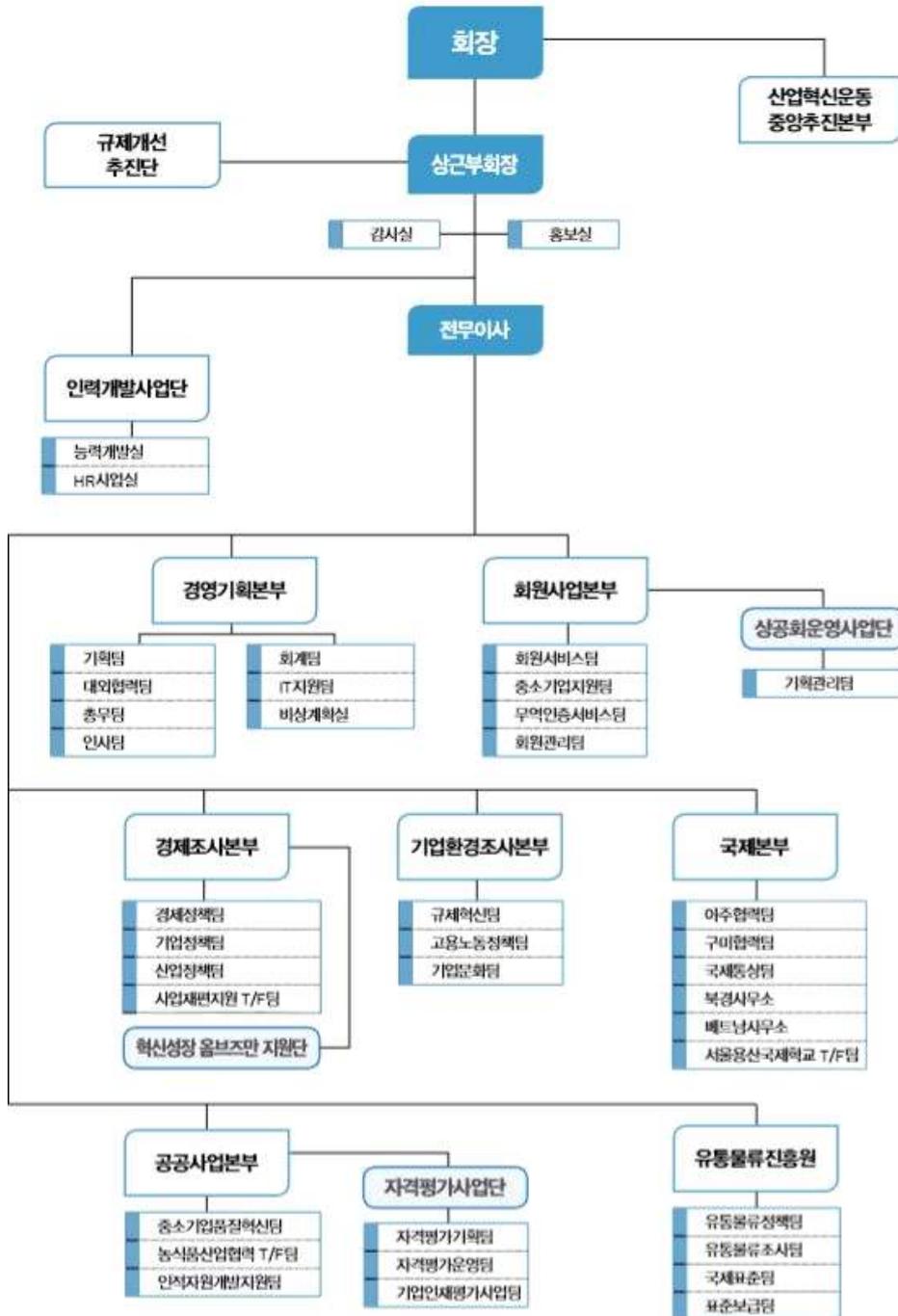
| 분류 | 주요활동 | 상공 회의소 | 전경련 | 무역협회 | 중기 중앙회 |
|---------------------------|----------------|-----------|-----|------|-----------|
| 교류·협력 및 지역경제계 대변 활동 | 기업인간 교류·협력 | ○ | ○ | ○ | ○ |
| | 지역경제계 대변 | ○ | X | X | X |
| 제도·정책 개선 활동 | 기업애로 개선 건의 | ○ | ○ | ○ | ○ |
| |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 ○ | ○ | △ | △ |
| 민간 국제협력활동 | 사절단 파견/ 경험위 운영 | ○ | ○ | ○ | △ |
| | 거래알선, 국제기구 참여 | ○ | X | ○ | X |
| 기업경영 지원활동 | 직무교육, 경영상담 | ○ | △ | △ | △ |
| | 기업정보DB 제공 | ○ | X | X | X |
| 정부위탁사업 수행활동 | 사무자격검정 | ○ | X | X | X |
| | 직업교육훈련 | ○ | X | X | X |
| | 무역증명 발급 | ○ | X | X | X |
| | 품질인증 | ○ | X | X | X |

자료) 한국산업연구원(2010).

라. 대한상공회의소 조직 운영현황

- (회비) ① 정회원(지역상공회의소 회비수입의 1%. 단, 서울상의는 10%) ② 특별회원 : 예산규모에 따라 50만원~300만원
- (인원) 209명(2016년 기준)

<그림 16> 대한상공회의소 조직 체계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보고서

마. 지역 상공회의소 운영사례50)

(2016년 9월 현재)

| 구 분 | 수원 상공회의소 | 인천 상공회의소 |
|----------------|--|---|
| 창립 | 1946.6.3. | 1946.8.10. |
| 회원 | 약1,000개 업체 | 약4,000개 업체 |
| 당연 회원 | 상공업자로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반년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가입회원 [회비액 산출방법: 반년매출액*10%(부가가치세율)*회비부과율(2.5/1000)] | 상공업자로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업체 전년도매출세액*부과율 *부과율 : 2.25/1000 (상하반기 2회 부과) |
| 임의 회원 | 상공업자로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반년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가입회원 [연간회비액 : 500,000원(반년 250,000원)] | 상공업자로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개인, 법인업체는 반기 250,000원(연간500,000원) (상하반기 2회 부과) |
| 특별 회원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가입 가능 [연간회비액 : 1,500,000원(반년 750,000원)] | 반기500천원(연간1,000천원) |
| 상근직원 | 18명 | 29명 |
| 법인인가 /등기 | 1953.10.31. | 1954.1.20 |
| 법제정 | 1952.12.20 | 1952.12.20 |
| '16회비 (백만원) | 1,100(회비) | (※ 비공개) |
| 지자체등 지원금 (백만원) | (13년)2,000 (14년)2,000 (15년)2,100 | (※ 비공개) |
| 예산 운영현황 (백만원) | - 수원시·노동부·경기도·특허청: 21억 - 건물수익: 9억 - 검정수익: 6억 *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 (15년) 11,351백만원 - 사업수익: 5,212 - 수입사업수입: 4,946 - 기타수입: 565 - 관리수익: 196 - 전입금: 431 |

자료) 수원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50)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회의소의 연도별 예·결산 자료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바. 자치 조례에 근거한 협의기구 참여

- 현재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과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상공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의기구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 주요 자치 조례 | 사례 |
|----------------------------|-------------------------|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충청남도 |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삼척시 등 |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 완주군, 하동군, 장수군, 의성군 등 |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 익산시, 보령시 |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전라북도 |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광주시, 파주시, 순천시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의왕시 |
|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통영시 |
| 도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
|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 | 완주군, 시흥시 |
|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 | 천안시, 진천군 |
|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
| 관광진흥 조례 | 제주도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협의회 조례 | 대전광역시, 제주도 |
|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오산시 |
| 소비자 보호조례 | 파주시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PART
04

한국형 농업회의소 분야별 활성화 방안

- ①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
- ② 농정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 ③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 ④ 농업회의소 역량 제고
- ⑤ 재정 자립도 확보

제4장 한국형 농업회의소 분야별 활성화 방안

제1절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

1. 농업회의소 회원제도와 참여도

가. 현재 회원제도의 한계

- 농업회의소 회원은 ① 농어업인(개인회원) ② 농어업인단체, 농업법인(단체회원), 일반협동조합 ③ 농협중앙회, 농수축협, 산림조합(특별회원) (이상 정회원) ④ 준회원으로 구분됨.
- 현재 농업회의소의 회원제도는 ‘의무가입제’가 아닌 ‘임의가입제(자율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농업회의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높은 수준의 농가 고령화 상황을 감안할 때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회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직능+품목), 농수축협, 산림조합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공감대 미흡으로 참여도가 낮은 상황임.

나. 농업회의소의 개인회원 참여도

- 2018년 6월말 현재 활성화 지역의 개인회원은 700~1,500명 수준임.
- 5개 지역 평균 개인회원 숫자는 농가수와 농가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평균 992명에서 2018년 6월말 현재 평균 1,0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6월말 현재 농가수 대비 개인회원 가입률은 봉화군이 23.1%로 가장 높고, 거창군이 10.6%로 가장 낮음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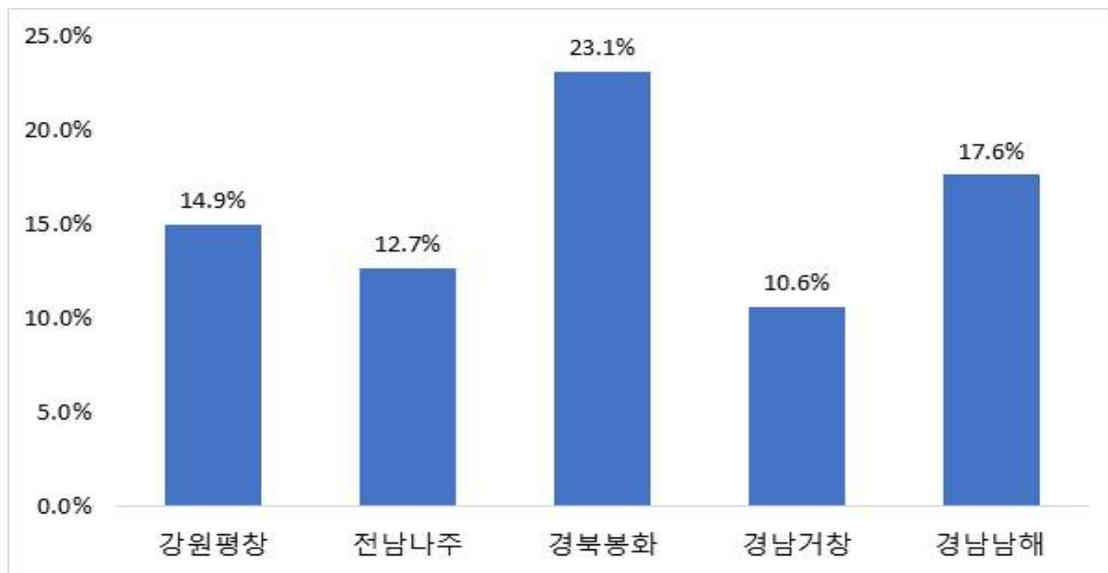
<표 26> 주요 농업회의소의 개인회원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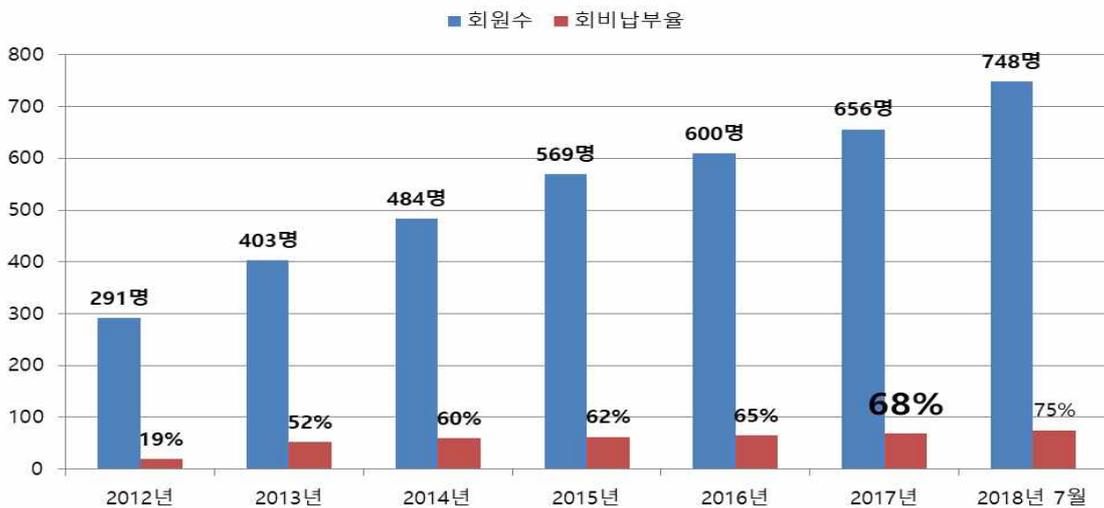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현재 | 평균 |
|------|-------|-------|-------|-------|----------|-------|
| 강원평창 | 550 | 602 | 600 | 676 | 744 | 634 |
| 전남나주 | 1,294 | 1,304 | 1,303 | 1,323 | 1,323 | 1,309 |
| 경북봉화 | 1,200 | 1,200 | 1,200 | 1,470 | 1,470 | 1,308 |
| 경남거창 | 755 | 772 | 806 | 748 | 786 | 773 |
| 경남남해 | 1,162 | 1,155 | 1,155 | 1,246 | 1,155 | 1,175 |
| 평균 | 992 | 1,007 | 1,013 | 1,093 | 1,096 | 1,040 |

자료) 해당 시군 농업회의소

<그림 17> 주요 농업회의소의 농가수 대비 개인회원 가입률



<그림 18>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회원수와 회비 납부율 변화



자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51) 평창군은 2012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회원수와 회비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상공회의소의 회원제도와 가입률

가. 회원제도 변화 과정

- 1952년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하여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서 상공회의소에 다양한 공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회원제도는 “당연 가입제(의무가입제)”를 채택.
- 1998년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하여 회원제를 ‘임의가입제’로 전환하되 2003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함.
-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매출세액 이상의 상공업자에 대한 당연회원제(부분 의무가입제)를 도입하되 이를 2006년까지 적용하고, 임의 회원제 시행은 유예함.
 - 2006년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던 당연회원제 시행을 2010년까지 연장.
-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 세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부분 의무가입제 시행).

〈표 27〉 상공회의소법상 회원제 관련 규정 변화

| 구 분 | 회원제 | 당연회원제 적용대상 | 시행일 또는 적용시한 | 비 고 |
|------------------|---|--|--|-------|
| ‘98년 이전법률 | ○ 당연회원제 (법 제6조제1항) | ○ 모든 상공업자 | - | |
| ‘98년 개정법률 | ○ 임의회원제 (법 제6조제1항) | - | ○ 임의회원제 ‘02년말까지 시행유예(부칙 제1항) | 정부 입법 |
| ‘02년 개정법률 (전부개정) | ○ 임의회원제 (법 제10조제1항) ○ 부분당연회원제 (법 제10조제3항) | ○ 매출세액 기준 특별시 : 7억원 이상 광역시 : 3억원 이상 시·군 : 1.5억원 이상 | ○ 부분당연회원제 ‘06년말까지 한시적용(부칙 제2조) | 정부 입법 |
| ‘06년 개정법률 | 상동 | ○ 매출세액 기준 특별시 : 10억원 이상 광역시 : 4억원 이상 시·군 : 2억원 이상 | ○ 부분당연회원제 ‘10년말까지 한시적용(부칙 제2조) | 의원 입법 |
| ‘10년 개정법률 | ○ 부분당연회원제 (법 제10조제3항) ○ 중소기업에 대한 회비감면 조항 신설(법 제14조제3항) | ○ 매출세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회원 대상기준은 3년 마다 조정 (법 제10조제4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은 회비 일부 감면 |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시행(부칙 제2조) | 의원 입법 |

자료) 산업연구원(2010)

나. 회원 가입률 변화

- 상공회의소도 2004년에 ‘임의회원’ 제도가 도입되고 당연회원 가입 기준이 높아진 이후에 회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006년에도 당연회원 가입 기준 상향조정 이후 소폭이지만 감소함.
- 2007년 당연회원 감소가 2%에 그친 것은 2007년 하반기에 회비부과 자료를 입수하여 2006년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당연회원 대상기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2007년 상반기 기준 당연회원 대상 업체는 29,490개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하였고, 이것이 2006년 법 개정의 실질적인 회원수 감소 효과라고 할 수 있음. 한편 2006년 당연회원 가입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제외된 업체 14,880개 업체 중에 2,998개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재가입률은 20.1%에 그침(산업연구원, 2010).
- 이는 회원제도가 회원 가입률과 대표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

〈표 28〉 상공회의소의 회원수 변화(개소)

| 연도 | 당연회원 | 임의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합계 |
|------|--------|--------|-----|------|---------|
| 2002 | - | - | - | - | 103,030 |
| 2003 | - | - | - | - | 48,709 |
| 2004 | 37,482 | 10,985 | 653 | 385 | 49,505 |
| 2005 | 40,348 | 12,965 | 634 | 366 | 54,313 |
| 2006 | 39,572 | 12,464 | 584 | 426 | 53,046 |
| 2007 | 38,778 | 13,973 | 559 | 449 | 53,759 |
| 2008 | 36,123 | 16,535 | 591 | 471 | 53,720 |
| 2009 | 43,022 | 16,928 | 477 | 610 | 61,037 |

자료) 산업연구원(2010)

〈표 29〉 당연회원 기준 상향조정과 회원수 및 회비 변화

(단위 : 억원, 개소)

| 구분 | | 2002년 법 개정시 | | | 2006년 법 개정시 | | |
|----------|-----|----------------|----------------|-----------|----------------|----------------|-------|
| | | 개정전 (2002년) | 개정후 (2003년) | 변화율 | 개정전 (2006년) | 개정후 (2007년) | 변화율 |
| 상향 내역 | 특별시 | 2.2(44) | 7(140) | 218% | 7(140) | 10(200) | 43% |
| | 광역시 | 0.5~1(10~20) | 3(60) | 300~500% | 3(60) | 4(80) | 33% |
| | 시·군 | 0.1~1(2~20) | 1.5(30) | 50~1,400% | 1.5(30) | 2(40) | 33% |
| 영향 | 회원수 | 103,030 | 48,709 | △52.7% | 39,572 | 38,778 | △2.0% |
| | 회비액 | 680 | 648 | △4.7% | 674 | 653 | △3.1% |

자료) 산업연구원(2010)

3. 해외 농업회의소 회원제도

가. 프랑스의 회원제도

-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회원자격은 선거인의 자격조건에 명시되어 있음.
- 개인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농업인 뿐만 아니라 지주, 은퇴농, 가족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인정함.
- 단체에 대해서는 농협, 농업공익회사, 농업신용금고, 농업상호공제조합, 농업관련 조직의 노동조합과 직원에 대해서도 선거권 배분.

| 구분 | 대상 | 자격 조건 |
|----|------------|--|
| 개인 | 토지소유주 | ○ 농업인대상 질병·장애·출산보험 수혜자 |
| | 농장경영주와 가족 | ○ 농업인대상 사회보험 수혜자 |
| | 소작농 | ○ 농장관리회사 구성원, 법인의 토지소유주 포함 |
| | 퇴직 농장주와 가족 | ○ 퇴직연금 또는 종신연금 수혜자 |
| 단체 | 농업협동조합 | |
| | 농업공익회사 | ○ 농업협동조합회사 포함 ○ 회원수 비례하여 선거인 배정 |
| | 농업신용금고 | |
| | 농업상호공제조합 | |
| | 노동조합, 직원 | ○ 농업인사회보장보험 가입, 건강보험 수급자 ○ 농산물생산회사 등 직원 |

자료) 프랑스 농업회의소 법률 및 시행령

나. 독일의 회원제도

- 독일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⁵²⁾는 선거집단을 둘로 나누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138명의 대의원을 선출함.
- 지주, 용익권자, 임차인과 배우자, 가족, 사업체 피고용인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농업회의소 회비를 납부하고, 최소 경작면적 이상 농업인이 참여하고, 가족의 경우 만68세로 제한하는 특징이 있음.

52) 독일의 농업회의소 회원제도는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이 비슷함.

| 구분 | 대상 | 자격 조건 |
|---------------|------------|---|
| 선거 집단 ① | 토지소유주와 배우자 | ○ 농업회의소 기여금 납부자(회비) |
| | 용역권자와 배우자 | ○ 경영농지(2ha 이상), 임업(20ha 이상), 원예(0.5ha) 이상 |
| | 임차인과 배우자 | ○ 다른 농사업체 피고용인은 제외 |
| | 임직원 | ○ 법인 경영체 포함 |
| | 가족 | ○ 본업이 농업사업체의 임직원인 자 |
| 선거 집단 ② | 피고용인 | ○ 함께 일하는 만68세 이하 |
| | 피고용인의 배우자 | ○ 선거집단①에 속하지 않은 임직원, 배우자, 가족이 아닌 자 |
| | | ○ 선거집단①에 속해있지 않거나 농업이외가 본업 |

주) 본업이라 함은 근로시간 중 적어도 3/4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료)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법

다. 오스트리아의 회원제도

-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주는 지주(1ha이상), 농업인, 가족, 은퇴 농과 함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인정.

| 구분 | 자격 조건 |
|------|---|
| 개인 | ○ 농업과 임업 1ha 이상 토지소유자(토지세액 산출 기준) ○ 농업과 임업 본업 종사자 ○ 토지소유자 및 종사자의 가족(배우, 부모, 자녀 및 사위와 며느리) ○ 20년 이상 은퇴지주 및 은퇴 종사자와 그 배우자(다른 분야 미취업)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과 경제협동조합 및 그 연합체 |

자료) 디어외스터라이히주 농업회의소법

라. 일본의 회원제도

- 일본은 20세 이상 농업인과 그 친족 및 배우자, 농업생산법인을 선거인으로 구성하며 홋카이도는 30a, 나머지 지역은 10a 이상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구분 | 자격 조건 |
|----------|--|
| 농업인 | ○ 도도부현은 10a 이상, 홋카이도는 30a 이상 경작자 |
| 친족 및 배우자 | ○ 농업인과 동거하는 친족 및 배우자 ○ 농림수산성령 종사 일수 기준 이상 |
| 농업생산법인 | ○ 농지법에 규정하는 농업생산법인 |

자료)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4. 회원제도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제도 개편이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의 회원 구성 자체는 ‘개인 농업인’과 ‘상공업 사업자’로 큰 차이가 없음.
- 회원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공회의소는 ‘부분의무가입제’인 반면 농업회의소는 ‘임의가입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처럼 현재의 ‘임의가입제’ 방식을 ‘의무가입제’ 혹은 ‘부분 의무가입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⁵³⁾.
-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회원제도 개편은 ①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② 농지 면적 기준 ③ 농업인 기준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음.
 - 회원제도 개편은 대표성뿐만 아니라 회비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회원제도 개편방향

(1)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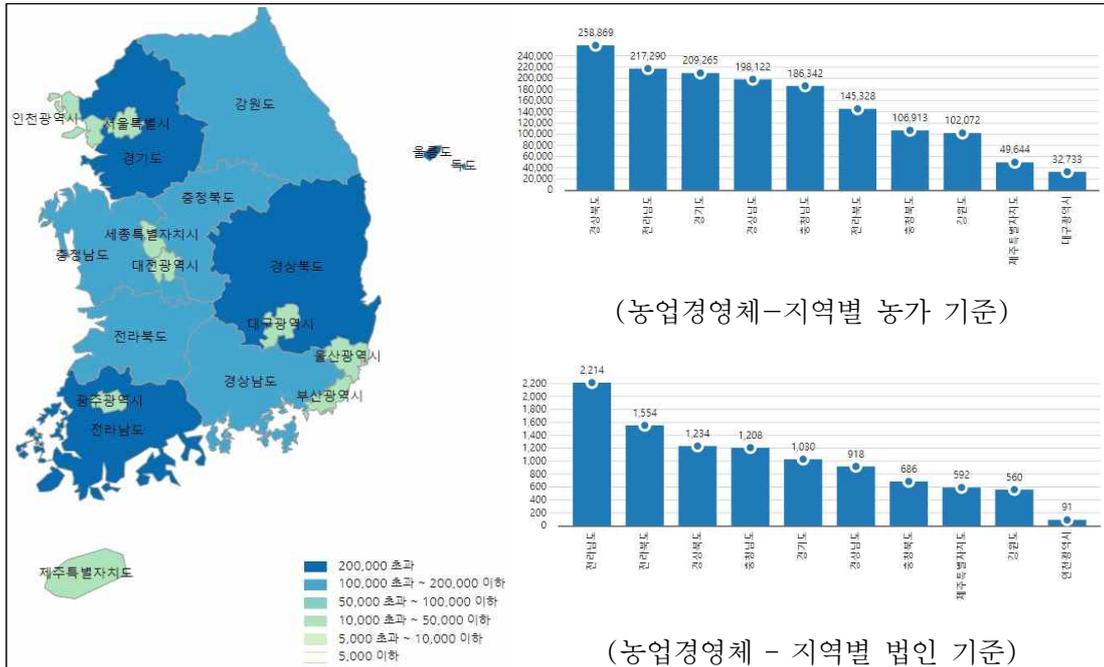
- 회원제도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의무가입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2017년말 현재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1,644,899개소이며,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10,240개소임.
- 2018년 1월말 현재 어업인 등록경영체는 68,897개소이며, 어업법인 등록경영체는 354개소임.
- 이 방식의 장점은 농어업경영체 등록과 동시에 농업회의소의 회원 자격

53)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농어업회의법안은 ‘임의가입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자격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함.

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회원 관리와 농가 홍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농업인과 어업인을 포괄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할 수 있음.

- 한편 현재 농가수(약110만 가수)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비교할 때 배우자가 일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지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표 30>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17년 말)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표 31> 어업경영체 등록현황

| 시도명 | 합 계 | 등록 현황('18.1말 기준) | |
|------|--------|------------------|------|
| | | 어업인 | 어업법인 |
| 계 | 69,251 | 68,897 | 354 |
| 특광역시 | 6,231 | 6,219 | 12 |
| 경기 | 1,593 | 1,571 | 22 |
| 강원 | 2,321 | 2,318 | 3 |
| 충북 | 269 | 266 | 3 |
| 충남 | 9,703 | 9,653 | 50 |
| 전북 | 6,007 | 5,966 | 41 |
| 전남 | 24,662 | 24,504 | 158 |
| 경북 | 3,205 | 3,203 | 2 |
| 경남 | 10,364 | 10,349 | 15 |
| 제주 | 4,896 | 4,848 | 48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농지면적 기준

-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10a 이상, 북해도는 30a 이상)은 일정 면적 이상 농가에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과 동일한 10a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17년말 기준 31,391농가, 3.0%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방식은 규모 있는 실경작자 중심의 회원을 규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① 대상 농가 확인 및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② 가입절차를 따로 뒤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③ 어업인 회원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④ 여성농업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음.

| 농가수(A) | 제외대상 농가 | | | (비율) |
|-----------|---------|-----------|--------|------|
| | 경지없는 농가 | 0.1ha미만농가 | 계(B) | |
| 1,042,017 | 9,512 | 21,879 | 31,391 | 3.0% |

자료) 국가통계정보

(3) 농업인과 어업인 기준

- 행정 통계에 잡히는 농업인과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음.
- 이 방식은 여성 농어업인까지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지면적 기준과 동일하게 ① 대상 농가 확인 및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② 가입절차를 따로 뒤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③ 회원 관리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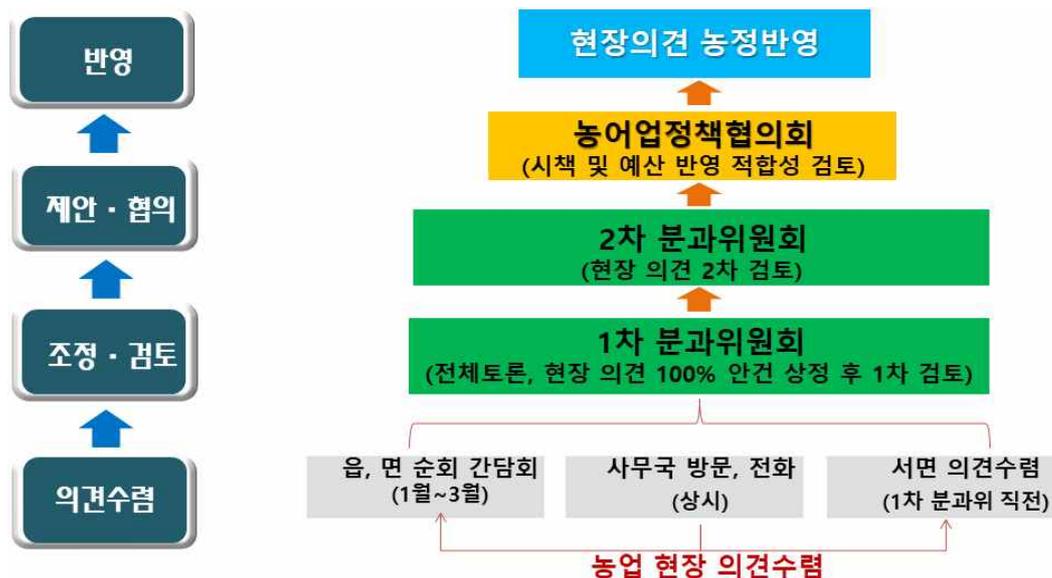
제2절 농정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1. 농정 참여 시스템 구축

가. 현재의 농정참여 시스템

- 농업회의소의 1차적인 설립 목적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계 내부에서 협의·조정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것임.
-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농업회의소가 체계적인 농정 참여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주요 성과이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과제임.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⁵⁴⁾’는 ① 읍면순회 간담회, 농업인단체, 농협 간담회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②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상사업과 우선순위를 정하며, ③ 지자체와 농어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차기년도 사업과 예산에 농정과제를 반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예산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모델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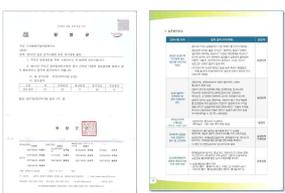
<그림 19>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농정 참여 시스템



자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54) 추진절차와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활성화 지역 농업회의소들은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반영 역할을 기본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표 32〉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프로세스

| 구분 | 구분 | 주요내용 |
|------------------------------|---|---|
| 읍면순회 간담회 (방문/서면 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목적) 농어업인의 현장의견 수렴, 농어업회의소 사업보고, 지자체 농정계획 등 ○(참석대상) 농어업인 누구나 ○(개최시기) 1~3월(농한기) |
| 1차 분과 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목적) 평창군 농업정책 공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분과별 농어업인 현장 수렴 의견 1차 토론, 핵심사항 집중 토론 등 ○(참석대상) 분과위원(임원, 대의원), 지자체(담당자) ○(개최시기) 4~5월 |
| 2차 분과 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목적) 수렴된 현장 의견을 세분화하여 분과별 토론, 현장의견의 타당성 검토, 분과별로 농어업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우선 건의사항 확정 ○(참석대상) 농어업회의소(임원, 대의원, 사무국), 지자체(소장, 과장, 계장) ○(개최시기) 9월 이내 |
| 농어업 정책 협의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목적) 분과별 건의 및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시책 반영 타당성 검토, 현장 농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농정추진 ○(참석대상) 농어업회의소(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지자체(소장, 과장, 계장) ○(개최시기) 9월 이내 |
| 정책건의/ 결과공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건의) 농업회의소와 지자체의 농어업정책협의회 결과를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 건의, 지자체는 건의사항별 처리 결과를 추후 통보 ○(소식지발간) 현장 농어업인의 개별 건의사항에 대해 최종 처리 결과를 소식지를 통해 회원들과 공유 |

〈표 3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결과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
| 의견수렴/및 정책협의회 (회/년) | 분과위원회 | 6 | 12 | 12 | 12 | 7 | 7 | 56 |
| | 읍면순회 간담회 | - | 16 | 8 | 8 | 8 | 8 | 48 |
| | 서면 의견수렴 | - | - | 2 | 2 | 1 | 1 | 6 |
| | 농어업정책협의회 | 1 | 1 | 1 | 1 | 1 | 1 | 6 |
| 제도개선/ 정책제안 (건/년) | 의견수렴 합계 | 28 | 69 | 120 | 65 | 85 | 92 | 459 |
| | 제안건수 | 18 | 23 | 43 | 22 | 43 | 51 | 200 |
| | 반영건수 | 13 | 8 | 10 | 5 | 18 | 14 | 68 |

자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나. 농정참여 활성화 과제

(1) 현장농업인의 농정참여 시스템 확산

- 농업회의소의 설립목적과 존재이유는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음.
- 현재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는 농정참여 시스템이 농업회의소의 기본업무로 정착되고 지역실정에 맞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의소가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함.

(2) 관련법에 농업회의소 근거 마련

- 현장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계(민간)이 자발적으로 농업회의소를 구성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이 농정 파트너로 농업회의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임의적인 판단과 농업회의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느슨한 형태의 파트너십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법제화 이후 농업회의소가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정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농업회의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농정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 보장

-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업회의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협치기구(위원회 혹은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농업인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
- 현재 시범지역 농업회의소의 회장과 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

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

-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위원 추천권을 농업회의소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회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권의 일부를 농업회의소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 농업계 내부에서 전문성과 참여도를 고려하여 누구를 위원으로 보낼지 자율적인 조정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농업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가 집중되어 있는데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촌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의 권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34> 지자체 농정위원회 참여사례(평창군)

| 회의소 직책 | 위원회 명칭 | 위원회 직책 |
|---------------|----------------------|------------|
| 회장 |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 농업정책분과 위원장 |
| 이사 (11명) |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 농업정책분과위원 |
| 이사 |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 축산분과위원장 |
| 이사 (3명) |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 축산분과위원 |
| 회장/이사 (4명) |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 위원 |
| 회장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 위원 |
| 회장 | 귀농귀촌지원위원회 | 위원 |
| 회장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 |

자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4)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 의견 반영

-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법정 및 비법정 계획수립 과정에 농업계와 농업회의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일부 농업인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실천력을 높이고, 중간 과정에 대한 점검, 추진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표 35> 농림 분야 법정 및 비법정 계획수립 현황

| 구분 | 계 획 | 법적 근거 |
|-----------|---------------------------------------|---|
| 법정 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
| |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
| | 시·군·구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
| | 농지이용계획 | 농지법 제14조 |
| 구분 | 계 획 | 관련 예산사업 |
| 비법정 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 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기초인프라 정비 등 |
| | 식량산업 발전 종합계획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들녘 경영체 육성 등 |
| | 원예산업 발전계획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
| | 품목별·시군별 과수산업 발전계획 | 과수시설 현대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 |

자료) 농식품부(2018)

2. 기존 조직과 갈등해소 방안

가. 농업회의소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

(1)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단체인가?

- 농업회의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 동안의 시범 사업을 통해 일부는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공감대가 부족함.
- 대표적인 것이 ① 현재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단체협의회⁵⁵⁾가 있는데 왜 농업회의소를 만드나? ② 농업인단체와 옥상옥 구조 아닌가? ③ 농업인단체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임.
-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는 위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임.
- 첫째, 농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임. 현재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일부 단체만 참여하고 농협 조직은 빠져 있어 대표성이 미흡함. 농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업인의회’ 성격임.
- 둘째, 농업회의소는 임의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과 제도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법적 조직’이자 ‘공적 자문기구’임. 농업인단체는 임의조직이고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 대부분임. 정부·지자체와 파트너십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의무사항이 아님.
- 셋째, 농업회의소는 농업계 권익대변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농업인단체는 권익대변 기능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공적 사업기능은 없음.
- 넷째, 농업인단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다양한 직능·품목 단체와 농협의 농정활동 참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상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농업회의소를 농업인단체의 ‘옥상옥’으로 보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농업회의소 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임.

55)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기존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병행하여 운영하는 지역과 처음부터 농업회의소로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는 지역이 나뉘지는데 농업인단체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2) 농업회의소는 관변단체인가?⁵⁶⁾

- 농업회의소가 정부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관변단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농업회의소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동일한 성격의 조직임. 어느 누구도 상공회의소가 법의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지만 관변단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판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상공회의소법을 준용하여 만들어졌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외 농업회의소도 마찬가지임.
- 농업회의소의 회원과 의사결정구조에 비(非)농업계는 배제되어 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고 있음. 지자체가 회의 체계뿐만 아니라 임원과 대의원의 인사에 개입한 전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 과도한 지자체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의 회비 납부를 통해 최소한의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의 지자체 경비 지원 조항도 조건 없는 지원이 아

56) 정부의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농업회의소는 여야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협치농정 실현과 농업인주권의 문제임

나라 농업회의소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변단체라는 인식은 과도한 우려임.

- 관련단체에 대한 우려는 모든 민간단체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의사결정구조가 다르고 행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의회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데 농업인의 대의기구가 필요한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는 농업회의소의 ‘대의조직’ 개념 때문에 생기는 오해임. 여기서 ‘대의조직’이란 농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문·건의하는 역할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농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조례 제정, 농업현안 토론회, 정책과제 발굴, 참여농정예산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4) 농업인에게 주는 실익은 무엇인가?

- 농업인이 개인 회비를 납부하는데 농업회의소 회원이 되면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음.
- 현재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회원에 가입했다고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은 전혀 없음.
-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농업과 전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역할임.
- 다만, 개인회원 농업인에게는 소식지 발간, 농정 홍보자료 제공, 교육 및 토론회 참여, 기상정보 제공,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활성화되면, 농

업인과 농촌주민에 대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 기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5) 농업회의소와 농특위는 어떻게 다른가?57)

-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업회의소와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음.
- 농특위는 한시적 위원회이고 농업회의소는 법적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름. 농특위는 과거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바 있음.
- 농특위는 범부처 성격의 농정개혁 의제 중심이고 실행기능이 없지만,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의견수렴 및 농정 자문·자문과 함께 연구조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등 사업기능을 수행함.
- 농특위는 범부처+농업인단체+소비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만,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농업인단체+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비농업계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
- 농특위는 지역조직이 없고 국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농업회의소는 전국-시도-시군 조직으로 구성하고, 회원회비+위탁사업비+지자체보조를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36> 농업회의소와 농특위 비교

| 구 분 | 농특위 | 농업회의소 |
|-------|----------------------------|---|
| 성 격 | ○(한시적*)위원회 | ○법적 상설기구 |
| 역 할 | ○농정개혁 의제 중심 ※실행기능 없음 | ○농어업인의 농정 건의·자문 ○연구조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등 |
| 구 성 | ○범부처+농업인단체+소비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 ○농어업인+농어업인단체+협동조합 ※비농업계 의사결정 참여 못함 |
| 대 표 성 | ○없음 | ○농어업인의 대표·대의 조직 |
| 지역조직 | ○없음 | ○전국-시도-시군 조직 |
| 재정운영 | ○국가 예산 | ○회원회비+위탁사업비+지자체보조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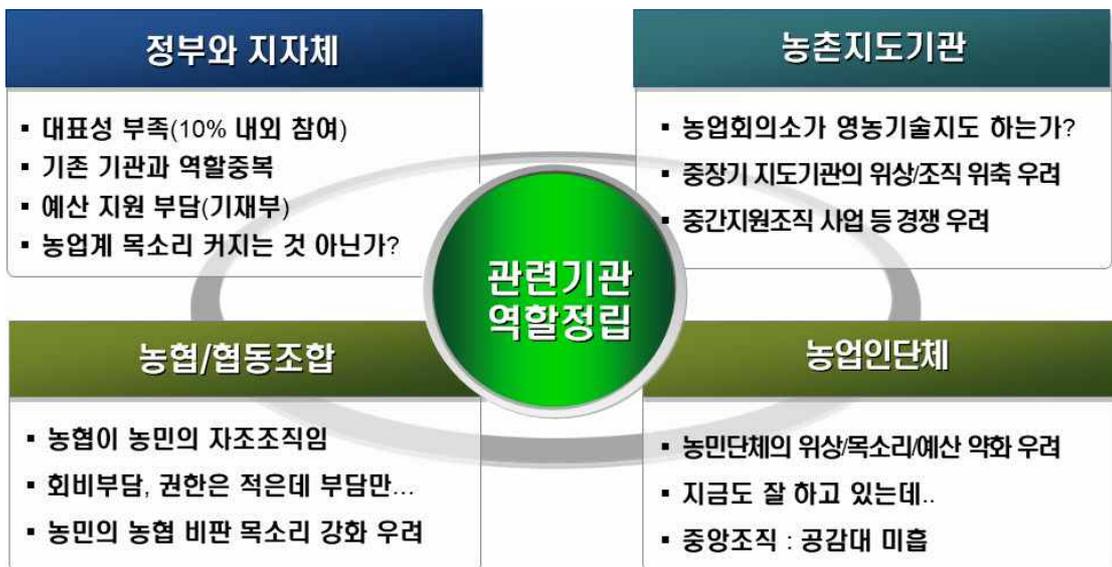
(*) 농특위는 과거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음

57) 농정심의회와 농업회의소를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정심의회는 법률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농업회의소와 별개이며, 농업회의소가 농정심의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님.

나. 기존 기관·단체들의 오해와 우려

(1)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이 미흡하다

-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존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기존 기관·단체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농업회의소 모델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존 기관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전국 단위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경우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앞의 회원제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농업회의소는 ‘의무가입제’가 아닌 ‘선택가입제(임의가입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농가 고령화와 개인회비 납부 조건을 감안할 때 회원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보완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되고 여건이 성숙한 단계에서 의무가입제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업회의소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가?

- 농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업회의소의 법률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 첫째, 농업회의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 아니라 공법(公法)에 근거한 ‘특수법인⁵⁸⁾’임.
- 둘째,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원은 공적기구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함. 농업회의소는 공공기관 혹은 준(準) 행정기관 성격의 조직임.
 - 공공기관 혹은 각종 출연기관 운영비는 세금으로 상당부분을 충당하지 민간이 전부를 부담하지 않음. 농업회의소는 공적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영리사업과 수익 사업을 하지 않음.
- 셋째, 해외 농업회의소는 공법에 근거한 농업회의소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사업비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는 비건축용 초지에 대한 토지세가 주수입원(50%내외)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25%내외), 사업 및 기타수입(25%내외)으로 구성.
 - 일본도 대부분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 보조에 의존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비가 없음.
-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농업회의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수준은 농업회의소의 공익적 사업기능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농업회의소가 농지관리 업무를 하는가?

- 농지 관리 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일본처럼 농지관리 업무를 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농지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58) 상공회의소와 농업협동조합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이며 비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농업회의소도 동일한 법적 위상을 가짐.

- 이는 일본의 농업회의소가 순수 민간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즉 농업회의소가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다만,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농지 관련 인허가 권한 등을 농업회의소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농지의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심의 등 일부 기능을 농업회의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함.

(4) 농촌지도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 농촌지도기관들은 농업회의소의 주요 사업범위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과 중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이 위축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경쟁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농업회의소는 농촌지도기관이 수행하는 영농기술 지도 업무를 하지 않음. 전문성과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임.
-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협동조합, 민간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연구는 대학과 국가 R&D 기관, 기술보급은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
- 반면 우리는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이 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예컨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있는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영농기술지도 업무를 하지 않음.

(5) 농협의 사업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농협 조직은 농업회의소가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농협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인데 농업회의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농업인의 농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농업회의소는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하지 않음.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사업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농정자문 기능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도 농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음.
- 농업회의소는 경제사업 혹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적기관으로 공익적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 준행정기관인 농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음.
-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권익 대변기구인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사업조직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임.

다. 농업회의소의 위상정립과 대표성 확보

- 농업회의소가 신생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관성이 작용하는 상황임.
- 우리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과 산하기관, 관련기관들을 통해 제공해 왔고, 농업인단체도 오랜 역사를 통해 운영체계를 확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함. 과거에 비해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과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농업회의소 고유의 특화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공적 기구로서 원칙을 유지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개발해야 함.
- 셋째, 농업회의소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표성 확보가 필요함.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농정심의회 등 각종 심의회·위원회와 관계를 정립해야 함.

- 넷째,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개별 단체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농업계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농업계의 법적 대표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다섯째,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제도와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치적 중립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농업회의소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해외 농업회의소도 법률의 상당 부분을 엄격한 선거관리 제도 운영에 할애하고 있음.
- 여섯째, 전국 조합장 선거와 농업회의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대표 선출권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공직선거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1. 시범사업 한계와 접근방향

가. 시범사업의 제도적 한계

- 현재 농업회의소는 상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가 있어도 사무위탁과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①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 보조 재원으로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④ 보조금 지출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에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교육비 등 사업비에 국한되고, 지자체 사무의 위탁사업과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나. 시군 농업회의소의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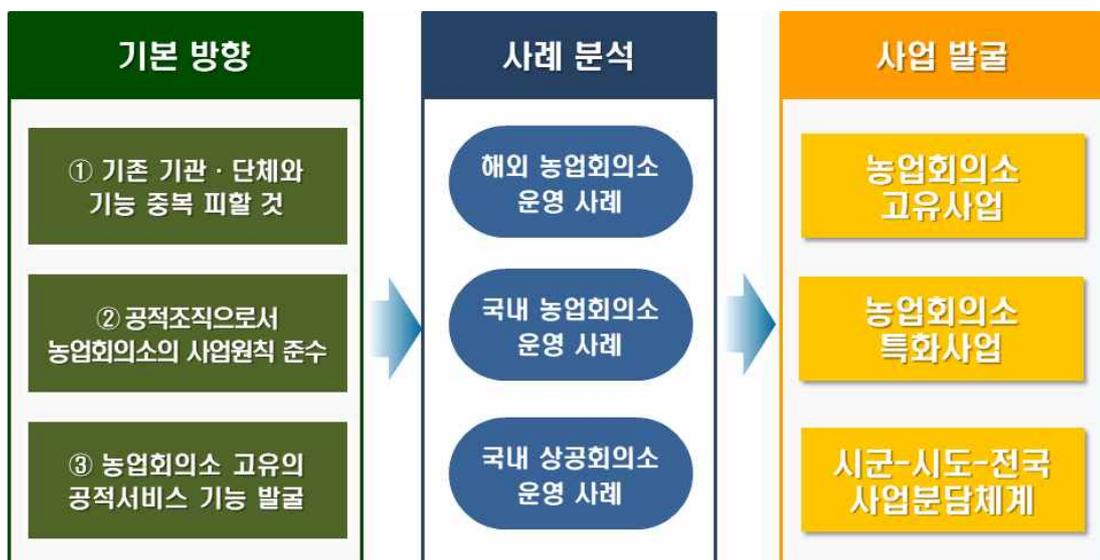
- 현재 운영 중인 시군 농업회의소의 주요사업은 ① 농정자문 활동 ② 홍보 사업 ③ 교육사업 ④ 특색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직과 재정 규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임.
- 농정자문 활동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대의기구로서 활동으로 읍면순회 간담회, 분과위원회 운영, 정책협의회 운영, 지역농정 현안 토론회 등이 포함됨.
- 홍보사업은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활동 홍보를 위한 농정 홍보자료 제작 배포, 농업회의소 소식지 발간, 리플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교육사업은 회원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색사업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혹은 지역축제 개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시민농촌유치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 37〉 기초 시군 농업회의소 주요사업

| 구분 | 주요내용 |
|-----------|---|
| ① 농정자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순회 간담회 및 농업인 의견수렴 ○ 농업인단체, 농수축산림조합 등 간담회 ○ 분과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 ○ 지역농정 현안 토론회 운영 |
| ② 홍보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 홍보자료 발간 ○ 농업회의소 소식지 발간 ○ 홍보물 제작 배포 ○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③ 교육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 ○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 |
| ④ 특색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날 등 공동 개최 ○ 도시민농촌유치, 농산업인력지원, 마을만들기 등 운영 ○ 각종 공모사업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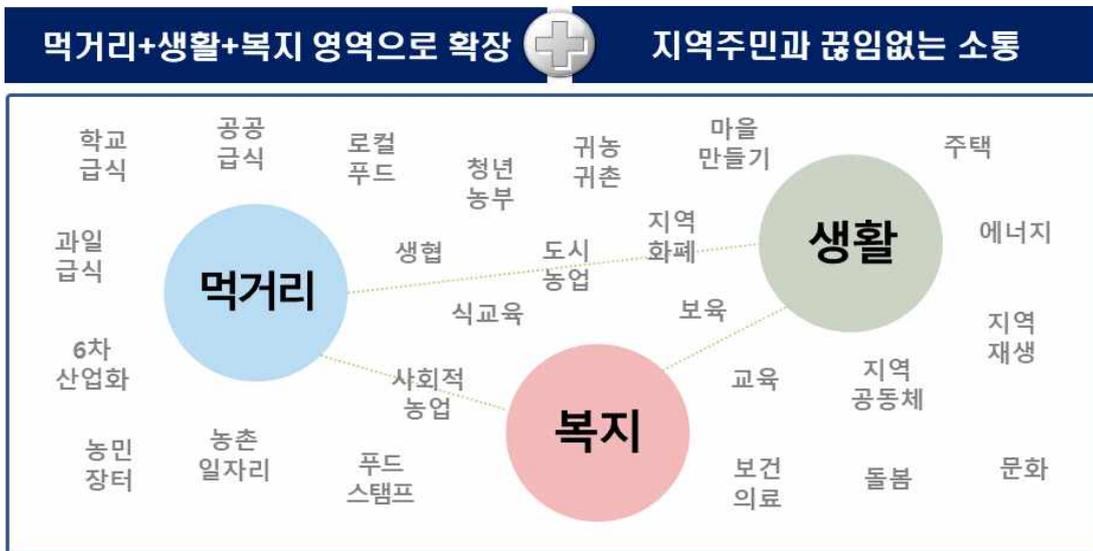
다. 신규 특화사업 개발방향

- 현재 시군 농업회의소는 농정 자문기구로서 고유 업무는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화사업 발굴은 미흡한 상황임.
- 농업회의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세 가지 원칙에서 접근이 필요함.
- 첫째, 기존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들과 사업기능 중복을 피해야 함. 농업회의소는 신생 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련 기관의 기존 사업영역과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면서 고유사업을 발굴해야 함.
- 둘째, 국가 법률에 근거한 공적조직의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농협 등이 수행하는 경제사업과 수익사업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의소는 그 성격상 행정이 직접 수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민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업·농촌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영역 중심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육성, 여성농업인육성, 6차산업화, 농산업인력지원,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먹거리분야, 농촌지역재생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라. 지역농정의 범위와 영역 확장

- 그 동안 지역농정은 전통적인 농업·농촌 영역에 머물러 있었음. 농업회의소의 특화사업은 새롭게 확장하는 영역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농정의 범위가 먹거리-복지-생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농촌 정책과 삶의 질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음. 귀농귀촌과 청년 후계 세대의 유입,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보건·의료·육아·교육·돌봄·문화 영역에서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농촌 지역재생과 일자리, 지역주민의 생활영역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택, 에너지, 지역화폐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넷째,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농업회의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장점을 살려 농업-먹거리, 농촌-도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상공회의소 주요 사업현황⁵⁹⁾

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

- 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권익대변 뿐만 아니라 국제 통상협력 증진과 회원기업 경영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경제현안, 노동환경변화 대응, 규제개선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 구 분 | 주요 활동 |
|------------------|--|
| ① 경제 현안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대 대선, 3대 틀 9대 과제 제안 ○ 중앙부처 및 여야 지도부에 대한 경제현안에 대한 제언 ○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10개 보고서 발표) |
| ②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 ○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종합 건의 ○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 ○ 환경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기업활력법 성과 확산 및 개선과제 도출 ○ 신산업 창출 지원(산업통산자원부 연계) ○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제시 ○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 연구 |
| ③ 노동환경 변화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현안 입법 촉구 ○ 새정부 일자리 정책 파트너 역할(일자리위원회 참여) ○ 고용,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 노동이슈 정보 제공(각종 설명회) |
| ④ 규제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활동 ○ 신산업 규제애로 발굴 및 대응 ○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발표 ○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수여식 개최 |
| ⑤ 기업문화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문화 실태 진단 ○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시행 ○ 기업 호감지수 조사 ○ 청탁금지법 기업 대응 지원 ○ 일·가정 양립 정부 협의체 참여 |
| ⑥ 내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Sale FESTA 개최 |
| ⑦ 유통물류산업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유통산업주간 개최(전망 세미나) ○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 ○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 ○ 유통 물류 시장 동향 정보 제공 ○ 유통 물류 산업 발전방안 조사 연구 |

59) 대한상공회의소, '2017년 사업보고서' 내용을 요약함.

나. 경제계 대표 활동

○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계 대표 조직으로 활동

| 구 분 | 주요 활동 |
|---------------------|--|
| ① 경제계 신년 인사회 | ○ 2017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국회, 정부 주요인사 참석) |
| ② 상공의날 기념식 | ○ 제44회 상공의 날 기념식(금탑산업훈장 등 시상) |
| ③ 제주포럼 | ○ 제42회 제주포럼(기업인 등 600명 참석) |
| ④ 정부·국회와 소통 및 정책간담회 | ○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 ○ 국무총리·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4회) ○ CEO 조찬 간담회(4회) ○ 정부 회의체 참여(4회) ○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5회) |
| ⑤ 기업·기업인 포상 | ○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 4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성과보고대회 ○ 제22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 제2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
| ⑥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 ○ 제4회 대한상의 사진 공모전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지원 ○ 기업가정신 컨퍼런스 ○ 임직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



다. 국제통상협력 증진

○ 국제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외활동 전개

| 구 분 | 주요 활동 |
|------------------------|---|
| ① 경제사절단 파견·접견 | ○ 경제사절단 파견 및 해외 주요인사 초청 행사(10회) |
| ②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 | ○ 제11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 국제상업회의소 및 세계상의연맹 활동 ○ 양국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운영(51개국) ○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
| ③ 해외진출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 | ○ 세미나/설명회(48회 개최) ○ 글로벌 전문기고나 및 해외투자청 초청 행사(23회) ○ 해외 사무소 활동(북경사무소, 베트남사무소) |
| ④ 무역인증 및 FTA 활용 지원 | ○ 무역 인증·발급 서비스(69만건) ○ FTA 활용 지원 ○ FTA 원산지증명 전문인력 양성(371명 교육) ○ 원산지 증명 관련 국제협력 |



라. 회원기업 경영지원

- 중소기업인 경영지원과 국제상품코드 발급, 산업인력 교육훈련, 각종 자격평가 등 업무 담당

| 구 분 | 주요 활동 |
|----------------|---|
| ① 경제·경영정보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의 브리프&인포 서비스 ○ 올댓비즈 사이트 운영(정부지원제도 포털사이트) ○ 코참넷 운영(대한상의 정보제공 사이트) ○ 코참경영상담(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 코참경영 프리미엄 상담 서비스(기업별 매칭 상담) ○ 계약서 무료 검토 서비스 ○ 올댓비즈 스쿨 : 정부지원제도 교육 ○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 ○ 경영세미나 개최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실무자 교육 연수 ○ 품질혁신 교육 |
| 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 산업혁신운동 |
| ③ 중소기업인 경영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영능력 제고 및 애로 해소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 로고제작 지원 및 지역사회와 교류 소통 지원 |
| ④ 국제표준 바코드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 상품코드 보급 ○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 보급 ○ 표준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 PDS 유통시장 분석서비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서비스 |
| ⑤ 산업인력 양성·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 기업의 인력채용 지원 ○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지원 |
| ⑥ 자격평가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평가 종목, 수험인원 ○ 컴퓨터 사고능력 자격 신설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보급 |
| ⑦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탁 운영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탁 운영 |
| ⑧ 농업계와 상생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업계의 경쟁력강화 지원 ○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 국제표준 상품코드 보급 실적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평가 현황

직업교육
훈련현황

▶ 직업교육 훈련실적 (단위: 명)

| 구분 | 훈련실적 | |
|----------------|----------------|----------------|
| | 입학 | 수료 |
| 양성 훈련 | 1년 미만 과정 | 896 |
| | 1년 과정 | 2,790 |
| | 소계 | 3,686 |
| 능력 개발 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6,258 |
| | 일학습병행훈련 | 25,809 |
| | 재직자훈련 등 | 64,503 |
| 소계 | 96,570 | |
| 합 계 | 108,921 | 100,2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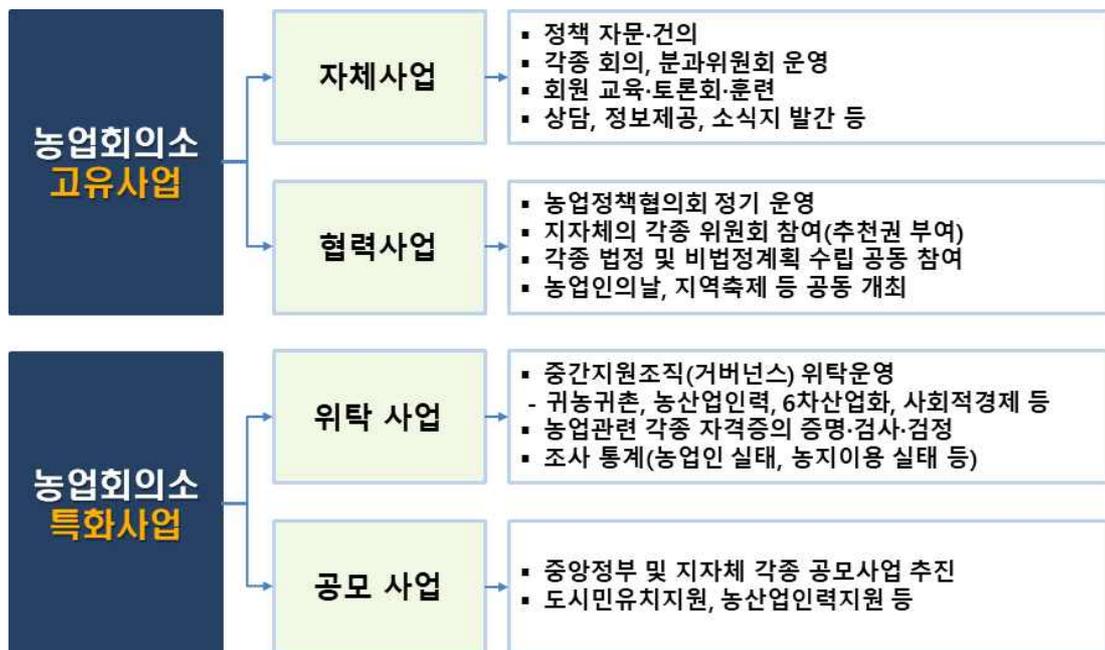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종목 현황

| 구분 | 자격명 | |
|--------|---|--|
| 국가기술자격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전산회계운용사 1, 2, 3급 한글속기 1, 2, 3급 비서 1, 2, 3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
| | 국가자격 | 유통관리사 1, 2, 3급 |
| | 공인민간자격 | 무역영어 1, 2, 3급 IT PLUS Level 1~5 외국어능력 FLEX 듣기/읽기 한자 1, 2, 3급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
| 등록민간자격 | 외국어능력 FLEX 쓰기, 말하기 한자 4~9급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 |

3. 농업회의소 특화사업 발굴

가. 사업 영역과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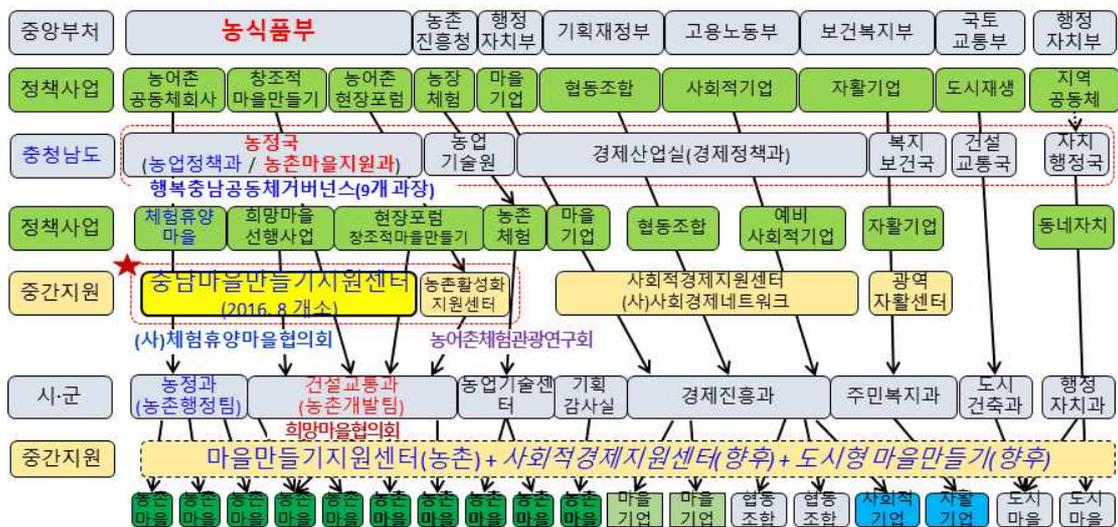
- 농업회의소의 사업 발굴은 ① 고유사업과 ② 특화사업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유사업은 ① 자체사업과 ② 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자체사업’에는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 각종 회의와 분과위원회 운영, 회원 교육·토론회·훈련, 각종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 포함됨.
 - ‘협력사업’에는 정책협의회의 정기 운영,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대한 농업회의소 추천권 부여, 각종 법정 및 비법정계획 수립시 농업회의소 공동 참여 등이 포함됨.
- 둘째, 농업회의소 특화사업은 ① 위탁사업 ② 공모사업으로 구분하고, 신규 사업 개발이 주로 필요한 영역임.
 - 농업회의소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회의소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나.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 농업회의소의 특화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임.
- 최근에 중간지원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직 간의 연계효과와 민간의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임. 중앙 부처와 예산에 따라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행정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0> 충남 기초 중간지원센터 정책연결망 추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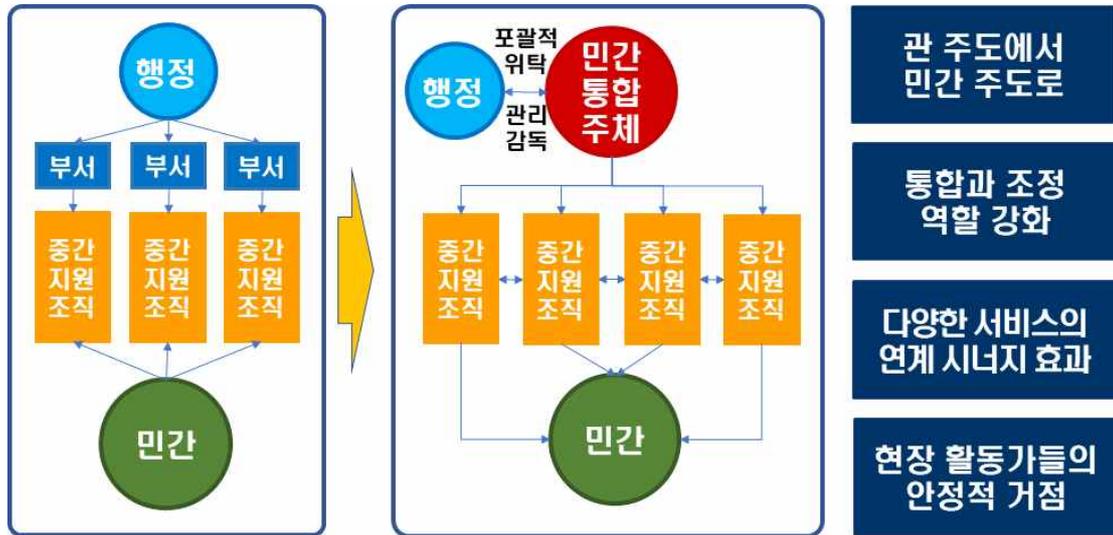
자료) 구자인, 김기태(2017) 재인용

-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의 포괄적 업무 위탁을 통해 인사권, 예산권, 사업내용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은 기존 기관·단체와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등 다양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 현재 시군 농업회의소 상근인력 1~2명을 가지고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해 조직 규모와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장 농업인과 접점을 늘리고 농업인의 요구가 서비스로 환

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일정한 임계점 이상의 역량이 축적되면 그때부터 조직운영에 탄력이 붙고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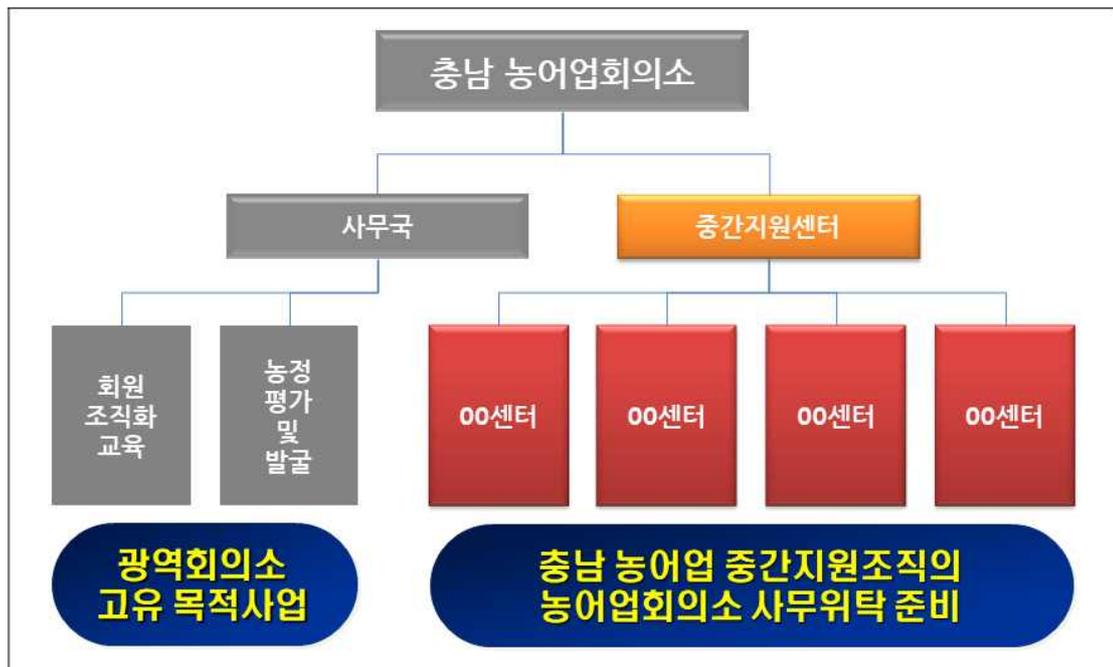
- 충청남도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실현되는 경우 농업·농촌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을 농업회의소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21>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추진



자료) 정기수(2017)

<그림 22>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운영 구상



자료) 충청남도(2017)

다. 농업인과 농지 실태조사

- 농업회의소가 농업의 근간인 농지와 인력의 실태조사를 통한 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함.
- 첫째, 농업회의소가 관내 농업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농정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현재 통계청의 농업 통계자료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유럽의 농업회의소처럼 농업인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농정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완주군은 지역농업통계시스템(RASS, Resion Agriculture Statistics System) 구축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농가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둘째, 농업회의소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지법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그림 23> 완주군 관내 농업인 전수 실태조사 사례



자료) 완주군청(2017년)

라. 지역단위 청년농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의 확보와 육성이 핵심 과제임.
- 정부가 2018년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을 도입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가 미흡하고⁶⁰⁾ 취농 인력 중심이기 때문에 농촌형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첫째, 청년 창업농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초기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담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회의소가 그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청년농을 포함하여 귀농귀촌 인력에 대한 지역의 통합지원 기능을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음.
 - 현재 농업회의소 설립 시군 숫자가 부족한 만큼 3~4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지원하고, 향후 농업회의소 지역 확대에 따라 시군별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취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농촌에는 농업인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회의소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농촌형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홍성군은 청년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성장 단계별로 정착과 독립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완주군은 청년완주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주거, 네트워크, 청년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60) 현재 청년 창업농의 선정과 관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농정원은 지역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보다는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4> 홍성군의 청년농 육성 정책 체계도



자료) 홍성군청

<그림 25> 완주군 청년완주 점프 프로젝트



자료) 완주군청

마. 농림수산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관리

-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증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은 총 525개 종목이며, 이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77개 자격의 검증을 담당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15개 자격의 검증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영화진흥위원회(2개), 한국광해관리공단(7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3개), 한국인터넷진흥원(2개), 한국콘텐츠진흥원(3개) 등이 검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38〉 국가기술자격 타기관 시행종목 현황

| 기관명 |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 | |
|--------------------------|-------------|--------------|--------------|
| 대한상공회의소 (15개) | · 비서1급 | · 비서2급 | · 비서3급 |
| | · 워드프로세스 | · 전산회계운용사1급 | · 전산회계운용사2급 |
| | · 전산회계운용사3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
| | · 전자상거래운용사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 컴퓨터활용능력2급 |
| | · 한글속기1급 | · 한글속기2급 | · 한글속기3급 |
| 영화진흥위원회(2개) | · 영사기능사 | · 영사산업기사 | |
| 한국광해관리공단 (7개) | · 광산보안기능사 | · 광산보안기사 | · 광산보안산업기사 |
| | · 광해방지기사 | · 광해방지기술사 | · 시추기능사 |
| | · 자원관리기술사 | | |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6개) | · 무선설비기능사 | · 무선설비기사 | · 무선설비산업기사 |
| | · 방송통신기능사 | · 방송통신기사 | · 방송통신산업기사 |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 · 정보통신기사 | · 정보통신기술사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 · 통신기기기능사 | · 통신선로기능사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 · 통신설비기능장 |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3개) | · 방사선관리기술사 | · 원자력기사 | · 원자력발전기술사 |
| 한국인터넷진흥원(2개) | · 정보보완기사 | · 정보보안산업기사 | |
| 한국콘텐츠진흥원(3개) | · 게임그래픽전문가 | · 게임기획전문가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자료) Q-net 홈페이지

- 농림수산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총 48개 종목이며,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국가기술자격은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된 분야로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농림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9> 농림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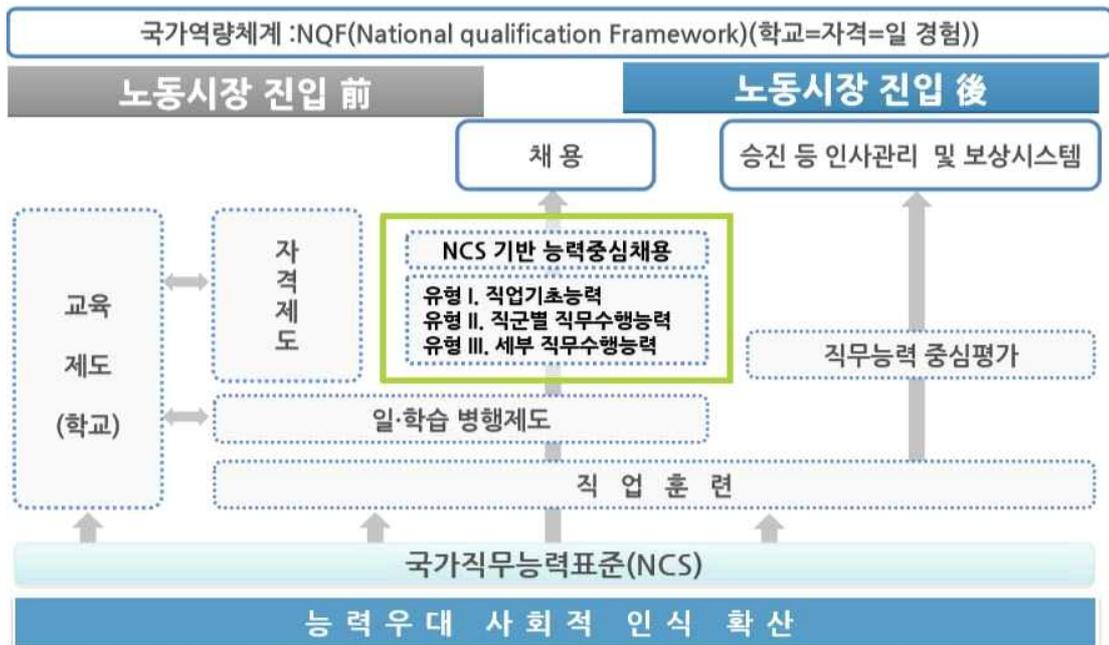
| 분야 |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 | |
|-------------|--------------|----------------|------------|
| 농업 (13개) | · 시설원계기사 | · 시설원예기술사 | · 원계기능사 |
| | · 유기농업기능사 | · 유기농업기사 | · 유기농업산업기사 |
| | · 종자기능사 | · 종자기사 | · 종가기술사 |
| | · 종자산업기사 | · 화훼장식기능사 | · 화훼장식기사 |
| | · 농화학기술사 | | |
| 축산 (4개) | · 축산기능사 | · 축산기사 | · 축산산업기사 |
| | · 식육처리기능사 | | |
| 조경 (4개) | · 조경기능사 | · 조경기사 | · 조경기술사 |
| | · 조경산업기사 | | |
| 임업 (11개) | · 산림기능사 | · 산림기사 | · 산림기술사 |
| | · 산림산업기사 | · 식물보호산업기사 | · 버섯종균기능사 |
| | · 임산가공기능사 | · 임산가공기사 | · 임산가공산업기사 |
| | · 임업종묘기능사 | · 임업종묘기사 | |
| 어업 (7개) | · 수산양식기능사 | · 수산양식기사 | · 수산양식기술사 |
| | · 수산양식산업기사 | · 어로기술사 | · 어로산업기사 |
| | · 어업생산관리기사 | | |
| 환경 (5개) | · 생물분류기사(동물) | · 생물분류기사(식물) | · 토양환경기사 |
| | · 토양환경기술사 |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
| 농기계 (4개) | · 농림기계정비기능사 | · 농업기계기사 | · 농업기계산업기사 |
| | · 농기계운전기능사 | | |

자료) Q-net 홈페이지

바. 농림분야 인적자원관리위원회 운영

-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란 관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NCS(948개), NCS기반자격(615종목), NCS학습모듈(847개) 등을 개발하고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자격·학위·교육·훈련·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농림어업 44개 NCS 중에 31개 NCS와 37개 NCS자격이 농림축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일학습병행제 운영은 타 분야에 비해 절대 부족함.
-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정하고,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수요 파악조사, NCS 개발과 확산, NCS기반 자격 개발과 보완,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하여 17개 분야에 지정되어 있는데 농업분야는 빠져 있는 상황임.
- 농업 후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일학습병행제, 농림수산분야 자격 연계 측면에서 향후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로 고려할 수 있음.

<그림 26> NCS 개념과 필요성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표 4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현황

| 분야 | 위탁기관 | 참여 기관·기업 | 설립연도 |
|------------------|---------------------|---|-------|
| 정보기술 사업관리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 ○(기관) 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11개 ○(기업) LG CNS 등 10개 ○(노동) 한국노총IT사무서비스노련 | 2015년 |
| 경영, 회계 사무 | 대한 상공회의소 | ○(기관) 한국표준협회 등 7개 ○(기업) 현대해상 등 15개 ○(노동) 한국노총공공연맹 등 2개 | 2015년 |
| 금융 보험산업 | 한국금융 투자협회 | ○(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기업) 우리은행 등 7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련 | 2015년 |
| 상담 | 전국고용 서비스협회 |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29개 ○(기업) 남부이에스 등 17개 ○(노동) 한국노총 직업상담노동조합 등 4개 | 2016년 |
| 디자인, 문화 콘텐츠산업 | 한국디자인 진흥원 |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0개 ○(기업) 아이나무 등 24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력 | 2015년 |
| 관광, 레저 | 한국호텔전문 경영인협회 |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등 7개 ○(기업) 코엑스 등 7개 ○(노동)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 2016년 |
| 음식 서비스 | 한국외식업 중앙회 | ○(기관)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등 11개 ○(기업) CJ푸드빌 등 14개 ○(노동)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 2016년 |
| 건설 | 건설근로자 공제회 | ○(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기업) 이화공업 등 9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련 등 2개 | 2016년 |
| 조선, 해양산업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 ○(기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등 11개 ○(기업) 현대중공업 등 10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 2015년 |
| 기계산업 |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 ○(기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등 5개 ○(기업) 현대중공업 등 13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력 | 2015년 |
| 뿌리산업 | 한국금형 공업협동조합 | ○(기관)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18개 ○(기업) 건우정공 등 22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 2015년 |
| 재료산업 | 한국철강협회 | ○(기관) 한국세라믹연합회 등 10개 ○(기업) 포스코 등 16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 2015년 |
| 화학산업 |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 | ○(기관)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5개 ○(기업) LG화학 등 18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등 3개 | 2015년 |
| 섬유제조 패션산업 |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 ○(기관) 한국패션협회 등 5개 ○(기업) 경방 등 11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련 | 2015년 |
| 전기, 에너지 자원산업 | 한국전기 공사협회 | ○(기관) 대한전기협회 등 17개 ○(기업) 대일전기 등 7개 ○(노동) 한국농촌 전국공공산업노력 등 2개 | 2015년 |
| 전자산업 |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 | ○(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5개 ○(기업) 하이브시스템 등 10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 2015년 |
| 방송 통신기술산업 | 한국정보방송통신 대연합 |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3개 ○(기업) SKT 등 7개 ○(노동) 한국노총 전국사무서비스노련 등 2개 | 2015년 |

자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제4절 농업회의소의 역량 제고

1. 시군 농업회의소 사업구조

가. 고유사업 범위와 연차별 추진전략

- 현재 농업회의소의 고유 업무는 ① 농정 자문 활동 ② 공감대 확산 및 홍보 활동 ③ 조직 역량강화 사업 ④ 대외 협력 활동 ⑤ 회의 및 사업 보고회 운영 ⑥ 사무국 운영 등이며, 지역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 설립 초기 3년까지는 고유사업에 집중하고, 조직 및 사업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표 41> 신규 농업회의소 연차별 추진전략(A시군 사례)

| | 제1단계 설립기 (설립 1년차) | 제2단계 안정기 (2~3년차) | 제3단계 확산기 (4년차 이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창립 ○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 ○ 농업회의소 조례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기구 위상 정립 ○ 사업 및 운영 안정화 ○ 읍면지회 창립 추진 ○ 참여회원 지속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 활동·사업 범위 확대 ○ 재정자립 기반 구축 ○ 참여회원 지속 확대 |
| 구 분 | 제 1 단 계 (설립 1년차) | 제 2 단 계 (2~3년차) | 제 3 단 계 (4년차 이후) |
| 농정자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설명회 : 15회 ○ 분과위원회 : 8회 ○ 정책협의회 : 1회 ○ 농정토론회 : 1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설명회 : 15회 ○ 분과위원회 : 10회 ○ 정책협의회 : 1회 ○ 농정토론회 : 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설명회 : 15회 ○ 분과위원회 : 12회 ○ 정책협의회 : 1회 ○ 농정토론회 : 3회 |
| 홍보 및 대외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홍보자료 : 1회 ○ 소식지 : 1회 ○ 홍보물 : 1식 ○ 간담회 : 6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홍보자료 : 1회 ○ 소식지 : 1회 ○ 홍보물 : 1식 ○ 간담회 : 8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홍보자료 : 1회 ○ 소식지 : 2회 ○ 홍보물 : 2식 ○ 간담회 : 8회 |
| 역량강화 교육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2회 ○ 대의원 : 1회 ○ 사무국 : 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2회 ○ 대의원 : 2회 ○ 사무국 : 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2회 ○ 대의원 : 2회 ○ 사무국 : 2회 |

나. 농정 자문 활동

농업회의소의 설립 목적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지자체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자문 건의 역할 수행

(1) 읍면순회 설명회 개최

- (추진목적) ① 농업인의 현장 의견 수렴 ② 농업회의소 사업보고 및 회원가입 ③ 지자체 주요 농정계획 보고 등
- (참석대상) 모든 농업인
- (개최시기) 매년 1월~3월 (읍면별로 1회씩 개최)

(2) 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목적) ① 현장 농업인 의견수렴 결과 토론 ② 분과별 토론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③ 지자체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④ 주요 농정현안 공유 등
- (참석대상) ① 제1차 분과위원회(7개 분과별 개최, 지자체 담당자 참석 가능) ② 제2차 분과위원회(농업회의소 임원(분과위원장 포함), 지자체 담당부서)
- (개최시기) ① 제1차 분과위원회(매년 4월~5월) ② 2차 분과위원회(매년 9월 이내)

(3) 농업 정책협의회 개최

- (추진목적) 농업회의소 분과별 건의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시책 반영 타당성 검토
- (참석대상) 농업회의소(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지자체(국장, 부서별 담당 과장 등)
- (개최시기) 매년 9월 이내

(4) 지역농업 발전 토론회 개최

- (추진목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참석대상) 관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지자체 등
- (개최시기) 매년 1~2회 개최

다. 공감대 확산 및 홍보 활동

농업회의소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공감대 확산과 회원 활동 참여 강화

(1) 농정 홍보자료 발간

- (추진목적) 지자체의 매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취합하여 농정 홍보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 도모
- (발간계획) 농업회의소 회원 및 유관기관 배부
- (발간시기)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준비하여 차기년도 1월에 발간

(2) 농업회의소 소식지 발간

- (추진목적) 농업회의소 주요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발간
- (발간계획) 농업회의소 회원 및 유관기관 배부
- (발간시기) 매년 1회 발간

(3) 농업회의소 홍보물 제작

- (추진목적)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회원 참여 증대를 위해 홍보물 제작
- (발간계획) 홍보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발간시기) 매년 발간 및 활용

(4)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개발 운영

- (추진목적) 농업회의소의 주요 활동 홍보, 회원 및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 (개발운영) 홈페이지 개발 및 일상적인 소식 공유

라. 조직 역량강화 사업

농업회의소 임원 및 대의원, 사무국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임원 역량강화 교육

- (추진목적) 농업회의소 임원의 역량강화와 선진사례 벤치마킹
- (참석대상) 임원 및 사무국 등 30명 내외
- (개최시기) 매년 1~2회

(2)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

- (추진목적) 대의원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
- (참석대상) 임원 및 대의원, 사무국 등
- (개최시기) 매년 1회 내외

(3)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 (추진목적) 사무국 지원의 역량강화와 전국 농업회의소와 연대 강화
- (참석대상) 사무국장, 사무장 2명
- (개최시기) 매년 상·하반기 워크숍 참석(2회)

마. 대외 협력 활동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 농협, 의회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농정 현안 의견 수렴

(1) 농업인단체 임원 간담회

- (추진목적) 농업인단체 협력체계 강화 및 농정 현안 의견 수렴
- (참석대상) 농업인단체 회장, 농업회의소 임원 등 30명 내외
- (개최시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2) 농협 조합장 간담회

- (추진목적) 농협과 협력체계 강화 및 농정 현안 의견 수렴
- (참석대상) 농협시지부, 관내 농협, 농업회의소 임원 등
- (개최시기) 매년 1~2회

(3) 지방의회 간담회

- (추진목적)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및 농정 현안 의견 수렴
- (참석대상) 국회의원, 시군의원, 지자체, 농업인단체장, 농업회의소 임원 등 30명 내외
- (개최시기) 매년 1~2회

(4) 농업인단체 실무자 간담회

- (추진목적) 농업인단체 실무자 간에 협력체계 강화 및 의견 수렴
- (참석대상) 농업인단체 사무국장 및 간사, 농업회의소 사무국 등
- (개최시기) 매년 1~2회

바. 회의 및 사업보고회 운영

농업회의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매년의 사업평가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

(1)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농업회의소의 상시적인 보고 및 사업 추진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참석대상) 농업회의소 임원 등
- (개최시기) 이사회는 격월 개최,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

(2) 대의원총회 및 사업보고회 개최

- (추진목적) 당해년도 사업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 (참석대상) 농업회의소 임원 및 대의원
- (개최시기) 매년 말 혹은 연초(1회)

사. 사무국 운영

농업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운영

(1) 사무국 개설 운영

- (장 소) 사무실 공간 확보(농업인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 (주요내용) 사무실, 회의실, 사무기기와 집기 운영

(2) 사무국 전문 인력 운영

- 농업회의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장 1명, 사무장(간사) 1명의 상근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정책실장 1명 추가 채용)
- 사무국 인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거창군농업회의소 홈페이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카페

아. 월별 추진계획(예시)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농정 자문 활동 | 읍면순회설명회 | | ■ | ■ | | | | | | | | | |
| | 분과위원회 | | | | ■ | ■ | | | | ■ | | | |
| | 농업정책협의회 | | | | | | | | | ■ | | | |
| | 농업발전토론회 | | | | | | | | | | | ■ | |
| 홍보 활동 | 농정홍보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소식지 발간 | | | | | | | | | | | | ■ |
| |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개발 | | | | | | | ■ | ■ | ■ | ■ | | |
| 역량 강화 | 임원 역량강화교육 | | | | | | | | | | | | |
| | 대의원 역량강화교육 | | | | ■ | | | ■ | | | | | |
| |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 | | ■ | | | | | | | | ■ | |
| 대외 협력 | 관련기관 간담회 | | | | ■ | | | | | | | ■ | |
| | 단체 실무자 간담회 | | | ■ | | | | | | | ■ | | |
| 사업 보고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대의원총회 등 | | | | | | | | | | | | ■ |

2. 사업영역 확장과 전문 인력 확보

가. 취약한 인력구조의 악순환

- 농업회의소가 농업계 대의기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고유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1~2명인 사무국인 인원은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사무장은 총무·회계 역할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1명이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구조임.
-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충분한 전문 인력 운영이 어려운데, 이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다시 회원의 낮은 참여도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와 특화사업 영역의 확장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나.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 현재 농업회의소는 기획력, 추진력을 겸비한 사무국 인력의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회의소의 역량은 사무국의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지역 농업인단체는 사무실이나 상근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상근인력을 운영하는 농업인단체의 경우에도 간사 1명이 총무 회계와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비상근 사무국장은 생업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농업회의소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농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임.
- 현재 농업회의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의 상근인력 운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회비 수입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열악한 환

경에서 근무하는 상황임. 이는 전문 인력 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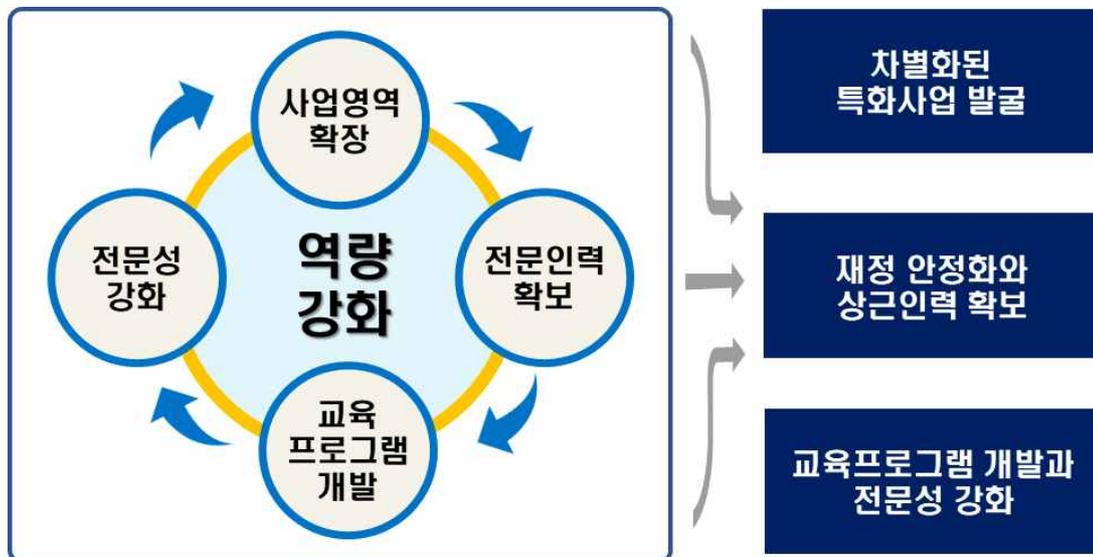
- 지역의 전문 인력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시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젊은 활동가 자체가 부족함.
 -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과 정책실장의 확보 문제임.
 - 기획력과 활동성을 갖춘 30~40대는 대부분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인력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됨.
- 20대 젊은 사람은 급여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다.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회의소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해당 영역 민간 전문가의 안정적인 활동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에는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둘째, 농업회의소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데 단기에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농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농업회의소 취업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무원 파견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회의소의 사업 중에는 행정 위탁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 지원을 위해 공무원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업회의소 사무국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함. 현재는 개별 조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 현재는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에서 공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충청남도가 시군 농업회의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임.
- 단기에는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혹은 전국농업회의추진위원회 차원에 전국단위 운영체계 확립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국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시도-시군 농업회의소 사무국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의 임원 및 대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재정 자립도 확보

1. 현재 재정자립도 현황

가. 회비 납부 현황

- 농업회의소의 수입은 크게 ① 회원회비 ②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금 ③ 기타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사업비 비중은 매우 낮고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상황임.
- 회원회비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개인회원(36~60천원/년), 단체회원(20~30만원/년), 특별회원(200~300만원) 수준이고,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금도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있음.
- 2017년말 현재 5개 주요 시군 농업회의소의 개인회비 납부율은 평균 63.9% 수준이며 강원 평창, 경남 봉화, 경남 거창 등 활성화 지역의 회비 납부율이 높음.
- 개인회비 납부율은 설립 초기인 2012년에 36.7%에서 2015년 77.4%로 높았지만 2017년에는 64.0%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개인회비 수입은 강원 평창군 14백만원에서 경북 봉화군 65백만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

〈표 42〉 주요 시군 농업회의소 개인회비 납부현황(2017년)

| 구분 | 회원 수 (명, A) | 회비/인/년 (천원, B) | 회비총액 (천원, C) | 회비 납부자 수 (D=C/B) | 회비납부율 (%, D/A*100) |
|-------|----------------|-------------------|-----------------|------------------------|-----------------------|
| 강원 평창 | 676 | 30 | 13,920 | 467 | 69.1 |
| 전남 나주 | 1,323 | 36 | 24,262 | 674 | 50.9 |
| 경북 봉화 | 1,470 | 60 | 64,790 | 1,080 | 73.5 |
| 경남 거창 | 748 | 60 | 36,872 | 614 | 82.1 |
| 경남 남해 | 1,246 | 36 | 19,801 | 550 | 44.1 |
| 소 계 | 5,463 | - | 159,645 | 3,385 | 64.0 |

자료) 각 시군 농업회의소

<표 43> 주요 시군 농업회의소 개인회비 납부율 변화

(단위 : %)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강원 평창 | 19 | 52 | 60 | 65 | 65 | 69 |
| 전남 나주 | 73 | 65 | 61 | 74 | 65 | 51 |
| 경북 봉화 | - | 89 | 89 | 92 | 88 | 74 |
| 경남 거창 | 18 | 85 | 95 | 95 | 98 | 82 |
| 경남 남해 | - | 22 | 58 | 61 | 46 | 44 |
| 평 균(%) | 36.7 | 62.6 | 72.6 | 77.4 | 72.4 | 64.0 |

자료) 각 시군 농어업회의소

나. 전체 예산 대비 회비 비율

- 개인회비, 단체회비, 특별회비를 포함한 전체 회비수입은 경북 봉화군이 88백만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나주시가 33백만원으로 가장 낮음.
- 전체 예산 대비 회비 비율(재정자립도)은 평균 26.9% 수준이며 강원 평창군이 37.1%로 가장 높고, 경남 남해군이 13.0%로 가장 낮음.

<표 44> 주요 시군의 회원 및 회비 수입 현황(2017년)

(단위 : 명, 개소, 천원)

| 구분 | | 강원 평창 | 전남 나주 | 경북 봉화 | 경남 거창 | 경남 남해 |
|------------------|------|--------|--------|--------|--------|--------|
| 회원수 (명,개소) | 개인회원 | 676 | 1,323 | 1,470 | 748 | 1,246 |
| | 단체회원 | 25 | 46 | 28 | 20 | 15 |
| | 특별회원 | 9 | 16 | 7 | 9 | 7 |
| 회비 수입 (천원) | 개인회비 | 13,920 | 24,262 | 64,790 | 36,872 | 19,801 |
| | 단체회비 | 8,400 | 1,700 | 3,800 | 1,600 | 3,500 |
| | 특별회비 | 19,000 | 7,000 | 19,000 | 18,000 | 14,000 |
| | 합 계 | 41,320 | 32,962 | 87,590 | 56,472 | 37,301 |

자료) 각 시군 농어업회의소

<표 45> 전체 예산 대비 회비 비율(2017년)

| 구분 | 강원 평창 | 전남 나주 | 경북 봉화 | 경남 거창 | 경남 남해 |
|----------|---------|---------|---------|---------|---------|
| 전체예산(A) | 111,320 | 133,000 | 298,000 | 154,613 | 287,000 |
| 회비수입(B) | 41,300 | 24,262 | 87,590 | 56,472 | 37,301 |
| 비 율(B/A) | 37.1% | 18.2% | 29.4% | 36.5% | 13.0 |

자료) 각 시군 농어업회의소

2. 상공회의소 재정운영 현황⁶⁾

가. 지역 상공회의소 재정 현황

- 2009년 기준 지역 상공회의소의 총수입은 1,861억원이며, 이중에 회비 수입은 79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8% 수준으로 농업회의소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이 밖에도 임대수입(434억원), 기타수입(357억원), 검정수입(190억원)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갖추고 있음.
- 2009년 기준 지역 상공회의소의 총지출은 1,549억원이며 이 중에 사업비 819억원, 인건비 402억원, 일반관리비가 198억원을 차지함.
- 상공회의소는 사업수입, 검정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표 46> 상공회의소의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비수입 | 사업수입 | 검정수입 | 임대수입 | 기타수입 | 계 |
|-------|--------|-------|--------|--------|--------|---------|
| 2007년 | 72,129 | 8,925 | 24,594 | 41,831 | 26,386 | 173,863 |
| 2008년 | 73,918 | 8,945 | 20,076 | 43,736 | 26,601 | 173,275 |
| 2009년 | 79,611 | 8,423 | 18,952 | 43,415 | 35,660 | 186,061 |

주) 회비수입은 임원찬조금 등 특별회비를 포함하며, 사업수입은 교육사업수입, 증명발급수입, 출판수입 등임. 검정수입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검정수입이며, 기타수입은 이자수입, 협력사업수입(정부·지자체로부터의 공동사업 지원금), 잡수입 등을 포함.

<표 47> 상공회의소 연도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업비 | 인건비 | 일반관리비 | 기타 | 계 |
|-------|--------|--------|--------|--------|---------|
| 2007년 | 76,354 | 36,869 | 19,185 | 15,953 | 148,361 |
| 2008년 | 73,615 | 38,756 | 19,024 | 13,599 | 144,994 |
| 2009년 | 81,913 | 40,225 | 19,792 | 12,990 | 154,920 |

자료) 산업연구원(2010)

61) 상공회의소의 최근 재정현황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상공회의소는 ‘부분의무가입제’를 통해 회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율은 높지 않은 상황임.
- 2009년 기준 71개 지역 상공회의소 중에 7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흑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흑자를 달성한 곳도 6곳에 달하고 있음.

<표 48> 당연회원의 회비 납부율 변화(%)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국 | 43.3 | 42.9 | 41.3 | 40.8 | 37.1 |
| 서울 | 58.1 | 56.2 | 54.2 | 49.0 | 44.8 |

자료) 산업연구원(2010)

<표 49> 지방 상공회의소 재정 현황

| 재정현황 | | 상익수 | 해당 상공회의소 |
|----------|------------|-----|--|
| 흑자 상공회의소 | 10억 이상 | 6개 | 서울, 부산, 광주, 구미, 용인, 화성 |
| | 2억이상~10억미만 | 26개 | 포항, 여수, 성남, 창원, 안산, 제주, 울산, 수원, 평택, 대전, 안양, 시흥, 대구, 양산, 청주, 김해, 안성, 인천, 당진, 순천광양, 포천, 진해, 김천, 원주, 진주, 김포 |
| | 2억 미만 | 32개 | 전주, 고양, 음성, 군산, 부천, 이천, 칠곡, 파주, 목포, 함안, 사천, 경기동부, 마산, 춘천, 서산, 익산, 밀양, 태백, 거제, 안동, 경주, 영천, 군포, 강릉, 하광, 영주, 광명, 삼척, 속초, 경산, 정읍, 의왕 |
| 적자 상공회의소 | | 7개 | 동해, 오산, 진천, 충주, 통영, 경기북부, 충남북부 |

자료) 산업연구원(2010)

나. 대한상공회의소 재정 현황

- 대한상공회의소의 회계는 ① 일반회계 ② 수익사업 특별회계 ③ 검정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구분.
- 2015년 기준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입·지출 총액은 371억원 수준이며, 이 중에 회비는 25억원으로 6.8%를 차지함.
- 주요 수입원으로 검정사업 수익이 197억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회계

(102억원), 수익사업(72억원) 등의 순임.

- 자체 사업비는 211억원으로 85.7%를 차지하고, 위탁사업비는 35억원, 14.3% 수준임.

<표 50> 대한상공회의소 수입·지출 현황(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 일반회계 | | 수익사업 특별회계 | | 검정사업 특별회계 | | 합계 |
|----|-------------|-------|-----------|------|-----------|-------|-------|
| 수입 | 회비수입 | 25.2 | 유통표준코드사업 | 56.2 | 수험료수입 | 175.5 | 371.4 |
| | 협력사업수입 | 38.3 | PDS사업수입 | 4.7 | 수수료수입 | 4.6 | |
| | 사업외수익 | 4.0 | 수강료수입 | 8.0 | 기타사업수입 | 11.2 | |
| | 고유목적사업준비환입액 | 20.4 | 판매수입 | 0.0 | 사업외수익 | 0.7 | |
| | 순재산이입 | 14.2 | 기타사업수입 | 3.1 | 순재산이입 | 5.3 | |
| | 소계 | 102.1 | 소계 | 72.0 | 소계 | 197.3 | |
| 지출 | 사업비 | 59.9 | 사업비 | 24.1 | 사업비 | 166.8 | 371.4 |
| | 인건비 | 13.2 | 인건비 | 12.2 | 인건비 | 10.7 | |
| | 사업경비 | 7.4 | 사업경비 | 11.4 | 사업경비 | 11.0 | |
| | 일반관리비 | 11.4 | 일반관리비 | 5.8 | 일반관리비 | 5.8 | |
| | 사업외비용 | 4.0 | 사업외비용 | 16.5 | 사업외비용 | 0.0 | |
| | 예비비 | 6.2 | 예비비 | 2.0 | 예비비 | 3.0 | |
| | 소계 | 102.1 | 소계 | 72.0 | 소계 | 197.3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6년)

<표 51>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비 비중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 자체사업비 | 210.6억원 | 85.7% | |
| 위탁사업비 | 35.2억원 | 14.3% | |
| 계 | 245.8억원 | 100.0%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6년)

3. 농업회의소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가. 해외 농업회의소 재정운영

- 해외 농업회의소는 국가 특성에 맞는 재정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회원 회비가 없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715백만 유로 수준이고, 이중에 비건축용 토지세(42%), 자체사업수익(27%),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25%), 기타수입(6%)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의 루아레 농업회의소는 2012년 기준 비건축용 토지세(51%), 자체사업수입(28%), 각종 보조금(19%), 기타수입(2%)로 구성되어 있음.
-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농업인회비(25%), 주정부 보조금(50%), 자체사업수익(25%)로 구성되는데 개인회비는 농지에 부과하는 세금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함.
-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도 농업인회비(25%), 정부 보조금(50%), 자체사업수익(25%)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개인농가 회비는 없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나. 농업회의소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

- 농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네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회원 회비제도를 의무가입제 혹은 부분의무가입제 전환을 통해 회원수 확대와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 둘째, 회비 징수방식의 개선을 고민해야 함. 현재처럼 개인 농업인이 자동이체 혹은 CMS로 납부하는 방식은 농업인의 저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음. 해외 농업회의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비를 세금성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해외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는 국가의 독점사업권 부여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음.

- 넷째,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간지원조직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하고 있음. 각종 조사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음.
-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신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기존 관련 기금 중에 농업회의소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음.

4. 분야별 활성화 과제 소결

- 농업회의소의 분야별 활성화 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구분 | 주요내용 |
|--------------|--|
| 회원제도와 참여도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임의가입제(자율가입)’를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제’ 혹은 ‘부분의무가입제로’로 전환 필요 ○ 회원제도는 ①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②농지면적 기준 ③ 농업인과 어업인 기준 등 세 가지 방안 검토 - 회원관리, 가입절차, 여성농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농업인의 농정참여 시스템 확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농업회의소와 농정참여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농정협의기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농업회의소의 추천권 부여 ○ 협의기구 참여 범위를 농업·농촌에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촌주민의 삶과 관련된 분야로 확대 ○ 정부와 지자체와 각종 법정 및 비법정 계획 수립 과정에 농업회의소의 의견수렴 및 참여 공식화 ○ 농업회의소에 대한 각종 오해 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기존 기관·단체의 우려 해소와 농업회의소와 업무 중복 최소화 ○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립을 위한 농업인단체와 농협의 참여 촉진 ○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제도와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마련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농업회의소 선거 연계 실시 |
|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의 특화사업 발굴 원칙 수립 - 기존 기관·단체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 공적조직으로 경제사업과 수익사업 배제 -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 신규 발굴 ○ 농업회의소 특화사업 발굴 과제 -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과 공모사업 활성화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 농업인과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농림수산분야 국가기술자격 등의 검정 관리 - 농림 분야 인적자원관리위원회 위탁 운영 등 |
| 농업회의소 역량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전문 인력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농업회의소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 공무원 파견을 통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 농업회의소 사무국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확대 |
|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도 개선 : 의무가입제 혹은 부분의무가입제 ○ 회비징수 방식을 개별납부에서 세금성 징수로 개선 ○ 농업회의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지자체 등) ○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 활성화 ○ 농업회의소 관련 기금 조성(증장기 과제) |

PART
05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

- ①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② 주체별 역할확립 및 연계모델
- ③ 중장기 로드맵과 한국형 모델 확산

제5장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

제1절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1.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현황

가.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 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
- 외국의 독일(1894년), 프랑스(1924년), 일본(1951년), 국내의 상공회의소법(1952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늦은 것임.

나. 19대 국회 추진상황

- 19대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2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2013년 12월에 야당에서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고, 2015년 4월에 여당에서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음.
-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하였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농해수위 계류 중에 자동 폐기되었음.

<그림 27> 19대 국회 법제화 추진현황



다. 20대 국회 추진상황

-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6년 8월에 김현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농어업회의소법을 먼저 발의하였음.
 - 2016년 11월에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청회 개최.
 - 2017년 2월에 기재부, 농식품부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법안소위 대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
- 2017년 11월에 이완영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12명과 함께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함.
 - 법안소위 대안과 이완영 의원 법안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2018년 11월 현재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함께 계류되어 있으며 병합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 1998년 실패 이후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업계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28> 20대 국회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추진현황



〈표 52〉 농어업회의소법 법안소위 대안과 이완영의원안 비교

| 구분 | | 소위원회 대안 | 이완영 의원안 | 대안제시(안) |
|---------------------|----|--|---|----------------------------------|
| 사업범위 (§5) |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자문 등 4개 분야 *타기관 중복사항 모두 삭제 | <사업범위 추가> 자료수집, 삶의질향상, 기술보급, 박람회, 기타 필요사업 등 5개 분야 추가 | <대안제시> 2개 분야 추가 *자료수립, 삶의질 |
| 설립 요건 (§8,52) | 기초 | 농어업인 5% 이상 또는 500명 이상 동의 | <요건 강화> 20% 또는 1,000명 이상 | <대안제시> 10% 또는 1,000명 |
| | 전국 | 기초·광역 10개 이상 발기, 20개 이상 동의 | <요건 강화> 30개 이상, 80개 이상 | <대안제시> 20개, 40개 |
| 경비지원 (§64) | | 지자체 재정 지원 가능 | <재정지원 제한> 재정지원 가능하되, 회의소 운영비 1/2 이내로 제한 | 이완영 의원안 반영 |
| 감독 (§69) |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광역회의소 지도·감독 | <지도·감독 추가> 전국 감독 + 광역회의소는 기초회의소 지도·감독 | 소위 수정안 반영 |
| 기타 | | (목적)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 | <목적 일부 변경>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 가치 제고 | 이완영 의원안 반영 |
| | | (관할) 농어업회의소 | 농업·어업회의소 분리 설립 | 이완영 의원안 반영 |
| | | (설립구역) 특별자치시·도는 기초회의소로 설립 | 특별자치도(제주도)는 광역회의소로 설립 | 소위 수정안 반영 |
| | | (국가책무) 자율성 보장 *회의소 의견 적극 수렴 부문 삭제 | 자율성 보장 및 회의소 의견 적극 수렴 | 소위 수정안 반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 법제화 이후 전국 운영체계 확립

가.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2010년 이후 시군→시도→전국으로 확장하는 상향식 설립 추진은 현장의 공감대 확산과 민간 주도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중앙 단위의 구심력 부재라는 단점이 있음.
- 초기에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가 지역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중앙의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한 상황임.
-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지역 간 정보소통과 공동 대응전략 수립이란 장점이 있지만, 임의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의 7개 시군 지역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광역 2개소와 시군 28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중앙 조직의 부재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법제화 이후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전국 단위의 운영체계 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가칭)전국농업회의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기초·광역 농업회의소와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농협,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추진위원회는 △ 농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역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 △ 전국농업회의소 설립준비 작업 △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운영체계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셋째, ‘전국농업회의소’를 설립을 추진해야 함. 구심점 부재의 문제는 결국 중앙 조직의 결성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임. 지역 농업회의소 설립까지 보통 1.5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농업회의소 설립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농어업회의소법 시행령 제정

- 현재 2개 농어업회의소법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발효 시점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야 함.
- 2개 농어업회의법이 상공회의소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상당부분 감안해야 하지만, 농업회의소의 특성과 농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특정 단체 중심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회의소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농업회의소 표준정관 및 제규정 마련

-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회의소의 설립 확대와 양적인 측면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법제화 이후 농업회의소의 내실화와 운영체계의 확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회의소 정관은 2011년에 개발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는데, 이후 운영 과정에서 지역간에 정관 내용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실현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의소 표준 정관⁶²⁾’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회의소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관 제정이 필요함.
 - 회원의 범위와 의사결정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농업회의소의 정관 변경과 수정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함.
- 한편 현재 농업회의소는 인사, 회계, 조직, 선거 등에 대한 제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표준 정관 제정과 함께 관련 제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부 보다는 전국농업회의소가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

62) 현재 농협은 농식품부가 표준정관(정관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도 표준정관을 통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농업회의소 운영매뉴얼 개발 보급

- 2011년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12년 이후 부분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음.
- 현재 설립·운영 매뉴얼은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과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미흡함.
- 앞으로 농업회의소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과거 시범 사업을 통해 정립한 농업회의소의 고유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마. 전국농업회의소 통합 전산망 구축

-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통합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농어업회의소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공유 수준이고 운영 활성화도 미흡한 수준임.
- 전국농업회의소 홈페이지 개발과 함께 전자결재, 회계, 인사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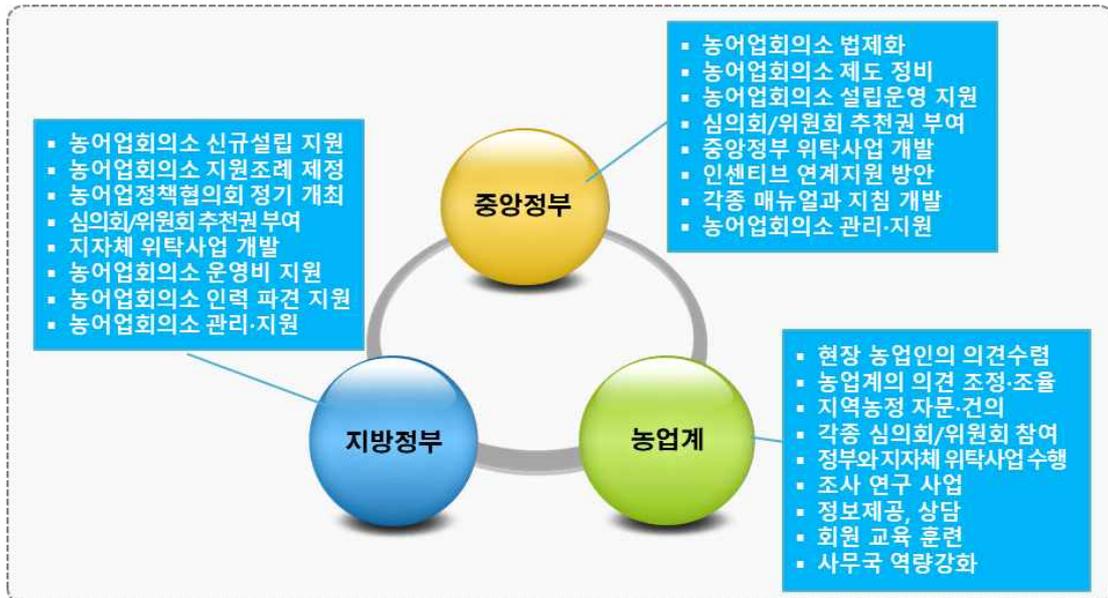
제2절 주체별 역할확립 및 연계모델

1.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가. 주체별 역할체계 확립

-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농업계의 역할을 정립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앙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와 전국의 농업회의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현장 농업회의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민간은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그림 29>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과제



나.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은 첫째,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실현하고 시행령과 표준정관을 마련해야 함. 이와 함께 농업회의소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함.
- 둘째, 농업회의소의 신규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감대 확산 교육 등 기존 농업회의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농업회의소 운영 지역에 대해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회의소 위탁사업을 개발하고, 농식품부와 관련부처의 각종 심의회와 위원회에 농업회의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농업회의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다. 지자체의 역할

-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은 첫째, 농업인의 농정참여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회의소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함.
- 둘째, 농업회의소와 정기적인 농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고 각종 심의회와 위원회에 농업회의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부여해야 함.
- 셋째, 지자체의 농업회의소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고 농업회의소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농업회의소와 민간의 역할

가. 농업회의소의 역할

- 농업회의소는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현장 농업인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첫째,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조정하여 지자체와 정기적인 농정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둘째,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지역농정에 대한 자문·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각종 심의회와 위원회에 농업회의소가 참여해야 함.
-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조사연구, 상담 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업회의소 회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나. 민간 조직의 참여 활성화

- 농업회의소가 농업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농업인, 청년농, 중소농 등 소수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농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부에서 조정·조율되고 외부에 통일된 목소리로 표출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기존 농업인단체협의회와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필요함.

제3절 중장기 로드맵과 한국형 모델 확산

1. 주요 이슈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가. 주요 이슈와 추진과제

- 농업회의소 중장기 추진방향과 관련한 주요이슈로는 첫째,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임. 시범사업 지속과 본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특히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의 분리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창립을 앞둔 상황에서 광역 시도 농업회의소 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지역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광역 농업회의소의 경우 상향식 추진원칙에 따라 시군 농업회의소 先설립, 시도 농업회소 後설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국농업회의소 모델을 정립해야 함.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전국농업회의소의 설립 원칙과 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소의 역할분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업회의소에 대한 중앙단위 농업인단체의 공감대 확산과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함. 회원제도, 임원 및 대의원 구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

| 주요이슈 | | 핵심 과제 |
|--------------|--|-------------------------------|
| 중장기 로드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지속 vs 본사업 실시에 대한 방향 설정 ▪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의 분리 여부 ▪ 농업회의소 법제화이후 대응방향 설정 | 중장기 로드맵 정립 법제화 이후 추진방향 |
| 광역 시도 모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선정 ▪ 시도와 자치시도 농업회의소 모델화 | 광역 시도의 농업회의소 모델 정립 |
| 전국 농업회의소 모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선정으로 전국적 확산 ▪ 상향식 원칙에 따라 향후 전국농업회의소 모델화 필요 | 전국 농업회의소 모델화 전국-시도-시군 역할체계 |
| 중앙단위 활동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회의'에서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 검토 ▪ 중앙단위 농민단체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 강화 | 중앙단위 공감대 확산 추진위원회 구축방안 마련 |

나.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추진사항을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회의소 관련 2개 발의 법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계와 정부, 국회가 ①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소 모델화와 지역 확대 ②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③ 법률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함.
- 2018년에 법제화가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1차년인 2019년에는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소의 역할분담과 세부적인 추진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는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전국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함. 현재 기초와 광역 농업회의소 설립에 보통 1년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주체의 합의 정도에 따라 빠르면 2021년 말에 창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현재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법률 제정 이후 정부와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광역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가. 기본 추진 방향

- 충청남도는 ① 상향식 추진원칙에 따라 시군 농업회의소 5개소 이상 (30%) 설립 시 道농업회의소 설립 ② 道농업회의소 설립 이전에는 시군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역할에 집중 ③ 道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기존의 ‘3농혁신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원칙하에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도의 특성을 살려 ① 단일조직 모델로 추진하고 ② 道 농업회의소 우선 설립 ③ 시군 농업회의소는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0>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향



자료)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그림 31> 단일모델과 연합모델 조직구조 비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나. 광역 농업회의소 회원 구성

- 시군 농업회의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결정과 운영원리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향후 법제화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 작업을 거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화와 관련된 과제는 광역과 전국 농업회의소의 의사결정과 운영원리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함⁶³⁾.
- 현재 발의 법안에 광역 농업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회원은 ① 기초(시군) 농어업회의소⁶⁴⁾ ② 특별회원은 비영리법인 및 기타 시도 연합회로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정관의 정회원은 ① 시군 농어업회의소 ②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포함함. 설립추진단은 창립 이전이지만 향후 정회원 참여를 전제로 포함하였음.
- 특별회원은 ① 시군 농어업인단체협의회 ② 도단위 농어업인단체 ③ 농축협 충남지역본부 ④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 ⑤ 도단위 조합장협의회⁶⁵⁾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관련 협동조합 ⑦ 그 밖에 농어업과 관련된 10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하였음⁶⁶⁾.
- 현재 시군 농업회의소는 임의단체에 대해 유효 회원 10명 이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충남 농어업회의소는 유효 회원을 100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63) 여기서는 현재 계류 중인 2개 법안과 창립을 앞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64) 이완영의원 발의 법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로 구분하고 있음.

65) 회원농협이 시군 농어업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황에서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현장의 참여보장 원칙을 적용하여 분야별 조합장협의회를 회원으로 참여시킴.

66) 시군 농어업인단체협의회는 아직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 단계는 아니지만, 시군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포함하였고, 향후 농어업회의소 설립 이후 정회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임.

- 준회원은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 회의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업 참여, 시설 이용하려는 자’로 규정함.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원 규정은 향후 타 시도의 설립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작업이 필요함.

<그림 32>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원모집 계획

| 구분 | 대상 | 개소수 |
|-------|-----------------------|-----|
| 합 계 | | 50 |
| 정 회원 | 시군 농어업회의소 | 3 |
|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 3 |
| 특별 회원 | 시군 농민단체협의회 | 9 |
| | 도단위 농어업인단체 | 23 |
| | 농축협 충남지역본부 | 1 |
| |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 | 1 |
| | 농/축/수/임협 도단위대표조합(협의회) | 4 |
| 준 회원 | 도단위 유관기관 | 6 |

자료)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다. 광역 농업회의소 대의원 구성

- 현재 발의 법안에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회원총회’를 설치하고, 회원총회가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는 회원총회가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의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임.
- 정회원 대의원은 ①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② 시군 농어업회의소(회장 포함 시군별 5명 이내) ③ 시군 농단협 추천(회장 포함 시군당 4명 이내)로 구성하고 농단협은 인원을 차등 배정함.
- 특별회원 대의원은 ① 도단위 농어업인단체(단체별 1명) ② 농축협 지역본부(1명) ③ 산림조합 지역본부(1명) ④ 도단위 조합장협의회(4

- 명) 등으로 배분함.
- 특별회원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숫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임.
 - 회원총회 보다 대의원회가 참여 범위와 인원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그림 33〉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대의원 구성 계획

| 구분 | 대상 | 배정(안) |
|---------------------------------|---------------------------------|-------|
| 대의원 (농단협 시군은 의원수 차등배정) |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 5명 |
| | 시군 농어업회의소 추천 (회장 포함, 시군당 5명 이내) | 30명 |
| | 시군 농단협 추천 (회장 포함, 시군당 4명 이내) | 36명 |
| | 소 계 | 71명 |
| 특별 대의원 (전체 정원의 1/3 이내) | 도단위 농어업인단체 (회원별 1인 추천권 부여) | 23명 |
| | 농축협 충남지역본부 | 1명 |
| |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 | 1명 |
| | 농/축/수/임협 도단위대표조합(협의회) | 4명 |
| 소 계 | 29명 | |
| 합 계 | | 100명 |

자료)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라. 광역 농업회의소 임원 구성

- 현재 발의 법안에 광역 농업회의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로 하고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는 설립 초기 이사 32명, 감사 3명 등 총 35명으로 임원을 구성할 계획임.
- 이사는 ①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②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설립추진단장 ③ 외부 전문가 사외이사⁶⁷⁾ ④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 ⑤ 특별회원(시군 농단협) 추천이사 ⑥ 특별회원(중앙회와 조합장협의회) 추천이사 등임.

67) 농업회의소 임원 구성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

- 감사는 ① 시군 농어업회의소 추천 감사 ②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 감사 ③ 특별회원(중앙회 및 조합장협의회) 추천 감사 등으로 구성함.
- 타 지역의 경우도 정회원과 특별회원 이사 추천권 배분과 감사 추천권, 사외이사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34>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임원 구성 계획

| 구분 | 대상 | 배정(안) |
|-----|------------------------------|-------|
| 이사 |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 5명 |
| |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설립추진단장 | 8명 |
| | 외부 전문가 사외이사 (분과장 겸직 가능) | 9명 |
| |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이사 | 5명 |
| | 특별회원(시군 농단협) 추천이사 | 2명 |
| | 특별회원(농/수/축/임협) 추천이사 (중앙회 포함) | 3명 |
| | 소 계 | 32명 |
| 감사 | 시군 농어업회의소 추천 감사 | 1명 |
| |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 감사 | 1명 |
| | 특별회원(농/수/축/임협) 추천 감사 | 1명 |
| | 소 계 | 3명 |
| 합 계 | | 35명 |

자료)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마. 광역 농업회의소 회비 체계

- 광역 농업회의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
- 광역 농업회의소의 회비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회비로 구분되며, 현재 발의 법안에는 회비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는 ① 정회원 회비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회비 총액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② 특별회원 회비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 농업회의소 회비는 전국농업회의소 회비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수 방식과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가. 기초-광역-전국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

- 해외 농업회의소의 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
- 다만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은 법률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2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한국형 모델화는 기초-광역-전국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담체계를 우선 고려해야 함. ‘기초 농업회의소’는 현장 밀착형 농업인 지원, ‘광역 농업회의소’는 시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전국 농업회의소’는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 농업회의소는 △시군 수준의 협치농정 실현(지자체와 시군 의회) △현장 농업인 밀착형 공적 서비스 기능(귀농귀촌, 청년농, 6차산업화 등 지역현실 반영)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기초 조사 업무 △시군 단위 각종 계획 수립과 평가 참여 등의 역할이 바람직함.
- 광역 농업회의소는 △광역 수준의 협치농정 실현(지자체와 시도 의회) △시군-전국 농업회의소의 조정과 협력 역할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광역 단위 각종 계획 수립과 평가 참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 전국 농업회의소는 △중앙농정에 대한 자문·건의(각 중앙부처 대응) △국회 대응 농정 활동(법률과 제도)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시민사회 연계 활동 △중앙 단위 각종 계획 수립과 평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설립 목적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대해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②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

제 이바지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②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로 규정하고 있음.
- 2개 법안의 설립 목적이 유사한 만큼 법률 제정 시점에서 문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3가지 규정을 모두 반영하거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완영의원 법안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농업회의소의 사업범위

-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에 대해 김현권 의원법안은 12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규정하바 있는데, 농해수위 법안소위 대안은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기관과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4개 사업범위로 축소됨.
- 이완영 의원법안은 법안소위 대안이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8개 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현재 상공회의소법은 16개 사업범위와 그 부대사업⁶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사업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과 업무 중복 우려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고, 특히 부대사업 조항은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68) 상공회의소법 제4조는 상공회의소의 사업범위에 대해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주의 양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매우 폭 넓게 규정하고 있음

〈표 53〉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에 대한 법안 내용 비교

| 김현권 의원안 | 농해수위 법안소위 대안 | 이완영 의원안 |
|------------------------------------|-----------------------------------|-----------------------------------|
|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
| 2.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 2.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2.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 3.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의 작성·관리 | 3.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 3.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
| 4.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4.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
| 5.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 | 5.농어업에 관한 기술자격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
| 6.농어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 | 6.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
| 7.농어업에 관한 증명·검사 및 감정 | | 7.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
| 8.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 | 8.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9.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 | 9.그 밖에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10.농어업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 | |
| 11.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 | |
| 1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
| 13.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 | |

라.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의 분리 문제

- 김현권의원 대표 발의법안은 ‘농어업회의소’로 규정한 반면 이완영의원 대표 발의법안은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이완영의원 발의법안은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참여하고, ‘어업회의소’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가 참여함.
- 농업과 수산업의 이해관계 차이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행정체계가 이원화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검토가 필요함.

- ① 농업과 수산업의 분리로 농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성격이 축소되고 ② 시군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하는 경우 양조직 모두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며 ③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어업회의소를 따로 설립할 시군이 많지 않고 ④ 농업과 수산업을 함께 하는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으며 ⑤ 시군만 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광역과 전국은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업인의 농정참여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처럼 ‘농어업회의소’로 규정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농어업회의소로 통합할지 혹은 분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 필요.
- 현재 내수면 어업이 거의 없는 거창군과 완주군만 ‘농업회의소’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수산을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마. 광역 및 전국 농업회의소 설립인가 기준

- 김현권의원 발의법안은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5% 이상 또는 500명 이상 참여로 창립하고,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기초·광역 10개 이상 발기하여 20개 이상 참여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이완영의원 발의법안은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2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참여로 창립하고,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기초·광역 30개 이상 발기하여 80개 이상 참여해야 설립할 수 있음.
- 이완영의원 법안이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는 농업인과 어업인 따로 2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립 기준 자체가 과도함.
-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80개 이상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해야 창립할 수 있는데 농업·농촌 비중이 높은 일반 농산어촌 시군 122개의 66% 이상이 창립해야 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창립할 수 있는 무리한 기준임⁶⁹⁾.

69) 현재 지역 상공회의소 숫자가 72개에 불과함. 동일한 설립인가 기준을 적용하면 대한 상공회의소의 창립은 불가능한 기준임.

- 농업회의소의 설립 기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과 원칙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인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바. 전국농업회의소 회원 구성

- 현재 발의 법안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은 ① 기초(시군) 농어업회의소 ② 광역(시도) 농어업회의소로 규정하고, ‘특별회원’은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①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②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회원은 중앙단위 ① 농어업인단체 ② 농어업관련 각종 협회 ③ 각 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④ 기타 단체 등이 될 수 있음.
- 기초 및 광역 농어업회의소처럼 임의단체에 대해 유효 회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회원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개 법안에는 ‘준회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안에 포함하거나 표준정관 수준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반면 상공회의소법은 제12조(준회원)에 준회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사. 전국농업회의소 대의원 구성

-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두도록 하고 (정회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회원 정원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회원) 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고, 관할구역에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는 시군구는 광역농어업회의소 회장이 대의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이 선출하고, 선출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정관에 근거하여 대의원이 대표하는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농업회의소의 대의원 정원 수, 특별 대의원의 선출 방식, 대의원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광역농업회의소의 회장과 임원을 대의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아. 전국농업회의소 임원 구성

-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와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원은 대의원 중에 선출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⁷⁰⁾.
- 만일 9개 시도에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부회장은 9명 이상이 될 수 있음.

자. 전국농업회의소 회비 체계

-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 회비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그 소속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회원 회비는 정관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함.

70) 상공회의소는 지역-전국 등 2단계 조직이기 때문에 광역회의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농업회의소는 시군-시도-전국 3단계 조직이기 때문에 광역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전국농업회의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회비는 광역 농업회의소에 대한 시군 농업회의소의 회비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⁷¹⁾.

차.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

- 현재 시군-시도-전국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고, 농어업인단체 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법 개정을 통해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⁷²⁾.

카. 지도감독과 보고의무 등

-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와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과 재정자립도 등을 매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1)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정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는 회비수입 총액의 1%(서울상공회의소는 10%)를 회비로 납부하고, 특별회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짐.

72) 프랑스와 독일의 농업회의소 임원 임기는 6년이고, 일본 농업회의소와 국내 상공회의소는 3년임. 3년 임기는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짧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이러한 관리감독 규정은 상공회의법과 유사하며, 지자체의 사업 및 경비 지원, 공적 기구로서 농업회의소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관리감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전국농업회의소 뿐만 아니라 광역농업회의소와 기초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음.

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용 여부

- 현재 발의 법안에는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적 기구로서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농업회의소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및 확산 방안

가.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 농업회의소 체계 및 역할

- 한국형 농업회의소는 기초(시군)-광역-전국 농업회의소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계를 대표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설립.
- ‘기초 농업회의소’는 시군 수준의 협치농정 실현, 농업인 밀착형 공적 서비스,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기초 조사 업무 등을, ‘광역 농업회의소’는 광역 수준의 협치농정 실현, 시군-전국 농업회의소의 조정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등을, ‘전국 농업회의소’는 중앙농정에 대한 자문·건의, 국회 대응 농정 활동,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시민사회 연계활동 등을 수행함.
- 특히 ‘기초 농업회의소’는 현장 밀착형 농업인 지원, ‘광역 농업회의소’는 시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전국 농업회의소’는 연구조사와 인력양성 기능을 특화해야 함.

□ 기초 농업회의소 설립

- 기초 농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농업인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기초 농업회의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임원으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이사회를 운영함.
- 농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 농업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금액은 정관에 따름.

□ 광역 농업회의소 설립

- 광역농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은 ① 기초(시군) 농업회의소 ② 특별회원은 비영리법인 및 기타 시도 연합회 등이 포함됨.
- 광역 농업회의소는 ‘회원총회’를 설치하고, 회원총회가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 역할을 수행함. 다만, 충남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회원총회가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대의원회를 구성 계획임. 대의원회에는 시군 농어업회의소 뿐만 아니라 시군 농단협, 도단위 농어업인단체, 농축협 지역본부, 도단위 조합장협의회 등이 포함됨.
- 광역 농업회의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함. 충남의 경우 이사로는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장 및 설립추진단장, 외부 전문가 사외이사,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 특별회원(시군 농단협) 추천이사, 특별회원(중앙회와 조합장협의회) 추천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시군 농어업회의소 추천 감사, 특별회원(도 농어업인단체) 추천 감사, 특별회원(중앙회 및 조합장협의회) 추천 감사 등으로 구성됨.
- 광역 농업회의소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정회원 회비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회비 총액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특별회원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전국 농업회의소 설립

- 전국 농업회의소는 일정 수 이상의 기초·광역 농업회의소의 발기와 참여로 설립되며, 설립 기준에 너무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기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은 강화해야 함.
- 전국 농업회의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기초(시군) 농업회의소와 광역(시도) 농업회의소가 되고, 특별회원으로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

- 전국 농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운영하며, (정회원)대의원은 기초 농업회의소 회장이 되며,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 선출함. 임원으로는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 (지자체장 임기 4년, 농업인단체장 임기 2년을 고려하여 임기를 4년으로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전국 농업회의소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정회원은 회비 총액에 정관이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회비로 하고, 특별회비는 정관에 따라 정함.

<그림 35>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체계



□ 농업회의소 사업 범위

- 농업회의소 사업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⁷³⁾ 등이 있음

73) 농해수위 법안소위 대안 법률안을 기준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현재 상공회의소법(16개 사업범위와 부대사업)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사업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 관련 기관과 업무 중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고, 부대사업 조항 역시 포함시켜야 함.

□ 지도 감독과 보고 의무 등

- 전국 농업회의소는 광역 농업회의소와 기초 농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전국 농업회의소의 업무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함. 또한 농림축산부에서는 필요시 전국 농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필요사항을 검사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회의소의 활동현황과 재정자립도 등을 5년마다 실태조사해서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정치적 중립 의무

- 공적 기구로서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과거 시범사업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게 되면 농업회의소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
-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법률적 규정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농업회의소 선거 과정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나.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활성화 방안

□ 대표성 확보를 위한 회원제도 개편

-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제도 개편이 필요. 현재 농업회의소는 의무가입제가 아닌 임의가입제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공감대 미흡 등의 이유로 참여도가 낮은 상황임.
- 해외 사례, 상공회의소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무가입제 혹은 부문 의무가입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면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정참여 시스템 구축

- 농업회의소의 기본 설립 목적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계 내부에서 협의·조정된 내용을 농정에 반영하는 것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읍면·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농정에 반영함.
- 농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농업인 의견의 농정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확산, 관련법에 농업회의소를 농정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 보장,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 농업회의소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 현재 운영 중인 시군 농업회의소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의 의견수렴 및 대의기구로서의 농정자문 활동,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회원 및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있음. 또한 농업인의 날·지역축제 등 개최, 도시민농촌유치사업 수행,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함.
- 시범사업 시군농업회의소는 농정자문기구로서의 고유 업무는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와 조직·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화사업 발굴은 미진한 상황임. 농업회의소 특화사업 영역으로는 중간지원조직 위탁운영(귀농귀촌, 농산업인력 등), 농업인과 농지 실태조사, 청년농육성사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리,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이 있음. 또한 지역여건 분석과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먹거리, 지역주민의 생활,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함.

□ 농업회의소의 역량 제고

- 농업회의소가 농업계 대의기구로서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역의 인력 자원의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 특화사업분야 민간 전문가 영입, 인건비 지원, 공무원 파견 제도 검토, 사무국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함.

□ 재정자립도 제고

- 농업회의소 수입은 회원회비, 지자체 사업비 지원금, 기타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사업비 비중이 매우 낮음. 또한 전체 예산 대비 회비 비율이 평균 26.9%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상황임.
- 해외 농업회의소는 세금, 자체사업수익, 보조금 등 국가 특성에 맞는 재정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임대수입, 기타수입, 검정수입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갖추고 있음.
- 농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회원 (부문)의무가입제 도입, 회비 징수방식의 개선, 정부의 운영비 지원, 위탁사업의 활성화, 기금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다. 한국형 모델 확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확대와 함께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회의소 위탁 사업을 발굴하고, 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의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를 보장해야 함. 또한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농업회의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함.

□ 지자체의 주요 역할

- 지자체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함.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를 보장하고, 지

자체 차원에서 위탁사업을 발굴해야 함.

- 또한 농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정 부분의 지원을 검토해야 함.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하고,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함.

□ 농업회의소의 주요 역할

- 농업회의소는 현장농업인의 농정참여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해야 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협치기구에 대표로 참여하여 농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과 건의의 통해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해야 함.
-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소 자체 역량 강화임. 때문에 선진지 견학, 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 임원 및 회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앙단위 집중 교육 등을 통해 활동 주체인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농업인단체 등 민간조직의 역할

- 농업회의소 대표성 강화와 농업인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 민간조직은 농업회의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특히 여성농업인, 청년농, 중소농 등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충실히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업계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농업인을 위한 정책 실현이 좌절된 경우가 많았음. 어렵고 힘든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의를 위한 마음으로 농업계 내부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조율이 절실히 필요함.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과 관련한 과제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주요내용 |
|---------------------------|--|
| 농업회의소 법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법제화 이후 전국 운영체계 확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농어업회의소법 시행령 제정 - 농업회의소 표준정관 및 제규정 제정 - 농업회의소 운영매뉴얼 개발 보급 - 전국농업회의소 통합 전산망 구축 |
| 주체별 역할정립과 연계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① 법률과 제도 정비 ②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및 공감대 확산 ③ 중앙정부 차원의 위탁사업 발굴 ④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 보장 ⑤ 농업회의소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 (지자체) ① 농업회의소 지원조례 제정 ②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참여 보장 ③ 지자체 차원의 위탁사업 발굴 ④ 농업회의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⑤ 공무원 파견 검토와 관리 감독 체계 확립 등 ○ 농업회의소와 민간의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① 현장농업인의 농정참여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② 농정에 대한 자문·건의 활성화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협치기구에 농업회의소 대표 참여 ④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 발굴 ⑤ 농업인과 농촌주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 기능 발굴 ⑥ 농업회의소 임원 및 회원 교육훈련 강화 및 사무국의 역량강화 - (민간조직) ① 농업회의소 참여 확대로 대표성 확보 ② 여성, 청년, 중소농 등 소수자 참여 강화 ③ 농업계 내부의 조정·조율 기능 강화 |
| 중장기 로드맵과 한국형 모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중장기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시군-시도-전국 농업회의소 모델화 ②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③ 법률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 광역 농업회의소 모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보완과 확산 - 광역 농업회의소의 회원, 대의원, 임원, 회비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광역-전국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체계 확립 - 현재 발의 법안에서 목적, 사업범위,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의 분리 문제, 농업회의소 설립 기준, 전국농업회의소의 회원·대의원·임원·회비·대의원과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용 여부 검토 |

[부록자료]

- ① 상공회의소법
- ② 대한상공회의소 정관
- ③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정관(안)
- ④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정관

상공회의소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93호, 2014.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양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24.]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전문개정 2011.5.24.]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5.24.]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원의 해임)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는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

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0조(상임위원회)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31조(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

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를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위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24.]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

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상공회계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계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계소 및 대한상공회계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계소 및 대한상공회계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계소 또는 대한상공회계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계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0조(지도·감독) ① 대한상공회계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계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24.]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장 벌칙 <신설 2011.5.24.>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부칙 <제12293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 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대한상공회의소 정관

| | | | |
|------|-------|-------|--------|
| 제정 | 1946. | 5. | 19 |
| 전문개정 | 2002. | 12. | 6 |
| 개정 | 2004. | 2. | 24 |
| | | 2007. | 11. 23 |
| | | 2008. | 2. 29 |
| | | 2011. | 2. 25 |
| | | 2012. | 11. 30 |
| | | 2013. | 8. 21 |
| | | 2013. | 11. 29 |
| | | 2014. | 11. 2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조(명칭) 본 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 한다)의 명칭은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에 둔다. (개정 2013. 11. 29)

제4조(사업) 본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품질·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인증
8.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등 유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9.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10.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1.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2.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13. 회관 및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대여·운영
 14.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양양
 15.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6.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17. 상공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18. 국내 경제단체와의 협력
 19. 외국의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
 20. 국제상업회의소에 관한 사업
 21.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사무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1. 11. 25)

제5조(광고) 본 회의소의 광고는 본 회의소의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시한다.

제6조(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장 회원

제1절 총칙

제7조(회원) 본 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正會員)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가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상공업에 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절 정회원

제10조(자격과 가입) ① 본 회의소의 정회원은 상공회의소로 하고, 상공회의소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본 회의소의 정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1조(회비) ① 정회원의 회비는 해당 정회원이 직전 사업연도에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받은 회비 총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비는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회원의 회비는 매 사업연도별로 2개 기(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정회원은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2조(권리 제한) ① 본 회의소는 정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나 그 밖에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절 특별회원

제13조(자격과 가입) 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본 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회의소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입승인을 받은 자는 회비를 낸 때부터 특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4조(회비) ① 특별회원의 회비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규정에는 특별회원의 회비에 관한 부과 및 징수절차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5조(탈퇴)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해산할 때
3. 파산할 때
(전문개정 2011. 11. 25)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본 회의소는 특별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나 그 밖에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장 기관

제1절 의원총회

제17조(구성)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대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19조(통지) 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적어 서면으로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0조(의장)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의원 및 특별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1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7.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지
8. 특별회원의 제명
9.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권리의 제한
10. 해산
11. 상공회의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소송에 관한 사항
14. 상공업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응답에 관한 사항
15. 중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본 회의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2조(의사) ① 의원총회는 대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대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과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의원이 소속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또는 특별의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의원이 소속된 상공회의소의 임원(사무처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의원의 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3조(회의록)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또는 특별의

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2절 대의원과 특별의원

제24조(정원)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대의원 및 특별의원을 둔다.

1. 대의원 : 상공회의소의 회장
2. 특별의원 :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

② 대의원과 특별의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5조(특별의원의 선거) 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특별회원 1인은 1개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보궐선거는 특별의원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특별회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④ 특별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특별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6조(특별의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3.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의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11. 25)

제27조(임기) ①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특별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8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기관 및 단체로서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기관 및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

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104. 11. 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본 회의소의 대의원
8.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 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29조(특별의원의 면직) 특별의원에게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0조(특별의원의 해임) ① 대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총회 개최일 10일전에 해당 특별의원에게 해임 의결을 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절 임원 등

제31조(정원)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0인 이내
3. 상근부회장 : 1인
4. 상임의원 : 30인 이내 (개정 2012. 11. 3)
5. 감사 : 3인 이내

②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특별의원 선거 후 1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선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④ 대의원 및 법인의원의 대표자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호선에 참가한다.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4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특별의원의 직이 면직되거나 해임된 경우
2. 대의원이 상공회의소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경우
3. 법인의원의 대표자가 그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특별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본 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상임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6조(명예회장과 고문) ① 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21, 2013. 11. 29)
②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 직전회장을, 고문은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개정 2013. 11. 29)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회의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절 상임위원회

제37조(구성)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8조(소집)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의원총회 소집에 관한 제18조제2항제2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39조(의장)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40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무처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 의결 중 중요사항에 대한 집행방법
5. 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본 회의소 운영 및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5)

제41조(의사) ① 상임위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준용)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의원총회의 회의록에 관한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 또는 특별의원”은 “부회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절 위원회

- 제43조(설치)** ① 본 회의소는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장 상공회의소협의회

- 제43조의2(설치)** ① 본 회의소는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도에 상공회의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사무처

- 제4조(설치)** 본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45조(사무처임원)** ① 사무처에 사무처임원으로 전무이사·상임이사 및 이사 몇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사무처임원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사무처임원은 회장·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 제46조(직원)** 사무처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집행한다.

제6장 회계

- 제47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8조(재원)** 본 회의소의 경비는 회비·직업훈련사업 수입금·사용료·수수료·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49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본 회의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0조(재산목록·재무상태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는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7장 지도·감독

제50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본 회의소는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1조(지도·감독) ① 본 회의소는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본 회의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2조(보고)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결산보고서
3. 의원총회 의결사항
4.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선임·퇴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사무분장과 사무처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5)

제53조(감사) ① 본 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8장 보칙

제54조(의결권 등의 정지) ① 본 회의소는 회비를 체납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의원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특별의원선거인 명부 열람개시일 전날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 특별의원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4조의2(정치적 중립) ① 본 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③ 본 회의소의 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4. 11. 28) (전문개정 2011. 11. 25)

제54조의3(정보의 공개) 본 회의소는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결산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5조(벌칙) 본 회의소는 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제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56조(해산·청산)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25)

부 칙 (2002. 12.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이 정관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2. 24)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3)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9)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5)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3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9)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의소는 화성시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 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회의소의 명칭은 화성시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① 회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회의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및 소재지) ① 회의소의 구역은 화성시 일원으로 한다.

②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 관내에 둔다.

제5조(법인격) 회의소는 출범 후 3월 이내에 민법에 따라 관할 도지사가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개인회원 :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과 그 밖의 농어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3. 특별회원 : 회의소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영연초생산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부 또는 지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나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 종류별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월 3천원
2. 단체회원 : 연 20만원
(대의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대의원 1명당 연 10만원 추가)
3. 특별회원 : 연 500만원(농협시군지부), 연 300만원(농수축협), 연200만원(산림조합)
4. 준회원 중 개인 : 연 5만원
5. 준회원 중 단체 : 연 10만원

④ 회비의 납부는 3월 이내에 지정계좌에 이체 또는 사무국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영수증을 발부하며, 매월 CMS 자동이체로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조(가입)**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절차는 최소한의 확인절차 등으로 사무국에서 우선 갈음할 수 있다.
- ② 본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원가입절차, 회비의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 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일 10일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탈퇴)** ① 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사망, 행방불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때

제3장 기 관

제1절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한다.

- 제13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문별 단체 대표의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부문별 단체 대표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회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
5. 회원의 제명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설치 및 해체의 건
9. 회의소 해체(해산)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의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 제4호, 제6호, 제9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출석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의소의 정회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단, 대리인은 소속단체의 정회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정한 회원 5인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19조(대의원회) ① 회의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대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하고, 읍면지역 대의원 50% 이상, 단체회원 대의원 30% 이하, 특별회원 대의원 20% 이하로 구성하며, 종류별 대의원의 배정

은 표와 같다.

| 대의원의 종류 | 대의원의 배정 등 |
|------------------------|---|
| 읍면지역 대의원 (50%이상) | ① 시군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② 시군별 대의원은 최대 6명, 최소 1명 ③ 시군별 선거 또는 합의로 추대하고, 대의원이 4명 이상인 지역은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
| 단체회원 대의원 (30%이하) | ① 개인회원 가입 시 개인별 2개의 대의원 선출 희망 단체로 표기한 득표수의 합산(이하 “대의원단체 득표수”)을 도출 ② 대의원단체 득표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③ 단체별 대의원은 최대 3명 ④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연합을 통해 대의원 배정 가능 ⑤ 배정받은 대의원 수대로 단체 또는 단체 간 연합에서 합의 하여 추대 |
| 특별회원대의원 (20%이하) | ① 특별회원 간 합의하여 추대 |

- ④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한다.
- ⑤ 단체회원 대의원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대의원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① 시군지역 대의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합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 단체에서 합의추대 방식을 적용하되 농어업인단체 간에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추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을 공석으로 둔다.

③ 특별회원 대의원은 특별회원 기관 간에 협의하여 추대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단체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기와 함께하며, 해당 기관에서 승계한다.

⑤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임원

제21조(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이사 : 36인. 단,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이사이다.
4. 감사 : 2인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소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식으로 하며, 회장의 직위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④ 회장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임기와 연동한다.

④ 단체회원의 보궐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해당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제24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임원이 자진 사퇴한 때
2.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3.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 한 때
4. 대의원 중 특별회원 대표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소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슈 또는 이해갈등 해소 및 조정 등의 지역현안을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심층 논의 등을 통해 회의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 제26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지역이사 15인, 단체회원 이사 8인, 특별회원 이사 13인 등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신한다.
 - ③ 단체회원 대표 이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 2.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 3.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5.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 6.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4절 감사

제31조 (구성 및 기능)

- ①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년 말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 감사는 감사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절 자문위원

- 제32조(자문위원)** ①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관내에 거주하거나 지역출신인 농어업계 원로, 농어업관련 전문가, 구역 내 회의소 관련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화성시, 관내 농림수산물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 제33조(임기와 역할)**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의 회의소 임원들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은 총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소의 의결사항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 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6절 분과위원회

- 제3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특성, 각종 중요 현안 등 전문적인 지식과 토론 등이 필요한 이슈 등은 사전 심층 논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대안제시 및 조정자 역할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식량, 과수, 원예특작, 축산, 친환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등 총7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회의소 대의원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종사 및 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호선하도록 한다.

- 제35조(소집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분과 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4장 읍면 지회

- 제37조(조직)** 화성시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 읍면 지회를 읍면 지역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할 수 있다.

- 제38조(역할)** ① 화성시의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회원 확대와 시 회의소 활동을 적

극 홍보하며, 읍면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과 현실에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여 시 회의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화성시 농어업발전 및 농어업회의소를 위한 사업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지원) ① 읍면 지회가 있는 경우 회원 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읍면 지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발전을 위한 자료제공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 지역에서 요청 하는 사업 중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0조(임원) ① 읍면 지회 회장은 시 회의소 이사가 되며 부회장, 총무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읍면 대의원은 시 대의원수의 50%이상이므로 읍면 지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 회의소의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상근직으로서 사무국장과 그 외 직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회장이 선임 또는 공모를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42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재정) 본 회의소의 재정은 회비·기부금·출연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장 보 칙

제44조(의결권 등의 정지) ① 본 회의소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8조(벌칙) ① 회의소는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

② 벌칙에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소의 임원은 그 직을 면직하고, 임원선임 권리를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제한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행위자는 제명한다.

제49조(해체 또는 해산) 본 회의소의 해체(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의소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관할구역 및 소재지) ① 본 회의소의 구역은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다.

② 본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

제5조(법인격) 본 회의소는 출범 후 3월 이내에 민법에 의해 충청남도 도지사가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절 총칙

제6조(회원) 본 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이 정관으로 정하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정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의소가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농어업에 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대장) ① 본 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또는 기타 그 보호가 필요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회원

제10조(자격과 가입) ① 본 회의소의 정회원은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시·군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이하 “기초회의소”라 한다)로 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본 회의소의 정회원이 된다.

② 기초회의소가 설립 중인 시군의 경우 설립추진단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회의소가 설립되면 회원의 권리는 해당 기초회의소로 이관된다.

③ 제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은 제3절 13조 6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초회의소 전환 시까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① 정회원의 회비는 그 소속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회원총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약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

제12조(권리제한) ① 본 회의소는 정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나 그 밖에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특별회원

제13조(자격과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의 도단위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의 도단위 연합회와 본부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1, 2, 3항의 기관 중 도단위협의회 대표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조합 또는 기관·단체가 기초농업회의소와 본 회의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1항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2. 「산림조합법」 제2조1항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농어업 관련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관련 협동조합
6. 그 밖에 농어업과 관련된 10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회의소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입승인을 받은 자는 회비를 낸 때부터 특별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회비) ① 특별회원의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규약에는 특별회원의 회비 부과 및 징수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

제15조(탈퇴)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해산할 때
3. 파산할 때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본 회의소는 특별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나 그 밖에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회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회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준회원

제17조(자격과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서 본 회의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본 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본 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의 가입에 관하여는 특별회원의 가입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회비) 준회원의 회비는 특별회원의 회비 최고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

제19조(탈퇴) ① 준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준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해산할 때
3. 파산할 때

제20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본 회의소는 준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나 그 밖에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준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회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회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준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회원총회

제21조(구성) 회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 정기 회원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제23조(통지) 회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 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적어 서면 및 전자메일 등으로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4조(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대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6. 해산
7. 정회원·특별회원과 준회원의 제명
8. 정회원·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권리의 제한
9.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6조(의사) ① 회원총회는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25조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의원이 소속된 농어업회의소

의 임·직원 또는 특별대의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 제27조(의사록)** ① 회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3명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과 특별대의원

- 제28조(구성)**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을 둔다.
1. 대의원 : 본 회의소의 회장·부회장·이감사(사외이사는 제외)과 기초회의소가 추천한 자
 2. 특별대의원 :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내, 단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관할구역 내 기초 지자체 2/3이상 시군에 설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은 유예할 수 있다.
- ② 기초회의소의 대의원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초회의소에서는 1명 이상의 여성대의원을 우선 추천하도록 한다.
- ③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 ④ 본 회의소는 각 회원이 대표하는 농어업인의 수 및 회비납부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29조(특별대의원의 선출)** 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 ② 보궐선거는 특별대의원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특별회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 ④ 특별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과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특별대의원의 선과와 보궐선거에 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회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약에 따른다.

제30조(특별대의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특별회원의 기관·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4.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대의원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임기) ①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법인대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 및 기관·단체로서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대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 및 기관·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본 회의소의 대의원
8.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대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 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제33조(특별대의원의 면직) 특별대의원에게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별대의원은 면직된다.

- 제34조(특별대의원의 해임)** ①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원총회에 특별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원총회는 회원총회 개최일 10일전에 해당 특별대의원에게 해임 의결을 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회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회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특별대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임원

제35조(구성) ① 본 회의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4인 이내
 3. 이사 : 35인 이내. 다만, 회장·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이사 정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여성임원을 반드시 1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4. 사외이사 : 9인 이내
 5. 감사 : 3인 이내
-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소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원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제38조(임원의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한다.

1. 임원이 자진 사퇴할 때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경우
 3. 특별대의원의 직이 면직되거나 해임된 경우
 4. 법인대의원의 대표자가 그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특별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외이사는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조정하여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의 본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이사회

제40조(구성) ① 본 회의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회원이사, 특별회원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41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일정 금액 범위의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의소 운영 및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
- ②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절 자문위원회 등

제45조(구성) ① 본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계 원로, 농어업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임기와 역할)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회의소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

원하기 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절 분과위원회

제47조(설치 및 구성) ① 본 회의소는 농어업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조정하여 농어업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9개소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본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정수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 정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소집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분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분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본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4장 사무국

제50조(설치) 본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1조(직원) ①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과 그 외 직원들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과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고 담당사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계

제52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원) 본 회의소의 경비는 회비·기부금·사용료·수수료·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4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본 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는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본 회의소는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7조(의결권 등의 정지) ① 본 회의소는 회비를 체납한 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회원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회원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대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날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8조(정치적 중립) ① 본 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③ 본 회의소의 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9조(정보의 공개) 본 회의소는 연도별 결산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0조(벌칙) 본 회의소는 회원·특별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총회의 의결로서 처벌할 수 있다.

제61조(해산·청산)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회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8. 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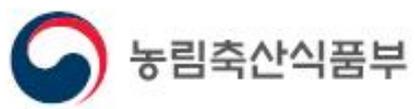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로부터 기간을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 국민농업포럼, '해외주요국 농업회의소 법률 번역집', 2016.9.
- 국민농업포럼·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농업회의소 설명자료', 2018.9.
- 국민농업포럼·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농업회의소 문답자료', 2018.9.
- 국민농업포럼·지역농업네트워크, '시군 농어업회의소 사업모델 및 재정 자립방안 연구', 2013. 2.
- 국민농업포럼·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영 매뉴얼', 2012.
- 국민농업포럼·지역농업네트워크, '2016년 농업회의소 교육컨설팅 보고서', 2017.12.
- 국민농업포럼·지역농업네트워크, '2017년 농업회의소 교육컨설팅 보고서', 2017.12.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8', 2018.3.
- 김대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사례', 2018. 9.
- 김수석,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김수석, '농어업회의소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2015.11.
-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운영사례', 2018. 9.
-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2018.9.
- 마상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 실현', 국회토론자료집, 2017.8.
- 마상진외,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12.
- 정기수, '농정추진체계의 근본개혁과 농업회의소', 농정연구 제59호 가을호, 2016.
- 정기수,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2017.12.
- 정기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며', 국회토론자료집, 2017.8.
- 정기수, '협치 농정의 길', 농정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8.9.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세계 주요국의 농업인단체 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연구', 2007.



농림축산식품부